

2019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2019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 FAX 044-550-4310
www.kdi.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FAX 044-414-2179
www.kipf.re.kr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2020.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 정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 연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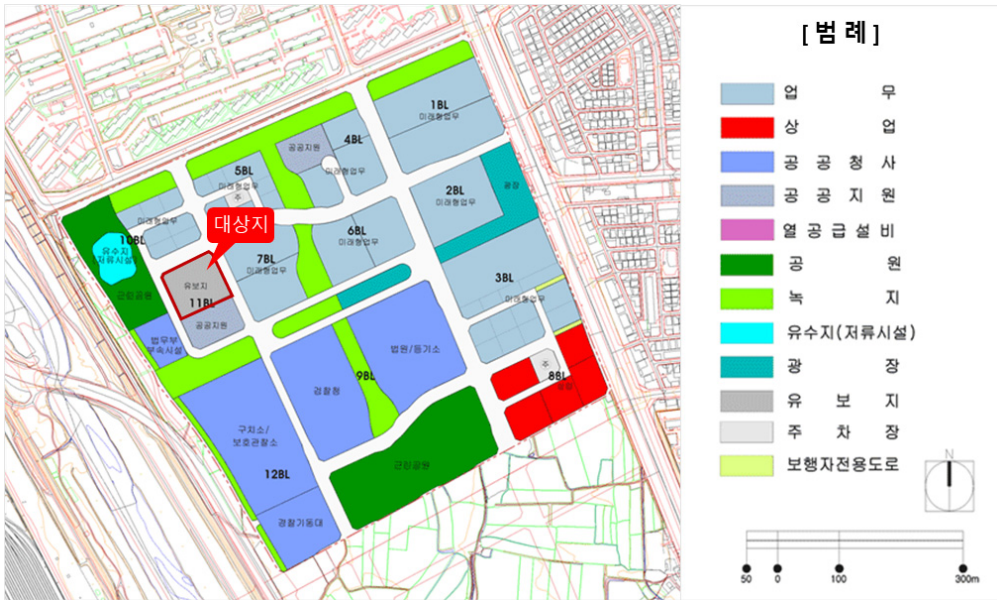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하세정 연구위원(연구총괄)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김종혁 선임연구위원

외부 연구진 : 한 균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동훈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장순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실장
정수미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차장

검토위원 : 박태성 영건축사사무소 소장

위치도



목 차

요약	1
제 I 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51
제1절 사업의 개요	51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1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내용	53
1. 사업 추진의 경위	53
2. 사업 추진의 근거	54
3. 사업의 내용	57
제3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의 배경 및 기본방향	59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59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60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62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2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62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63
3. 시설 관련 현황 분석	69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76
1.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76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76
3. 문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77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79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79

2.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관련 쟁점	80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82
제4절 시나리오 및 대안의 설정	84
제 III 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85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85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87
1. 계획안의 시설규모	87
2.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90
제3절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92
1. 기준인원 검토	92
2. 외부 임차청사의 이전여부 검토	100
3. 세부시설계획	107
제 IV 장 비용 추정	157
제1절 개요	157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157
2. 변경안의 총사업비	159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60
1. 공사비	160
2. 시설부대비경비	169
3. 용지비	177
4. 예비비	179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180
제 V 장 정책성 분석	181
제1절 정책성 분석의 개요	181
제2절 사업추진 여건 검토	183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183

2. 지역주민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186
제3절 정책효과 검토	188
제4절 사업 특수평가항목 검토	189
1. 재원조달 가능성	189
제Ⅵ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193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94
제1절 종합결론	194
제2절 정책제언	198
참고문헌	199
부록	201

표목차

<표 I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의 추진 경위	53
<표 I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주요 내용	58
<표 II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추이	63
<표 II -2> 서울특별시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64
<표 II -3>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총괄(구별) 통계	65
<표 II -4> 서울특별시시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66
<표 II -5> 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사업장 수)	67
<표 II -6> 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외국인 근로자 수)	68
<표 II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설 현황	72
<표 II -8> 청사와 별관 임차 청사 간 거리	72
<표 II -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73
<표 II -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기준: 2019.3월)	73
<표 II -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준인원 변동현황	74
<표 II -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사업계획 변경안 (세종로 출장소 제외)	74
<표 II -1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변경현황	75
<표 II -1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78
<표 II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81
<표 II -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	81
<표 II -17>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84
<표 III -1> 1인당 근무면적 산정결과	86
<표 III -2> 계획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비교	88
<표 III -3> 시설 규모 비교	89
<표 III -4>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안)	92

<표 III-5> 인원기준 정의	92
<표 III-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93
<표 III-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기준: 2020.5)	94
<표 III-8> 정원 외 직원 검토 결과	95
<표 III-9> 업무성격에 따른 정원의 인원 검토 결과	96
<표 III-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인원 검토 결과 종합	96
<표 III-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처리 현황	97
<표 III-12> 보호업무 처리절차	98
<표 III-13> 최근 5년간 전국 보호외국인 현황	99
<표 III-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간 단속업무 현황	99
<표 III-15> 신병인계 현황	99
<표 III-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간 보호인원 수	100
<표 III-1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인원 수 산정	100
<표 III-18> 외부임차청사 현황	101
<표 III-19>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관할구역	103
<표 III-20>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	103
<표 III-21>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현황	105
<표 III-22> 2019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예산현황	106
<표 III-2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설 계획	108
<표 III-24> 순사무실 및 회의실 면적	112
<표 III-25> 조사실 및 대기실	113
<표 III-26> 보호시설	114
<표 III-27> 대강당 및 교육실	115
<표 III-28> 관리 및 보조시설	115
<표 III-29> 특수시설	116
<표 III-30> 전자비자센터	117
<표 III-31> 출입국정보화센터	117
<표 III-32> 공용시설	118
<표 III-33>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121

<표 III-3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부록)	122
<표 III-3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면적기준	123
<표 III-36> 외국인보호소 면적기준	129
<표 III-37> 순사무실 사용 인원 재신청 결과	133
<표 III-38> 사무실 면적 기준	133
<표 III-39> 대회의실 면적 기준	133
<표 III-40> 순사무실 및 회의실 검토 결과	134
<표 III-41> 민원실 검토 결과	134
<표 III-42> 민원실 관련시설 검토 결과	135
<표 III-43> 조사실 및 대기실	135
<표 III-4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업무 처리현황	136
<표 III-4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실 사용기준 심사건수	137
<표 III-46> 조사실 및 조사대기실 검토 결과	137
<표 III-47> 보호시설 검토 결과	138
<표 III-48> 대강당 및 교육실 검토 결과	139
<표 III-49> 관리 및 보조시설 인원 및 면적검토 결과	140
<표 III-50> 식당시설 면적검토 결과	141
<표 III-51> 보관시설 면적검토 결과	141
<표 III-52> 편의시설 면적검토 결과	142
<표 III-53> 관리 및 보조시설 검토 결과	143
<표 III-54> 난민조사영상녹화 장비 현황	144
<표 III-55>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장비 및 집기류 현황	145
<표 III-56>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146
<표 III-57> 특수시설 검토 결과	146
<표 III-58> 전자비자센터 전자민원 처리현황(2018)	147
<표 III-59> 전자비자센터 검토 결과	148
<표 III-60> 출입국정보화센터 검토 결과	149
<표 III-61> 청수수급조정시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	149
<표 III-62>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	151

<표 III-63> 법정주차 대수 산출결과	151
<표 III-64> 지상 및 지하주차장 1대당 면적의 산출 사례	152
<표 III-65> 공용시설 검토 결과	153
<표 III-66> 시설규모 검토 결과	154
<표 IV-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157
<표 IV-2> 비용 보정지수	158
<표 IV-3> 변경안의 총사업비	159
<표 IV-4> 조달청 유사사례(2015~2018년)	161
<표 IV-5> 공사비 단가산정 내역	162
<표 IV-6> 공사비 산출 결과	163
<표 IV-7>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164
<표 IV-8>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165
<표 IV-9>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출	165
<표 IV-10>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166
<표 IV-11>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166
<표 IV-1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67
<표 IV-13>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	167
<표 IV-14>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168
<표 IV-15> 건축 공사비 종합	169
<표 IV-16> 설계도서 작성기준 검토사례	169
<표 IV-17> 건축부문 요율	170
<표 IV-18> 추가 설계비 적용요율	173
<표 IV-19> 일반 및 추가 설계비 산정	174
<표 IV-20> 각종 인증 수수료	174
<표 IV-21> 설계비 종합	175
<표 IV-22>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75
<표 IV-23> 건축공사 책임감리비 산정	176
<표 IV-24>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요율	176

<표 IV-25>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산정	176
<표 IV-26> 시설부대경비 종합	177
<표 IV-27> 용지구입비 및 연부이자 발생내역	178
<표 IV-28>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179
<표 IV-29> 총사업비 종합	180
<표 V-1> 사업추진여건 세부평가항목	181
<표 V-2> 정책효과 세부평가항목	182
<표 V-3> 연차별 투입액	190
<표 V-4>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191
<표 V-5>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 전망	191
<표 VII-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197

그림목차

[그림 I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59
[그림 II -1] 서울시 지도	62
[그림 II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70
[그림 II -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직도	71
[그림 II -4] 문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도	78
[그림 II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사 층별 배치도(초안)	79
[그림 III -1] 현 청사 시설현황 사진	87
[그림 III -2] 대상지 위치 및 주변 현황	91
[그림 III -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임차청사 위치도	101
[그림 III -4] 공용재산취득사업 상세 수행절차	119
[그림 III -5]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일반작성지침	120
[그림 III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통합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140
[그림 III -7]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구분 기준	150
[그림 IV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지공급관련 SH공문(매입비용)	178
[그림 IV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지공급관련 SH공문(할부이자 관련)	179

요약

요 약

제 I 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 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990년 신축 이후 지속적으로 출입국 행정업무가 확대되었으며, 행정서비스 대상이 증가함.
 - 서울 지역 장기체류외국인의 수는 90년 대비 18년 말 약 52배 증가함.
 - 청사가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여 민원접근성이 취약함.
 - 2개소의 별관 운영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및 민원불편 야기
 - *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로 인해 청사면적이 부족하여 9개 부서 중 2개 부서가 별도 임차건물을 사용함.

□ 사업의 목적

-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부족한 업무·민원공간을 확보
-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중심부로 이전

□ 사업의 기대효과

- 업무효율성 제고, 출입국행정서비스 개선
- 방문민원인 접근성 제고, 민원환경 개선
 -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구역은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안양, 과천, 하남, 성남으로 현 청사는 관할 구역 외부의 서쪽에 위치함.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내용

□ 추진경위

- 2011.07: 국무총리실, 과천청사 입주기관 발표(서울사무소 5동 배치)
- 2015.07: 미래부가 과천청사 5동 입주로 과천청사 이전 무산
- 2017.02: SH공사에 신축부지 확보 협조 요청(문정지구 내 9,000㎡)
- 2017.10: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장 면담(본부장)
- 2018.02: 서울시 및 SH공사에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 협조 요청
- 2018.08: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 방문(법무부장관)
- 2018.12: 신축부지 면적 관련 회의(법무부, 서울시, SH공사)
- 2019.01: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면적(9,034.8㎡) 공급 결정
- 2019.01: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안 제출(기재부)
- 2019.02: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행안부)
- 2019.03: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제출(기재부)
- 2019.04: 청사수급관리계획 확정
- 2019.0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KIPF)
(계획안: 건축면적 17,564㎡, 총사업비 952.78억)
- 2020.05: 사업계획변경(건축면적 : 17,799㎡)
(변경안: 건축면적 17,799㎡, 총사업비 958.59억)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자료: 「국가재정법」 제7조 제1항(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 13조(대통령령 제30275호)

<p>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 10. 11.></p> <p>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 8. 12., 2008. 12. 31., 2013. 9. 17., 2018. 5. 8.></p> <p>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09. 5. 25.></p> <p>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p> <p>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8. 5.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 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p>④출입국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2., 2013. 5. 22.></p> <p>⑤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2., 2013. 5. 22.></p>

[전문개정 2007. 5. 4.]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 13조(대통령령 제30275호)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감천항·다대포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공항은 제외한다)·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칠곡군·문경시·경주시는 제외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예산군·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당진항·보령항·장항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주시	전라남도 여주시·순천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은 제외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은 제외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군산시는 제외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철원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영동군·옥천군은 제외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한다)·안성시·오산시·오산군용비행장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 사업의 내용

- 사업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 사업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문정지구 11-2BL, 유보지)
-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34.8㎡
 - 건축면적: 미정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건축연면적: 사업계획 변경 전 17,564㎡, 변경 후 17,799㎡
- 주차대수: 70대
- 총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전 953억원, 사업계획 변경 후 959억원
 - 주요 변경 내역: 정원 150 → 161명, 정원 외 직원 239 → 245명

<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주요 내용

구분	최초 사업계획안	변경사업계획안	비고
사업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추진주체	법무부(시행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100%)		
사업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문정지구 11-2BL, 유보지)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34.8㎡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미정 / 17,564㎡(지하 2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70대	- 부지면적: 9,034.8㎡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미정 / 17,799㎡(지하 2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70대	건축연면적 증 235㎡
총사업비	95,278백만원	95,859백만원	증 581백만원 (0.6%)

자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표 2> 법무부 제출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금액	산출근거	변경후 금액	산출근거
합계	95,278		95,859	
기본설계비	999	③시설비 40,148,000천원(요율대상) ×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1,010	③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실시설계비	956	④시설비 40,148,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969	④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건설보상비	50,949	①대지면적 9,034.8㎡ × 5,639천원/㎡ ※ 연부이자 포함	50,949	①대지면적 9,034.8㎡ × 5,639천원/㎡ ※ 연부이자 포함
시설비	40,218	②연면적 17,564㎡ × 2,279천원/㎡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40,754	②연면적 17,564㎡ × 2,279천원/㎡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감리비	2,064	⑤시설비 40,148,000천원(요율대상) × 5.14%	2,083	⑤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5.12%
시설부대비	92	⑥시설비 40,148,000천원(요율대상) × 0.23%	94	⑥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0.23%

주: 감리비 요율차이는 부처가 제출한 자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검토안에서는 별도로 요율을 검토함.
 자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2019.0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

- 추진주체: 법무부(시행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재원분담: 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 국고지원근거
 -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57조(개발)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57조(개발)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3.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3.13>	
④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전문개정 2011.3.30]	

자료: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57조(개발)

○ 현재 시설규모와 신축시설규모 비교

<표 3> 법무부 제출 총사업비 내역

	현재 시설 규모	신축 시설 규모
부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규모	보유청사: 부지 4,121㎡, 건물 6,349㎡(법무부 사이버 안전센터 280㎡ 포함) 임차청사: 이민특수조사대, 전자비자센터 등 2,452㎡	부지- 9,034.8㎡ 건물- 계획안: 17,564㎡, 변경안: 17,799㎡

제II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1. 기초자료 분석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 대상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에 해당함.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남서쪽 끝인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10,049,607명이며, 서울시 거주 외국인인 446,473명으로,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374,425명으로,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인 439,7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약 4천명 이상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설 관련 현황분석

- 인원 현황
 - 계획안 정원 150명

<표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단위: 명)

구분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산
총계	정원	150	1	3	7	30	44	28	17	3	17
	현원	139	1	2	7	32	46	25	6	3	17

※정원 외 총 188명(정원 외 공무원 16, 공무원직 40, 콜센터 104, 법무관 6, 기타 22)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7

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계획안 정원 외 직원

<표 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기준: 2019.3월)

구분	인원(명)	업무	비고
파견공무원	6	청사설비 운영 및 출입국업무 지원	-
수습직원	4	체류관리, 사증발급 등 출입국업무 수행	-
일용직 근로자	3	직원식당 조리 및 식단 업무	-
난민 TF팀	7	난민 신청 심사	-
공익법무관	12	출입국소송, 난민소송 등 수행	-
콜센터 상담원	104	1345 민원 상담	-
차세대 TF팀	16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
전문임기제	10	난민신청자 심사 업무 수행	-
사회복무요원	18	기록물 정리, 보호물품 정리 등 수행	-
공무직	45	행정업무 및 출입국업무 보조 등 수행	-
유지보수업체 직원	1	업무용장비 유지보수	-
기타(은행직원 등)	9	등록증수수료 수납, 전자수입인지 판매 등	은행 6, 재단 3
총원	235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 현 청사 시설 현황

<표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설 현황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준공연도	1985년 5월 21일
규모	토지 : 4,121.2㎡ 건물 : 6,349.2㎡ 지하 2층, 지상 7층
주차	육외 59대
특징	조사 의뢰 당시에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건물 사용 (건물 2~3층은 남부사무소), 2020년 4월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단독 사용. 업무공간 부족으로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 난민심사팀(아시아권)은 외부에 별도 임차건물 사용 중(임차면적: 2,452㎡)

- 사업계획 변경
 - 정원 관련 변경

<표 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준인원 변동현황

(단위 : 명)

구분	종전	변경	증감	비고
정원	150	161	+11	20. 2. 직제개정
정원 외	235	241	+6*	보호시설 운영
총원	385	402	+17	-

주: 기존 서울출입국 정원외 직원(파견공무원 2명)이 서울출입국으로 정원 이체되어 정원 외 직원 증가 인원은 6명임

- 정원 외 직원 관련 변경

<표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변경현황

구분	계획안 인원(명)	변경안 인원(명)	비고
파견공무원	6	6	-
수습직원	4	4	-
일용직 근로자	3	3	-
난민 TF팀	7	7	-
공익법무관	12	12	-
콜센터 상담원	104	104	-
차세대 TF팀	16	16	-
전문임기제	10	10	-
사회복무요원	18	18	-
공무직	45	51	정원으로 이체된 남부사무소 파견인원 2명 제외
유지보수업체 직원	1	1	-
기타(은행직원 등)	9	9	은행 6, 재단 3
총원	235	241	-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2.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 문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가. 사업계획 관련 쟁점

- 사업계획 검토의 한계
 -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등 설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주무부처에서 계획한 연면적과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대략적인 층별 배치도만 제출됨.
 - 또한 대상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으로 시설규모의 법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규모를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검토에서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도입취지에 맞는 시설계획 규모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나.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관련 쟁점

- 시설규모산정 기준인원 검토
 - 본 사업은 청사신축사업으로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무인원이 되어야 하므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인원이 우선 산정되어야 함.
 - 주무부처에서는 당초 정원 및 정원 외 직원을 포함하여 총 385명을 근무인원으로 제시하였으나, 2020년 5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원 161명, 정원 외 241명 총 402명을 근무인원으로 제시하였음.
 - 하지만 본 근무인원에는 정원 외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민원실과 보호실의 경우 민원인 인원과 보호외국인 수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설 규모를 산정함.

□ 외부 임차청사 이전여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외부에 약 2,452㎡ 규모의 임차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외에 이민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의 이전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민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업무의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축청사로의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

-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법무부 자체 시설면적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기준에 없는 시설들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비용 추정 관련 쟁점

□ 공사비 단가 설정

- 주무부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2020년도 건축유형별 단위 면적당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
- 본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동 기금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지침’ 제13조 1호 다목의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용형별 단위면적(1㎡)당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달청 발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공청사 사례를 기준으로 공사비 단가를 검토 필요함.

□ 추가비용 관련 검토

- 본 사업계획 계획안은 공사비 외에 보호 외국인 전용 승강기 및 보호실 자동출입문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설계비에서도 각종 인정 및 평가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추가요구 비용의 공사비 포함(중복)되는지 여부와 추가반영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예비비 등 누락비용 산정

- 본 사업의 계획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예비비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함.

4. 시나리오 및 대안의 설정

본 검토에서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구분하여 검토를 수행함.

<표 9>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구분	계획안	검토안	대안
규모	사업 추진주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규모	사업계획안의 규모를 준용 하되, 적용오류 사항 수정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정 부청사관리 규정 시행규칙 을 토대로 시설규모를 검 토하여 대안규모 산정
비용	사업 추진주체가 제시한 총사업비	검토 단가를 적용하여 비 용 재추정	시설규모를 검토한 대안 규모에 검토 단가를 적용 한 비용 재추정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에 해당하며 1990년 이후 행정서비스 대상이 약 52배 증가하여 업무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사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약 2,452㎡의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현 청사의 경우 2019년 기준 순사무실의 1인당 근무면적은 4.9㎡로 계획안의 순사무실 기준 1인당 근무면적은 6.3㎡임.
 - 현 청사의 1인당 근무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최소 사무면적인 7㎡의 70% 수준임.

<표 10> 1인당 근무면적 산정결과

구분	현 청사	계획안	비고
순사무실면적(㎡)	1,369	2,358	-
근무인원(명)	277	374	-
1인당 근무면적(㎡)	4.9	6.3	-

- 청사의 위치 또한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관할구역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본 사업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2.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 계획안과 변경안의 시설 규모

- 계획안: 총사업비 953억원, 부지면적 9,034.8㎡, 건축연면적 17,564㎡
- 변경안: 총사업비 959억원, 부지면적 9,034.8㎡, 건축연면적 17,799㎡
- 총사업비 비교

<표 11> 계획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안(A)	변경안(B)	증감(B-A)	산출내역
<총사업비>	95,278	95,859	581	
1. 공사비	40,218	40,754	536	연면적 17,799㎡ × 2,279천원/㎡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2. 용지비	50,949	50,949	-	대지면적 9,034.8㎡ × 5,639천원/㎡(조성원가) ※ 연부이자 포함
3. 시설부대경비	4,111	4,156	45	
- 설계비	1,955	1,979	24	1.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2.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 감리비	2,064	2,083	19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5.12%
- 시설부대비	92	94	2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0.23%
4. 부가가치세	-	-	-	
5. 예비비	-	-	-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 시설 규모 비교

<표 12> 시설 규모 비교

(단위 : ㎡)

용도별	시설명	현청사 면적(A)	당초 계획안		변경안	
			면적(B)	증감 (B-A)	면적(C)	증감 (C-A)
업무시설	순사무실, 대회의실	1,555	2,499	944	2,626	1,071
보조저장시설	식당, 창고, 다용도실	220	405	185	428	208
관리시설	수위실, 당직실, 운전원 대기실	37	37	0	37	0
편의시설	휴게실(남, 여), 이발실, 의무실, 체육실	0	161	161	165	165
특수시설	각 팀, 과별 민원실, 실태조사실, 귀화면접실, 난민심사실, 보호실	1,413	6,593	5,180	6,601	5,188
① 전용면적계		3,225	9,695	6,470	9,857	6,632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2,173	4,848	2,675	4,921	2,748
	기계실·전기실 등	323	1,065	742	1,065	742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0	906	906	906	906
	옥내주차장	0	1,050	1,050	1,050	1,050
② 공용면적계		2,496	7,869	5,373	7,942	5,446
③ 외부 임차청사 면적		4,005	-	-4,005	-	-4,005
합계 (①+②+③)		9,726	17,564	7,839	17,799	8,073

주 : 1) 외부 임차청사 면적은 세부 시설 분류가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합산하였음
 2) 현청사 면적 중 남부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용 면적 기준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08.20.),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 부지 계획의 적절성 검토

- 본 사업대상지는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유보지로 인근에 문정역이 위치하여 민원인의 청사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상지와 인접하여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및 지방법원 등 법무부 시설이 밀집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200m가량 이격되어 있어 거주민에 의한 민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지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부지 면적은 9,034㎡로 지구단위계획상 유보지로 지정되어 건폐율 50%, 용적률 150%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무부처 변경안 시설규모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 본 사업의 변경안의 연면적 17,799㎡, 검토안 연면적 17,870㎡, 및 대안 연면적 17,329㎡을 고려할 때 일부 시설을 지하로 배치하여 지하층 면적을 증가시킬 경우 유보지 용적률 150% 수준에서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 시설규모 산출을 위한 기준인원

-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시설규모 산정 인원을 정원, 정원 외 직원, 직원, 근무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명칭에 따른 정의가 확인되지 않음.
 - 연구진이 각 명칭별 인원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인원을 재산정함.

<표 13> 인원기준 정의

구 분	정 의
정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공무원
정원 외 직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행정업무 또는 서비스 업무(청소, 운전 등)를 담당하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직원	정원 내 직원 및 정원 외 직원을 모두 포함한 인원
근무자	정원 내 직원 및 정원 외 직원을 포함하여 해당 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 주무부처에서 2020년 5월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자료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인원은 정원은 161명, 정원 이외의 인원은 241명으로 확인되었음.
 - 정원의 경우 161명이 확정적인 인원이므로, 161명을 기준으로 근무인원을 산정함.
 - 법무부가 제출한 정원 이외의 인원 중 정원 외 직원은 127명만 인정함.
 - 은행 및 전자수입인지 판매인원, 유지보수업체 직원, 콜센터 인원을 정원 외 직원에서 제외함.
 - 하지만 정원 외 직원에서 제외되더라도 업무장소는 필요하므로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함.

<표 14> 정원 외 직원 검토 결과

(단위 : 명)

구분	정원 외	제외대상 근무자	비고
파견공무원	6	-	-
수습직원	4	-	-
일용직 근로자	3	-	-
난민 TF팀	7	-	-
공익법무관	12	-	-
콜센터 상담원	104	104	- 콜센터 위탁업체와 계약되어 위탁업체 소속 -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미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건비 미지급
차세대 TF팀	16	-	-
전문임기제	10	-	-
사회복무요원	18	-	-
공무직	51	-	- 남부사무소에 파견되었던 공무직 2명은 정원 인원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정원 외 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유지보수업체 직원	1	1	-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근무장소만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급여 지급
기타 (은행직원 등)	9	9	- 개별 은행 및 재단 소속으로 근무장소만 서울출입국·외국인 청개별 은행 및 재단에서 급여 지급
총원	241	114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기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

- 정원 외 직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업무 담당과 서비스 업무 담당으로 구분, 서비스 업무 담당은 업무별 별도 시설기준이 있으므로 업무공간 무배정.

<표 15> 업무성격에 따른 정원 외 직원 검토 결과

(단위 : 명)

행정업무 인원		서비스업무 인원		
파견공무원	6	공무직	우편	1
수습직원	4		방호	1
난민 TF팀	7		안내	1
공익법무관	12		청소	4
차세대 TF팀	16		운전	3
전문임기제	10		합계	10
사회복무요원	18		일용직 근로자(식당)	
공무직	41			3
합계	114	합계		13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인원을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인원 검토 결과 종합

(단위 : 명)

정원		정원 외				
		행정업무 인원		서비스업무 인원		
고위직	1	파견공무원	6	공무직	우편	1
4급	3	수습직원	4		방호	1
5급	7	난민 TF팀	7		안내	1
6급	33	공익법무관	12		청소	4
7급	46	차세대 TF팀	16		운전	3
8급	30	전문임기제	10		합계	10
9급	19	사회복무요원	18		일용직 근로자(식당)	3
기능 및 전산	22	공무직	41			
합계	161	합계	114	합계	13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취업허가, 각종 변동신고 등의 업무 외에도 외국인의 사증(Visa)심사, 난민신청 접수 및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시설계획에서도 민원실 규모가 가장 큰데, 민원실의 경우 방문민원인 수 기준으로 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2018년 1월~2019년 7월까지의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민원인 수를 산정
 - 2018년 일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은 1,773명이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 1,588명으로 확인된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동기간 일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은 1,665명으로 2019년 일 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0여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 평균방문민원인 평균 1,705명을 민원인 기준 인원으로 산정

<표 1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처리 현황

월 별	업무처리(건)							일평균 업무 처리(건)	일평균 방문민원 인(명)
	체류 민원	국적	난민	사범	조사	사증	합계		
2018.1	15,085	1,749	789	881	574	1,145	20,223	919	1,379
2018.2	13,442	1,723	395	846	389	1,084	17,879	993	1,490
2018.3	23,750	1,555	584	1,641	712	764	29,006	1,381	2,072
2018.4	18,594	1,652	492	1,817	647	793	23,995	1,143	1,714
2018.5	18,371	1,666	620	1,059	531	842	23,089	1,099	1,649
2018.6	15,873	2,018	883	1,320	673	681	21,448	1,192	1,787
2018.7	17,233	1,391	799	1,151	634	1,687	22,895	1,041	1,561
2018.8	17,486	1,113	714	1,320	533	1,221	22,387	1,018	1,526
2018.9	18,813	3,457	491	1,361	378	457	24,957	1,468	2,202
2018.10	24,302	2,023	3,076	1,472	759	571	32,203	1,533	2,300
2018.11	19,855	2,409	779	1,151	421	767	25,382	1,154	1,731
2018.12	16,049	5,491	450	1,419	449	1,008	24,866	1,243	1,865
2019.1.	15,486	1,647	602	1,100	563	635	20,033	911	1,366
2019.2.	13,882	1,449	492	575	399	752	17,549	1,032	1,548
2019.3.	23,926	1,693	616	1,030	608	455	28,328	1,416	2,125
2019.4.	19,695	1,799	766	1,044	610	488	24,402	1,109	1,664
2019.5.	16,472	2,050	907	999	530	579	21,537	979	1,468
2019.6	14,287	2,966	823	726	504	939	20,245	1,066	1,598
2019.7	15,539	2,040	948	777	730	619	20,653	898	1,347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 경찰서 등 신병인계 등으로 보호되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100명 기준으로 산정함.
 - 보호시설에서 보호시작부터 강제 퇴거까지 평균 10.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단속 및 신병인계를 통해 보호시설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연평균 3,739명으로 산정됨.
 - 보호일수를 고려하여 일 평균 보호 인원수를 산정하면 106명이므로, 시설기준을 100명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함.

<표 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인원 수 산정

구분	보호인원	보호기간	연간 보호 인원	일평균 보호인원
단속인원(명)	3,237	10.4	33,665	92
신병인계인원(명)	502		5,221	14
합 계	3,739	-	38,886	106

□ 외부 임차청사 이전여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은 서울일부와 경기도 일부지역이지만 국적, 난민, 이민특수조사, 전자비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권 외의 지역 또는 전국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존재함.

<표 19>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정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 동 규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하부조직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에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정보화센터, 전자비자센터를 명시하고 있음.

<표 20>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

구 분	하부조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총무과·심사지원과·조사과·감식과·정보분석과·정보관리과·보안관리과), 심사1국(입국재심1과,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심사4과·심사5과·심사6과·심사7과·심사8과·심사9과·심사10과), 심사2국(입국재심2과, 심사11과·심사12과·심사13과·심사14과·심사15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관리과, 국적과, 난민과, 사범과,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정보화센터, 전자비자센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사범과, 조사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국과, 출국과, 정보관리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을 살펴보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직무범위는 국적 및 난민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아시아권 난민에 대한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내의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민과와 국적과는 이전 신축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민특수조사대의 경우 업무의 범위 및 관할구역, 업무 흐름상 신축청사에 외국인 보호소가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정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으로 전자비자센터를 명시하고 있고, 전자비자센터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제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함.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으로 전자

비자센터를 명시하고 있고, 전자비자센터에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직제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정함.

□ 세부시설 규모 검토

- 시설면적 산정 시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기준을 준수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기관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은 해당 주무부처의 산출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명시
 - 사무용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
 - 정부청사관리규정 중복시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우선적용하고,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없는 특수시설은 유사한 시설면적을 적용하거나, 변경안의 실 소요면적을 준용
- 변경안의 설계개요는 동일한 시설을 각 부서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설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을 10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함.
- 순사무실 및 회의실은 재산정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순사무실 및 회의실 규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 재산정된 근무인원 중 정원인원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및 산출식을 적용하고, 정원 외 인원의 경우 ‘202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 면적 적용시 유의사항으로 1인당 7㎡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은 청사취득의 가장 처음단계에서 청사시설을 계획하는 근거이므로, 정원 외 인원에 대한 면적기준의 경우 「202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회의실의 경우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한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정하므로 정부청사시설 기준을 적용함.
 - 검토안에서 순사무실 기준 인원은 275명이며, 면적은 2,058㎡로 산정되었으며, 대회의실 면적은 변경안과 동일하여 순사무실과 대회의실 총 면적은 변경안보다 419㎡ 감소한 2,207㎡로 산정됨.

<표 21> 순사무실 및 회의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기준면적 (㎡)	변경안		검토안		대안 면적(㎡)	
			인원(명)	면적(㎡)	인원(명)	면적(㎡)		
순사무실	기관장실	50	1	50	1	50	50	
	과장실	17	9	153	9	153	153	
	직원	7	151	1,057	151	1,057	1,057	
	정원 외 직원	일반직원	7	227	1,217	102	714	714
		공익법무관	7	12		12	84	84
	소 계			400	2,477	275	2,058	2,058
대회의실			161	149	161	149	149	
합 계			-	2,626	-	2,207	2,207	

- 민원실 및 관련시설은 일평균 방문민원인 1,705명을 기준으로 민원실 면적을 산정한 결과 853㎡가 산출됨.

<표 22> 민원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면적(㎡)
			인원(명)	면적(㎡)	인원(명)	면적(㎡)	
민원실	민원실	민원인×3㎡×1/6	1,408	704	1,705	853	853

주: 면적기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 참조

- 민원실 관련시설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규정이 없는 시설이므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적용하였으며, 변경안에서 기존 청사시설 면적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거나, 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수립함.

<표 23> 민원실 관련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민원실 관련시설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	민원실 면적×10%	20	20	20
	수유 및 유아놀이방	민원인수×3.63㎡×0.1	11	11	11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33㎡	33	33	33
	합 계	-	64	64	64

- 조사실 및 대기실은 주무부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한 각 실별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함.
 - 난민심사실의 경우 난민심사 인원 및 일 평균 난민 면접심사 건수 등 자료상 숫자가 상이하여, 주무부처 제출자료를 통해 일 평균 난민심사 건수를 재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면적을 검토함.
 - 난민심사의 경우 일 평균 44건 처리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오전·오후로 나누어 면접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동시에 22건의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산정하여, 난민심사실을 22개실을 산정하여 대안을 264㎡로 수립함.
 - 조사대기실의 경우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면적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함.

<표 24> 조사실 및 조사대기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조사실	귀화면접실	96	96	96
	국적과 실태조사실	36	12	12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60	60	60
	사범과 위반조사실	36	12	12
	조사과 실태조사실	36	12	12
	영상녹화조사실	120	120	120
	난민심사실	360	360	264
	법법외국인 채증실	20	20	20
	소 계	764	692	596
조사대기실	참고인 대기실	30	30	30
	단속외국인 대기실	20	20	20
	난민통역인 대기실	30	30	30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15	15	15
	조사과 조사대기실	15	15	15
	소 계	110	110	110
	합 계	874	802	706

- 보호시설의 경우 모두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기재된 시설이며, 산출근거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함.

<표 25> 보호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보호 시설	입·퇴소실	1실당 20㎡×2실(남,여)	40	40	40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20
	입소자 화장실	최소 7㎡×2실(남,여)	14	14	14
	입소자 샤워실	최소 10㎡×2실(남,여)	20	20	20
	보호실(독거실)	5.4㎡×8(남4,여4)	43	43	43
	보호실(혼거실)	10명×6.6㎡×10실(남5,여5)	660	660	660
	특별보호방(가족실)	4인가족 기준(1인당 6.6㎡)×2실	52	52	52
	보호외국인 임산부실	200명 미만 16.5㎡	17	17	17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보호외국인(여) 200명 미만 16.5㎡	17	17	17
	보호외국인 종교실	1실당 35㎡×1실	35	35	35
	동감프로그램실	참여인원 20명×5㎡	100	100	100
	근무자실(CCTV포함)	27㎡×2실(남,여)	54	54	54
	보호직원 침실(남,여)	근무직원수(4명)×1/5×4㎡×2실	6	6	6
	경비대원 샤워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20
	경비대원 탈의실	경비대원샤워실(10㎡)의 60%×2(남,여구분)	12	12	12
	경비대원 휴게실	경비대원수(10명)×1/3×1.65㎡×2실(남,여)	11	11	11
	면회실	1실당 17㎡×4실	68	68	68
	변호사 접견실	1실당 10㎡×2실	20	20	20
	보호외국인 고충상담실	1실당 10㎡×2실	20	20	20
	의무실	1실당 13㎡	13	13	13
	보호실 약품창고	1실당 16.5㎡	17	17	17
	보호실소모품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30
	보호실 대어품 보관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30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보호외국인수(100)×0.5㎡	50	50	50
	보호외국인 세탁실(건조실 포함)	보호외국인 300인 미만 55㎡	55	55	55
	합 계			1,424	1,424

- 대강당 및 교육실의 경우 변경안이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근거하여 산정되어, 변경안 면적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나, 통신사무실의 경우 해당 통신실 근무직원은 순사무실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함.

<표 26> 대강당 및 교육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대강당	대강당	참석자 200명×0.5×3.3㎡	330	330	330
	방송실	장비 2조×33㎡	66	66	66
	통신장비실	장비 5조×5㎡	25	25	25
	통신사무실	직원(1명)×5㎡	5	0	0
	소 계		426	421	421
교육실	이민통합지원센터	1실당 66㎡	66	66	66
	이민자사랑방	최소 45㎡	45	45	45
	교육강사 대기실	강사 2명×3.3㎡	7	7	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최소 100㎡	100	100	100
	소 계		218	218	218
합 계			644	639	639

- 관리 및 보조시설은 관리시설, 식당시설, 보관시설, 편의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인원을 재산정하였음.
 - 관리시설인 수위실과 당직실, 운전원대기실의 경우 정원 내 인원을 포함하여 주무부처에서 규모를 산출하였는데, 정원 내 인원은 별도의 업무공간을 배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규모를 재산정함.
 - 식당시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지침과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시설로 산정기준이 상이함. 식당시설의 경우 기관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이므로 정부청사관리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함.
 - 보관시설 중 순사무실 면적과 연동되는 창고는 검토안의 순사무실 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으며, 다용도실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기록물보존서고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함.
 - 편의시설에서 이발실 및 체육실, 의무실은 기존 청사에도 없던 시설이며, 의무실의 경우 보호시설 내에 설치되므로 별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며, 이발실의 경우 주변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제외함이 적정함.
 - 체육실의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한 시설이며,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정함.

- 청소원 대기실의 경우 현재 청사계획이 지하 2층~지상 9층까지로 확대되므로 청소원 대기실이 최소 2~3곳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안에서 제시한 청소원 대기실 면적은 60㎡로 최소 면적 10㎡ 기준으로 남녀 청소원 대기실을 3곳 정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과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정함.
- 직원샤워실과 직원샤워 탈의실의 경우 범무시설 기준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산정되어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함.
- 주무부처에서 2020년 5월 사업계획 변경요청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의 직원으로 8명을 증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들은 정원 외 공무직 인원에 반영하였으나, 신청사 준공 후 필요한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원이 확정된 8명을 제외한 증원 계획 인원(청소직 40명)은 신청사 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 단 기존 정원 외 직원 중 2명은 정원으로 변경되어 총 정원 외 직원의 증가 인원은 6명임.

<표 27> 관리 및 보조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관리시설	수 위 실	9	3	3	
	당 직 실	20	20	20	
	운전원대기실	8	5	5	
	소 계	37	28	28	
보조시설	식당시설	식 당	81	81	81
		조리원휴게실	10	10	10
	보관시설	창 고	173.5	144	144
		다 용 도 실	173.5	0	0
		기록물보존서고	673	673	673
	편의시설	휴 게 실(남)	20	22	22
		휴 게 실(여)	20	22	22
		이 발 실	16	17	0
		의 무 실	24	25	0
		체 육 실	85	85	85
		청소원대기실	60	60	60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17	17	0	

<표 27>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보조시설	직원탈의실	129	129	129
	직원사위실	29	35	35
	직원사위 탈의실	17	21	21
	소 계	1,528	1,341	1,282
합 계		1,565	1,369	1,310

- 특수시설은 기관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시설로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과학수사장비실,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영상음향실,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직장어린이집,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이 해당함.
 -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의 경우 장비 및 백업자료, 서버 보관을 위한 용도인데, 장비 및 서버 규모가 크지 않고, 백업자료의 경우 보관시설에 창고 및 기록물 보존서고가 있으므로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 과학수사 장비실의 경우 시스템 장비 및 집기류 현황, 2020년도 법무부 예산에 장비구축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안을 준용함.
 -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기준이 없으므로 변경안을 준용함.
 - 영상음향실의 경우 대강당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변경안 면적을 준용함.
 - 정보공개 접수처리실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 설치가 필요한 공간으로 담당직원 2인 기준으로 산정된 변경안 면적을 준용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제외함.
 - 유지보수직원 사무실의 경우 유지보수직원은 정원 외 직원에서 제외하였지만, 기존 청사에서도 근무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변경안을 준용함.

<표 28> 특수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특수시설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15	0	0
	과학수사 장비실	50	50	50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30	30	30
	영상음향실	33	33	33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7	7	7
	직장 어린이집	106	142	0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16	16	16
합 계		257	278	136

- 전자비자센터는 현재 외부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콜센터 근무인원 104명에 대한 업무공간이 필요하나, 콜센터 근무인원은 청사관리지침 상 정원 외 직원은 아니므로 법무시설 기준규칙 상의 정원외 직원 기준을 적용하여 1인당 사무면적 5㎡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함.
- 상담원 교육실 및 휴게실, 원격화상 인터뷰실, 장비보관실, 어학실습실 등의 경우 전자비자센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변경안 면적을 준용함

<표 29> 전자비자센터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전자비자센터	콜센터 상담원 업무 공간	-	520	520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99	99	99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12	12	12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33	33	33
	전산장비보관실	100	100	100
	어학실습실	172	172	172
합 계		416	936	936

- 출입국정보화센터는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실과 장비실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비의 실면적을 기준으로 시설을 계획한 변경안을 준용함.
 - 야간근무자 수면실 및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 정보화사업 추진 외주인력 50명이 상주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하나 외주인력은 청사관리지침 상 정원 외 직원은 아니므로 법무시설 기준규칙 상의 정원의 직원 사무실 면적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함.

<표 30> 출입국정보화센터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출입국 정보화 센터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360	360	360
	정보화센터 UPS실	160	160	160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122	122	122
	정보화센터 향온향습실	152	152	152
	백업테이프 보관실	34	34	34
	시스템 부품창고	40	40	40
	마이크로 필름실	44	44	44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 수면실	3	0	0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24	0	0
	엔지니어 작업실	95	95	95
	정보화사업 추진실	250	250	250
합 계		1,284	1,257	1,257

-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하면 공용시설은 5,000㎡이상 규모의 청사에서 40~50%의 공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도록 기재하고 있음.
 - 계획안에서는 적용비율의 최대치인 50%를 적용하였고, 2020년 5월 사업계획 변경안에서는 추가되는 규모에 대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45%를 적용함.

<표 31> 청사수급조정시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

규모 구분 면적 구분	1,000㎡ 미만	1,000 ~ 5,000㎡	5,000㎡ 이상	비 고
전용면적	70 ~ 60%	65 ~ 55%	60 ~ 50%	
공용면적	30 ~ 40%	35 ~ 45%	40 ~ 50%	

-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구분 기준을 기재하고 있으며, 지침에서는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홀, 화장실, 지하주차장 등을 공용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전용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음.
- 변경안의 경우 기계실·전기실을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변압기, 발전기 등의 용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공용면적과 별도로 산정하였는데 기계실·전기실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면적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공용면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지하주차장까지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함.
- 본 검토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5,000㎡ 이상 청사시설의 전용면적대비 공용면적 기준 40~50%의 중간값이 45%를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정함.

<표 32>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

구분	변경안		검토안		대안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용면적	9,857	55	9,828	55	9,531	55
공용면적	7,942	45	8,042	45	7,798	45
합 계	17,799	100	17,870	100	17,329	100

-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와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의 경우 차고의 위치나 차량 출입통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호송버스 차량 출입통로 및 문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공간

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에서 200%를 가산하여 차량출입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차량출입동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를 대형버스 기준으로 59.5㎡를 설정하였으나,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주차장 설계기준에서 주차면을 정할 때 대형자동차는 13.00m × 3.25m를 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적용함.
- 옥내주차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공업무 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안과 대안에서 각각 70대, 68대의 법정주차대수가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옥내주차장 면적을 산정함.
- 주차장 1대당 면적은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방배경찰서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16)’에서 검토한 34.33㎡를 적용함.

<표 33> 공용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4,921	4,747	5,115
	기계실·전기실 등	234	0	0
		61	0	0
		770	0	0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506	506	0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238	238	169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162	162	0
	옥내주차장	1,050	2,389	2,514
합 계		7,942	8,042	7,798

- 기타 은행 및 인지판매 공간의 경우 로비나 복도 등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 변경안의 시설면적의 적용 오류사항을 수정한 검토안의 경우 변경안보다 71㎡ 증가한 17,870㎡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17,329㎡로 산정되어 변경안보다 471㎡ 감소함.

<표 34> 시설규모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m ²) (A)	검토안(m ²) (B)	증감(m ²) (B-A)	대안(m ²) (C)	증감(m ²) (C-A)	
순사무실 및 회의실	기관장실	50	50	-	50	-	
	과장실	153	153	-	153	-	
	직원	1,057	1,057	-	1,057	-	
	정원 외 직원	일반 직원	1,217	714	-419	714	-419
		공익법무관		84		84	
	소 계		2,477	2,058	-419	2,058	-419
대회의실		149	149	-	149	-	
민원실 및 관련시설	민원실	704	853	149	853	149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	20	20	-	20	-	
	수유 및 유아놀이방	11	11	-	11	-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33	33	-	33	-	
	귀화면접실	96	96	-	96	-	
조사실 및 조사대기 실	국적과 실태조사실	36	12	-24	12	-24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60	60	-	60	-	
	사범과 위반조사실	36	12	-24	12	-24	
	조사과 실태조사실	36	12	-24	12	-24	
	영상녹화조사실	120	120	-	120	-	
	난민심사실	360	360	-	264	-96	
	범법외국인 채증실	20	20	-	20	-	
	참고인 대기실	30	30	-	30	-	
	단속외국인 대기실	20	20	-	20	-	
	난민통역인 대기실	30	30	-	30	-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15	15	-	15	-	
	조사과 조사대기실	15	15	-	15	-	
	보호시설	입퇴소실	40	40	-	40	-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20	20	-	20	-	
입소자 화장실		14	14	-	14	-	
입소자 샤워실		20	20	-	20	-	
보호실(독거실)		43	43	-	43	-	
보호실(혼거실)		660	660	-	660	-	
특별보호방(가족실)		52	52	-	52	-	
보호외국인 임산부실		17	17	-	17	-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17	17	-	17	-	
보호외국인 종교실		35	35	-	35	-	
동감프로그램실		100	100	-	100	-	
근무자실(CCTV포함)		54	54	-	54	-	
보호직원 침실(남,여)		6	6	-	6	-	
경비대원 샤워실	20	20	-	20	-		
경비대원 탈의실	12	12	-	12	-		

<표 3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m ²) (A)	검토안(m ²) (B)	증감(m ²) (B-A)	대안(m ²) (C)	증감(m ²) (C-A)
보호시설	경비대원 휴게실	11	11	-	11	-
	면회실	68	68	-	68	-
	변호사 접견실	20	20	-	20	-
	보호외국인 고충상담실	20	20	-	20	-
	의무실	13	13	-	13	-
	보호실 약품창고	17	17	-	17	-
	보호실 소모품창고	30	30	-	30	-
	보호실 대여품 보관창고	30	30	-	30	-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50	50	-	50	-
	보호외국인 세탁실(건조실 포함)	55	55	-	55	-
대가양 및 교육실	대강당	330	330	-	330	-
	방송실	66	66	-	66	-
	통신장비실	25	25	-	25	-
	통신사무실	5	0	-5	0	-5
	이민통합지원센터	66	66	-	66	-
	이민자사랑방	45	45	-	45	-
	교육강사 대기실	7	7	-	7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100	100	-	100	-
관리시설	수 위 실	9	3	-6	3	-6
	당 직 실	20	20	-	20	-
	운전원대기실	8	5	-3	5	-3
식당	식 당	81	81	-	81	-
	조리원휴게실	10	10	-	10	-
저장시설	창 고	173.5	144	-30	144	-30
	다 용 도 실	173.5	0	-173.5	0	-173.5
	기록물보존서고	673	673	-	673	-
편의시설	휴 게 실(남)	20	22	2	22	2
	휴 게 실(여)	20	22	2	22	2
	이 발 실	16	17	1	0	-16
	의 무 실	24	25	1	0	-24
	체 육 실	85	85	-	85	-
	청소원대기실	60	60	-	60	-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17	17	-	0	-17
	직원탈의실	129	129	-	129	-
	직원샤워실	29	35	6	35	6
직원샤워 탈의실	17	21	4	21	4	
특수시설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15	0	-15	0	-15
	과학수사 장비실	50	50	-	50	-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30	30	-	30	-
	영상음향실	33	33	-	33	-

<표 34>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A)	검토안(㎡) (B)	증감(㎡) (B-A)	대안(㎡) (C)	증감(㎡) (C-A)
특수시설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7	7	-	7	-
	직장 어린이집	106	142	36	0	-106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16	16	-	16	-
전자비자센터	콜센터 업무 공간	-	520	520	520	520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99	99	-	99	-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12	12	-	12	-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33	33	-	33	-
	전산장비보관실	100	100	-	100	-
	어학실습실	172	172	-	172	-
	출입국정보화센터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360	360	-	360
정보화센터 UPS실		160	160	-	160	-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122	122	-	122	-
정보화센터 항온항습실		152	152	-	152	-
백업테이프 보관실		34	34	-	34	-
시스템 부품창고		40	40	-	40	-
마이크로 필름실		44	44	-	44	-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 수면실		3	0	-3	0	-3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24	0	-24	0	-24
엔지니어 작업실		95	95	-	95	-
정보화사업 추진실		250	250	-	250	-
전용면적 합계		9,857	9,828	-29.5	9,531	-326.5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 실· 등	4,921	4,747	-174	5,115	194
	기계실·전기실 등	234	0	-234	0	-234
		61	0	-61	0	-61
		770	0	-770	0	-770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506	506	-	0	-506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238	238	-	169	-69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162	162	-	0	-162
	옥내주차장	1,050	2,389	1,339	2,514	1,464
공용시설 합계		7,942	8,042	100	7,798	-144
시설면적 합계		17,799	17,870	70.5	17,329	-470.5

제Ⅳ장 비용추정

1. 비용추정의 개요

□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분석 기준연도 : 2018년 말
- 비용추정 절차 및 방법
 -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자료 기초로 유사사례 검토하여 공사비 단가 선정
 - 총사업비 추정: 검토안, 변경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 항목으로 비용 산정

□ 변경안의 총사업비

<표 35> 변경안의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총사업비>	95,859	
1. 공사비	40,754	연면적 17,799㎡ × 2,279천원/㎡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2. 용지비	50,949	대지면적 9,034.8㎡ × 5,639천원/㎡(조성원가) ※ 연부이자 포함
3. 시설부대경비	4,156	
- 설계비	1,979	1.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2.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 감리비	2,083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5.12%
- 시설부대비	94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0.23%
4. 부가가치세	-	
5. 예비비	-	

자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

2. 총사업비 추정

□ 공사비

○ 조달청의 ‘공사비정보광장¹⁾’ 홈페이지에서 ① 2015년 이후 발주된 공사, ② 1만㎡이상 대형청사, ③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조사·수감 등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④ 2015년 이후 법무부 산하 시설(전국) 기준으로 유사사례를 선정함.

- 11개 사례를 선정하고, 2018년 기준으로 비용보정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을 산출하여 공사비 단가를 산정함.

<표 36> 공사비 단가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발주시기	공사비 단가	부가세 제외금액	비용보정지수	비용보정금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신축공사	2015.01	2,268,015	2,061,832	106.90%	2,204,098
인천논현경찰서 신축공사	2015.06	2,004,114	1,821,922	106.90%	1,947,634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	2016.07	2,217,574	2,015,976	106.50%	2,147,015
전주지방검찰청 신축공사	2016.10	2,182,013	1,983,648	106.50%	2,112,585
금천경찰서 신축공사	2016.11	2,100,285	1,909,350	106.50%	2,033,458
화성동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04	2,206,152	2,005,593	103.10%	2,067,766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05	2,090,773	1,900,703	103.10%	1,959,625
광역수사대 청사 신축공사	2017.08	2,146,038	1,950,944	103.10%	2,011,423
남양주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11	2,055,003	1,868,185	103.10%	1,926,098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8.01	2,069,322	1,881,202	-	1,881,202
수원가정법원청사	2018.02	2,487,128	2,261,025	-	2,261,025
공사비 단가 평균					2,050,175

1)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 변경안에서 누락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의 경우 유사사례를 통해 산정한 공사비단가에 신재생에너지 공사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사례의 중간 년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2017년 공급의무 비율 21%를 제외한 9%를 적용하여 산출함.
- 변경안에서는 보호실 자동출입문, 외국인 전용 승강기 설치비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경우 본 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비용에 대해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대상지인 문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공공청사의 경우 옥상 녹화와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공사비 종합

<표 37> 건축 공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면적(㎡)	건축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합계
검토안	17,870	36,637	1,274	3,791	41,702
대안	17,329	35,527	1,238	3,677	40,442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의 경우 건축부문 요율 제2종(보통) 상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추가 설계비를 반영함.
 - 각종인증 수수료의 경우 본 사업의 대상시설이 공공청사로 의무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관련 행정부처에서 규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함.

<표 38> 일반 및 추가 설계비 산정

구분	면적(m ²)	기준공사비 (백만원)	요율(%)	일반설계비 (백만원)	추가설계비 요율(%)	추가설계비 (백만원)	합계 (백만원)
검토안	17,870	37,911	4.77	1,810	12.75	231	2,041
대안	17,329	36,765	4.78	1,757		224	1,981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

-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진에서 교통영향평가업체 2곳의 견적서를 받아
 평균 금액을 실비로 계상함.

<표 39> 각종 인증 수수료

구분	기준	적용 수수료(원)	비고
BF인증주1)	- 10,000m ² 이상 (제5구간) - 본인증	6,045,000	- 개별시설 공사 완료 후 인증 - 예비인증은 권장사항이므로 제외
녹색건축인증주2)	- 우수등급 이상 - 본인증	8,591,000	- 공사완료 단계 또는 준공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3)	- 15,000~20,000m ² - 1등급 이상	11,900,000	- 공사완료 단계 또는 준공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주4)	- 15,000~20,000m ²	845,500	-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 시 - 1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등급 인 증받은 경우 50% 감면 가능
교통영향평가주5)	-	129,500,000	견적서 2개 평균
합 계		156,881,500	-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2018. 08. 10.시행)
 3)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별표 12], 국토교통부(2019. 12. 23. 시행)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2019. 3. 1. 시행)
 5) 녹색건축무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국토교통부(2018. 1. 18. 시행)
 6) 연구진이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 2곳의 견적서 평균 금액 기준

-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시설부대경비는 다음과 같음.

<표 40>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검토안	대안
B. 시설부대경비	4,791	4,680
B-1. 설계비	2,198	2,138
B-2. 감리비	2,070	2,032
B-3. 부대비	87	85
B-4. 부가가치세	436	425

□ 용지비

- 본 대상지는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SH공사에서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음.
 - 조성원가인 5,253,128원/m²을 기준으로 대상지 면적 9,034.8m²에 대한 용지구 입비는 약 475억원으로 산정함.
 - 용지비의 경우 5년간 연납하고, 3.5%의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5년간 약 35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함.
 - 단, 용지보상비를 법무부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지원한다면 연부이자 발생하지 않음.

□ 예비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 따라 사업수행단계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경우 예비비 10%를 산정함.

□ 총사업비 추정결과

- 검토안은 변경안의 총사업비 958.59억원 대비 113.28억원 증가한 1,071.86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경우는 변경안 대비 총사업비가 98.20억원 증가한 1,056.79억원으로 산정됨.

<표 41> 총사업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안 (A)	검토안 (B)	증감 (B-A)	대안 (C)	증감 (C-A)
A. 공사비	40,754	41,702	948	40,442	-312
A-1. 건축공사비	40,754	36,637	-4,117	35,527	-5,227
A-2. 신재생에너지공사비	-	1,274	1,274	1,238	1,238
A-3. 부가가치세	-	3,791	3,791	3,677	3,677
B. 시설부대경비	4,156	4,791	635	4,680	524
B-1. 설계비	1,979	2,198	219	2,138	159
B-1-1. 일반설계비		1,810	1,810	1,757	-53
B-1-2. 각종 인증 추가설계비		231	231	224	-7
B-1-3. 인증수수료	361	157	-204	157	-204
① BF인증	2	6	4	6	4
② 녹색건축인증	143	9	-135	9	-135
③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0	12	-48	12	-48
④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2	1	-1	1	-1
⑤ 교통영향평가	154	129	-25	129	-25
B-2. 감리비	2,083	2,070	-13	2,032	-51
B-3. 시설부대비	94	87	-7	85	-9
B-4. 부가가치세	-	436	436	425	425
C. 용지비	50,949	50,949	0	50,949	0
C-1. 용지비	-	47,461	47,461	47,461	47,461
C-2. 금융이자	-	3,488	3,488	3,488	3,488
D. 예비비	-	9,744	9,744	9,607	9,607
총사업비	95,859	107,187	11,328	105,679	9,820

제V장 정책성 분석

1. 사업추진 여건 검토

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최상위 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방향과 본 사업 목적이 부합한다고 판단됨.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 신축은 우수 외국인 유입과 국민 불안감 해소라는 기본계획 상의 목표에 부합함.
 - 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는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하여, 외국인 및 법률자문인의 접근성이 낮고, 체류지원 및 감독, 사회통합 등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파악됨.
 - 30년 전 외국인 유입 수준에 대응하는 기능만을 고려하여 건축된 관계로, 직원 사무공간, 민원인 공간, 불법체류자 보호공간이 모두 협소하고, 특히 불법체류자 보호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원활한 단속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주요 상위계획인 「2030도시기본계획」의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정책과 동 사업의 목적 간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서울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외국인 거주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살기 편하도록 우수 외국인 인재 거주지, 다양한 지원시설 및 인포메이션센터와 같은 외국인 맞춤형 인프라 조성을 천명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양질의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방문민원인의 접근성 제고 및 민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 본 조사 대상 사업의 준비 정도는 세부항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용도변경 및 청사 내 부서 배치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법무부는 서울시와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면적 9,034.8㎡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로 협약하여, 신축청사부지 확보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용도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인원 기준으로 면적만 산출하여 대략적인 층별 배치도만 준비한 상태로서, 명확한 청사 공간의 배치 및 운용 계획이 미비한 것을 판단됨.
- 기존 청사와 부지를 용도폐지 하고 기획재정부에 반납하며 반납 후의 용도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예정됨.

나.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한 외부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규청사 건축에 매우 적극적임
 - 법무부는 신규 청사가 기존청사의 문제점인 관할구역 외 위치, 노후화, 협소화 등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청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음.
 - 서울시는 법무부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규청사 건립에 전반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유보지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서울시장 간 논의 자리에서 문정지구 내 유보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SH에서 조속히 추진하며 범주단지와 조화되는 건축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함
 - 지역 내 해당시설의 입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청사 인근의 주요 주거지는 청사로부터 200m정도 떨어져 있고, 청사 출입 민원인들의 동선 상에서 민원인과 지역주민이 접촉할 가능성이 낮음.
 - 신규청사 예정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법

무시설 청사를 출입하는 근로자나 민원인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신규청사 입주에 대해 긍정적인 편임.

2. 정책효과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은 생략이 가능한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함.

3. 사업 특수평가항목 검토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규청사는 국비로 건축될 예정으로 기 확보된 재원은 없어 가산의 여지가 없으며, 신규청사 운영비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 자원조달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그 외에, 신규청사가 입주할 지역의 문화재가치에 대해서는 고려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제VI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생략함.
 - 최근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분석을 생략할 수 있음.

제11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사업내용

-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신축(부지면적: 9,034.8㎡, 건축연면적: 17,799㎡)

□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청사의 위치 또한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관할구역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본 사업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 본 사업대상지는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유보지로 인근에 문정역이 위치하여 민원인의 청사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부지 면적은 9,034㎡로 지구단위계획상 유보지로 지정되어 건폐율 50%, 용적률 150%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무부처 요구안 시설규모에 맞추어 공공청사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함.

□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 시설규모 검토 결과 요구안 17,799㎡ 대비 검토안은 71㎡감소한 17,870㎡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17,329㎡로 산정되어 요구안보다 471㎡ 감소함.

□ 비용 추정

- 총사업비 추정결과
 - 검토안은 요구안의 총사업비 958.59억원 대비 113.86억원 증가한 1,072.45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경우는 요구안 대비 총사업비가 98.77억원 증가한 1,057.36억원으로 산정됨.

□ 정책성 분석

- 사업추진여건 검토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본 사업의 상위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용도 변경 및 청사 운용 계획 등의 측면에서 사업 준비정도가 일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한 외부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됨.

○ 정책효과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함.

○ 사업 특수평가항목 검토

- 재원조달의 위험성 측면에서 특별히 가산하여 평가하거나, 운영비 조달에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지역균형발전 분석

-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생략함.

□ 정책제언

- 사업대상지의 지구계획단위변경을 신속히 진행하고, 신규청사의 공간배치 및 활용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
- 용지비의 연부이자 지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재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 I 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검토의 주요 쟁점
- 제 III 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 제 IV 장 비용 추정
- 제 V 장 정책성 분석
- 제 VI 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 제 VII 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 I 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은 법무부가 1990년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의 위치에 건립한 현재 청사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문정지구 11-2BL, 유보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증가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기존 사무공간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설립 당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당시 명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이었던 서울지역 장기체류외국인의 수는 약 9천명 수준(9,329명)이었으나 현재(2018년 기준) 서울지역 장기체류외국인은 486,397명²⁾으로 행정서비스 대상이 약 52배 증가하였다.

행정서비스 대상 수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관련 행정서비스 유형도 다변화되고 업무도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당시(1990년 기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는 체류관리 및 조사업무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체류관리 및 조사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단속 및 외국인보호 등의 업무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7년 보호집행과 신설, 2009년 국적난민과 신설, 2010년 이민특수조사대 신설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 2015년 출입국정보화 사업을 위한 전자비자센터 신설 등 업무 범위도 점차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늘어난 행정 서비스 대상 및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3일 세

2)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종로 출장소를 신설하였고, 이후 2013년 7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지역 중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공항 제외)·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등을 관할하는 남부사무소를 신설하였다. 현재 남부사무소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기존 청사를 일부 공유하여 사용해 운영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강서구에 부지 11,570㎡, 건축물 연면적 9,917㎡ 규모의 신축 청사를 건설하여 해당 청사로 이전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건축물 연면적은 1990년 신축당시 5,679.02㎡이었으나 2011년 청사동을 증축(670.20㎡)를 증축하여 현재 청사동의 건축물 연면적은 6,349.22㎡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 청사부지에 증축하는 것 이외에 2004년 국적과(661.1㎡) 및 난민과(661.1㎡) 공간을 임차하고, 2011년 이민특수조사대(537.9㎡) 공간을 임차하여 추가 업무공간을 확보하였다. 2015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1,310.80㎡)가 신설되어 해당 업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6년 송무팀 공간 임차(231.4㎡), 2019년 난민심사팀 공간 임차(603.3㎡) 등 지속적으로 청사 외의 별관에 업무공간을 확보해 왔다. 2020년 4월까지의 청사 외부 별관 임차 업무공간은 건축물 연면적 기준 4,005.6㎡이었으나 남부사무소 이전 후(‘20.4) 법무부의 지시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에 위치한 법무부 소유의 양천빌딩 별관 내에 위치했던 국적과, 난민과, 난민과 송무팀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내로 이동하고 해당 부서가 이용하던 공간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입주하여 2020년 7월 현재 청사 외부 별관 임차 업무공간은 연면적 기준 2,452㎡가 되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청사와 임차청사의 연면적을 더한 면적은 8,801.22㎡이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청사와 별관들에 업무공간이 분할배치된 현재 상황의 원인을 외국인체류자 수 증가 및 체류목적 다변화로 인해 업무공간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사업계획안에 기술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시한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부족한 업무·민원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출입국행정서비스와 민원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방문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내용

1. 사업 추진의 경위

본 사업은 2011년 7월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확정 및 기관 배치(안)」에 따라 서울출입국사무소(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가 과천 정부청사 5동으로 입주하려던 계획이 2015년 7월에 해당 시설에 타 부처가 입주하여, 해당 계획이 무산된 후, 법무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2월 서울시와 SH공사에 신축부지(문정지구 내 9,000㎡) 확보 협조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2019년 1월에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면적 9,034.8㎡를 공급받기로 협약했다. 이후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타당성심사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타당성심사과-537(2019.07.08.)) KDI는 이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위탁하였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변경을 근거로 사업계획 변경신청(2020.05)을 하였고 타당성심사과는 이를 받아들여 사업계획이 1회 변경되었다.(타당성심사과-247(2020. 5.21)) 세부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 I-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의 추진 경위

시기	내용	비고
2011.07	국무총리실, 과천청사 입주기관 발표(서울사무소 5동배치)	
2015.07	미래부가 과천청사 5동 입주로 과천청사 이전 무산	
2017.02	SH공사에 신축부지 확보 협조 요청(문정지구 내 9,000㎡)	
2017.10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장 면담(본부장)	
2018.02	서울시 및 SH공사에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 협조 요청	
2018.08	문정지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서울시 방문(법무부장관)	
2018.12	신축부지 면적 관련 회의(법무부, 서울시, SH공사)	

<표 1-1>의 계속

시기	내용	비고
2019.01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면적(9,034.8㎡) 공급 결정	
2019.01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재정계획안 제출(기재부)	
2019.02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행안부)	
2019.03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제출(기재부)	
2019.04	청사수급관리계획 확정	
2019.0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KIPF) (계획안: 건축면적 17,564㎡, 총사업비 952.78억)	
2020.05	사업계획 변경(변경안: 건축면적 17,799㎡, 총사업비 958.59억)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2. 사업 추진의 근거

법무부는 본 사업의 추진근거로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별표 4]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비자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소속기관임을 확인하였다.

<p>「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1항</p> <p>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p>

자료: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1항

<p>「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 13조(대통령령 제30275호)</p> <p>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 10. 11.></p> <p>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p>

둔다. <개정 2005. 8. 12., 2008. 12. 31., 2013. 9. 17., 2018. 5. 8.>

제13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 2. 29., 2009. 5. 2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출입국정책단장 및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2., 2011. 5. 4., 2018. 5. 8.>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 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 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 협상에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9.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관련 정보·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평가업무 총괄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19.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 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 정착 지원
 21.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 적응 지원시책 총괄
 22.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 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25. 여권·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 출입국·외국인행정 관련 제증명에 관한 사항
- ④출입국정책단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2., 2013. 5. 22.>
- ⑤국적·통합정책단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2., 2013. 5. 22.>

[전문개정 2007. 5. 4.]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 13조(대통령령 제30275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및 제29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김해국제공항·감천항·다대포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군포시·의왕시·수원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양평군·여주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김포공항은 제외한다)·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경기도 광명시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울릉군·영덕군·울진군·구미시·김천시·상주시·칠곡군·문경시·경주시는 제외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예산군·서산시·태안군·당진시·홍성군·당진항·보령항·장항항은 제외한다), 충청북도 영동군·옥천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해남군·완도군·영암군은 제외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하동군은 제외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군산시는 제외한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동해시·강릉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철원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영동군·옥천군은 제외한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서울특별시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한다)·안성시·오산시·오산군용비행장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31.>

3. 사업의 내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은 관할구역 밖(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내부인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문정지구)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시행청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총사업비 952억 7천8백만원(국고(국유재산관리기금) 100%), 부지면적 9,034.8㎡, 건축 연면적 17,564㎡(주차대수 70대)이다.

제출된 변경안(2020.05)의 총사업비는 958억 5천9백만원이며, 부지면적은 동일하나 건축 연면적이 17,799㎡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의 이유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및 정원 외 직원의 증가이며 변경안의 정원은 11명 증가한 161명이며 정원 외 직원은 6명 증가한 245명이다. 사업기간은 계획안과 변경안이 동일하다.

본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2019년 8월 적정성 검토 착수 이후 변경안(2020.05)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표 I-2>와 같다. 본 사업계획 변경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추가로 증원되는 인원 중 정원 외 직원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정원 외 근무자에 대한 사무실 기준이 1인당 7㎡를 적용하였다. 정원 외 근무자에 대한 기준은 직전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에는 없던 기준으로,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시 기 검토된 정원 외 직원에 대한 면적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데,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면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적정성검토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변경안(<표 I-2> 참조)을 기준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표 I-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주요 내용

구분	사업계획안	변경안	비고
사업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추진주체	법무부(시행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재원분담	국고 100%(국유재산관리기금 100%)		
사업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문정지구 11-2BL, 유보지)		
사업기간	2020년 ~ 2024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9,034.8㎡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미정 / 17,564㎡(지하 2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70대	- 부지면적: 9,034.8㎡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미정 / 17,799㎡(지하 2층, 지상 9층) - 주차대수: 70대	건축연면적 증 235㎡
총사업비	95,278,000,000원	95,859,000,000원	증 581,000,000원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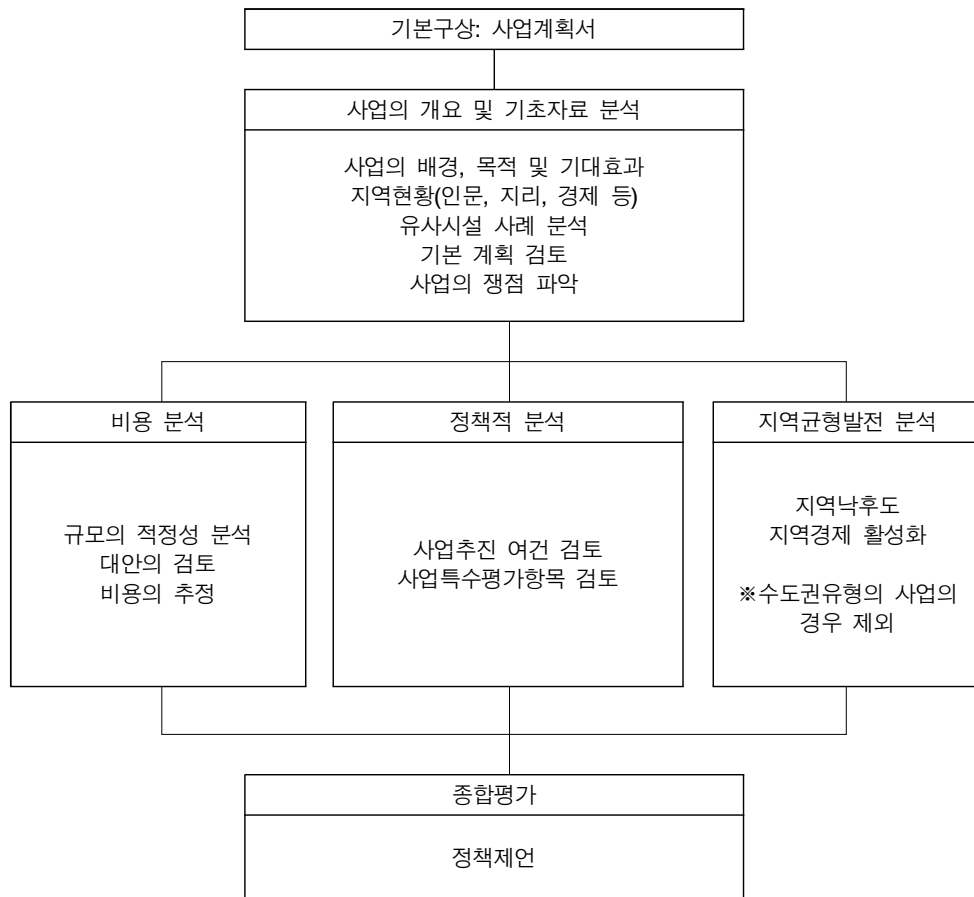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제3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절차는 [그림 I-1]과 같이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비용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 흐름도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내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은 공공청사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8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537(2019.07.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본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 방안,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사업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우선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여러 대안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정을 거쳐 다양한 조사 쟁점을 도출하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사회·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부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조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나.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목적의 적절성은 당초 사업추진 당시와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추가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가를 검토한다.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유리한 시나리오인지의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 전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선정 대안의 적절성은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한다.

다. 비용 검토

본 사업은 법무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추가제출자료를 제시된 사업으로 이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의 규모 및 비용 측면에 대해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본 조사에서는 규모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 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정책성 분석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차원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및 「2019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에 따라 사업추진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및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등), 선택적용 사항인 사업의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등, 문화재 가치 등) 등 정책적 평가항목에 대해 분석한다. 단 분기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해당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 과급효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사업의 대상지가 수도권 이므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 결과와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의 기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바. 종합결론

종합결론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비용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비용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본 조사의 한계점과 향후 본 조사 대상사업의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인 사항을 제안한다.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서울특별시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남서쪽 끝인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II-1] 서울시 지도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가. 인구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10,049,607명이며, 2014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표 II-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자치구	2014	2015	2016	2017	2018
종로구	165,344	163,822	161,922	164,257	163,026
중구	136,227	134,329	134,409	134,593	135,633
용산구	249,914	247,909	245,102	244,444	245,090
성동구	303,891	305,065	307,161	312,711	316,463
광진구	377,375	375,180	372,104	372,298	371,063
동대문구	376,319	373,824	370,312	366,011	364,338
중랑구	423,411	418,620	415,677	412,780	408,147
성북구	475,961	469,560	461,617	455,407	447,687
강북구	338,410	334,426	330,704	328,002	322,915
도봉구	355,712	353,241	350,272	346,234	341,649
노원구	586,056	578,221	571,212	558,075	548,160
은평구	503,243	502,578	495,937	491,202	487,666
서대문구	320,861	323,105	325,871	325,028	323,080
마포구	395,830	398,351	390,887	385,783	386,359
양천구	490,708	489,010	481,845	475,018	468,145
강서구	591,653	595,691	602,104	608,255	603,611
구로구	457,131	454,604	449,600	441,559	438,486
금천구	258,030	256,167	254,654	253,491	254,021
영등포구	421,436	417,811	406,779	402,024	403,600
동작구	419,261	412,774	413,247	408,493	409,385
관악구	531,960	529,031	525,607	520,929	520,040
서초구	454,288	451,258	451,477	445,401	438,163

<표 II-1>의 계속

(단위 : 명)

자치구	2014	2015	2016	2017	2018
강남구	583,446	581,760	572,140	561,052	547,453
송파구	671,794	667,480	664,946	671,173	673,507
강동구	481,332	463,321	448,471	440,359	431,920
계	10,369,593	10,297,138	10,204,057	10,124,579	10,049,607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자료 저자 가공, 검색일자, 2019. 11. 30.

세대수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 2018년에는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세대 당 인구 감소 및 1인~2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2> 서울특별시 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기간	세대 (천세대)	인구									인구밀도 및 면적		세대 당 인구 (명)	65세 이상 고령자
		계			한국인			외국인			인구 밀도 (명/km ²)	면적 (km ²)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014	4,194	10,369	5,109	5,260	10,103	4,979	5,123	266	129	137	17,133	605	2.41	1,221
2015	4,189	10,297	5,063	5,233	10,022	4,930	5,091	274	132	142	17,013	605	2.39	1,267
2016	4,189	10,204	5,007	5,196	9,930	4,876	5,053	273	130	142	16,861	605	2.37	1,300
2017	4,220	10,124	4,957	5,166	9,857	4,830	5,027	267	127	139	16,728	605	2.34	1,365
2018	4,263	10,049	4,910	5,138	9,765	4,773	4,991	283	136	147	16,604	605	2.29	1,416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자료 저자 가공, 검색일자, 2019. 11. 30.

나. 외국인 인구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018년 기준 446,473명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비율이 83% 이상으로 많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9% 정도이다. 한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비율 중 많은 수가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3>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총괄(구별) 통계

(기준 : '18. 11. 08.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합계	446,473	374,425	80,567	32,677	50,488	93,067	117,626	42,040	30,008
종로구	13,012	12,056	1,545	616	4,293	1,636	3,966	514	422
중구	13,141	11,988	1,933	662	2,503	2,422	4,468	633	520
용산구	20,841	19,126	1,971	1,288	1,129	2,517	12,221	774	941
성동구	13,555	11,307	1,985	1,163	2,490	2,290	3,379	1,164	1,084
광진구	22,554	19,729	4,061	1,275	4,471	4,584	5,338	1,701	1,124
동대문구	22,318	19,848	1,780	1,198	8,956	2,364	5,550	1,385	1,085
종랑구	9,132	6,586	998	1,172	604	1,383	2,429	1,274	1,272
성북구	16,773	14,523	912	1,080	6,467	1,335	4,729	1,004	1,246
강북구	7,015	4,947	679	895	720	1,078	1,575	971	1,097
도봉구	4,560	2,951	404	697	313	562	975	695	914
노원구	7,697	5,828	470	969	1,882	631	1,876	735	1,134
은평구	8,895	5,970	805	1,251	237	1,343	2,334	1,356	1,569
서대문구	16,065	14,366	1,062	877	5,437	1,327	5,663	819	880
마포구	14,746	12,776	1,567	1,152	3,024	1,801	5,222	890	1,080
양천구	8,418	5,681	1,075	1,089	68	1,718	1,731	1,423	1,314
강서구	13,192	9,179	1,867	1,690	149	2,668	2,805	2,145	1,868
구로구	54,089	45,686	14,859	3,062	474	14,960	12,331	6,274	2,129
금천구	32,556	27,524	9,355	2,005	149	9,397	6,618	3,728	1,304
영등포구	56,483	49,151	16,474	2,964	420	16,654	12,639	5,761	1,571
동작구	19,970	17,321	3,563	1,122	3,913	4,418	4,305	1,676	973
관악구	30,267	25,418	6,288	1,984	2,139	8,093	6,914	3,308	1,541
서초구	8,712	7,143	999	933	162	2,176	2,873	534	1,035
강남구	10,606	8,814	1,738	1,076	258	2,723	3,019	629	1,163
송파구	13,112	10,123	2,510	1,485	114	3,042	2,972	1,454	1,535
강동구	8,764	6,384	1,667	972	116	1,945	1,684	1,193	1,187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자료 저자 가공, 검색일자, 2019. 11. 30.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은 총 374,425명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67%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 서울특별시시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기준 : '18. 11. 08.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기 타
합계	374,425	251,534	26,940	6,205	15,597	74,149
종로구	12,056	6,493	827	210	1,471	3,055
중구	11,988	5,725	735	139	1,069	4,320
용산구	19,126	2,802	4,758	923	304	10,339
성동구	11,307	6,653	1,083	160	638	2,773
광진구	19,729	14,473	578	261	980	3,437
동대문구	19,848	11,494	566	397	2,069	5,322
중랑구	6,586	3,487	220	120	532	2,227
성북구	14,523	7,206	1,001	298	1,131	4,887
강북구	4,947	2,743	261	94	433	1,416
도봉구	2,951	1,241	263	89	335	1,023
노원구	5,828	2,175	552	193	972	1,936
은평구	5,970	2,950	569	322	443	1,686
서대문구	14,366	6,138	1,654	482	772	5,320
마포구	12,776	5,770	1,693	653	387	4,273
양천구	5,681	3,742	479	93	279	1,088
강서구	9,179	5,698	751	219	350	2,161
구로구	45,686	43,060	342	156	460	1,668
금천구	27,524	25,714	146	72	390	1,202
영등포구	49,151	45,938	894	178	270	1,871
동작구	17,321	13,617	640	136	837	2,091
관악구	25,418	20,083	833	253	646	3,603
서초구	7,143	1,776	2,452	160	97	2,658
강남구	8,814	2,332	3,496	273	137	2,576
송파구	10,123	5,991	1,657	207	268	2,000
강동구	6,384	4,233	490	117	327	1,217

주 :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90일 초과 장기체류자 중에서 작성일 기준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집계결과로서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자료 일자 가공, 검색일자, 2019.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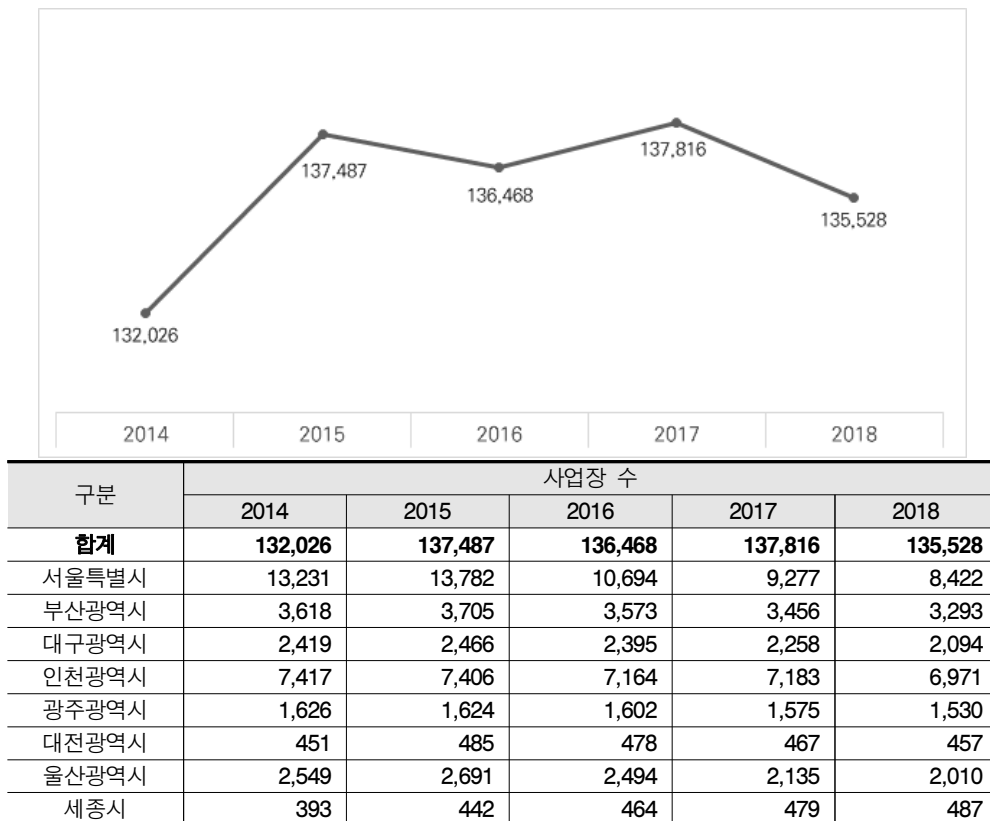
다. 외국인 고용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의 외국인이 해당한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공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최근 5년간 평균 135,000개 이상으로 경기도와 경상남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가 가장 많다.

<표 II-5> 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사업장 수)

(단위 : 개소)



<표 II-5>의 계속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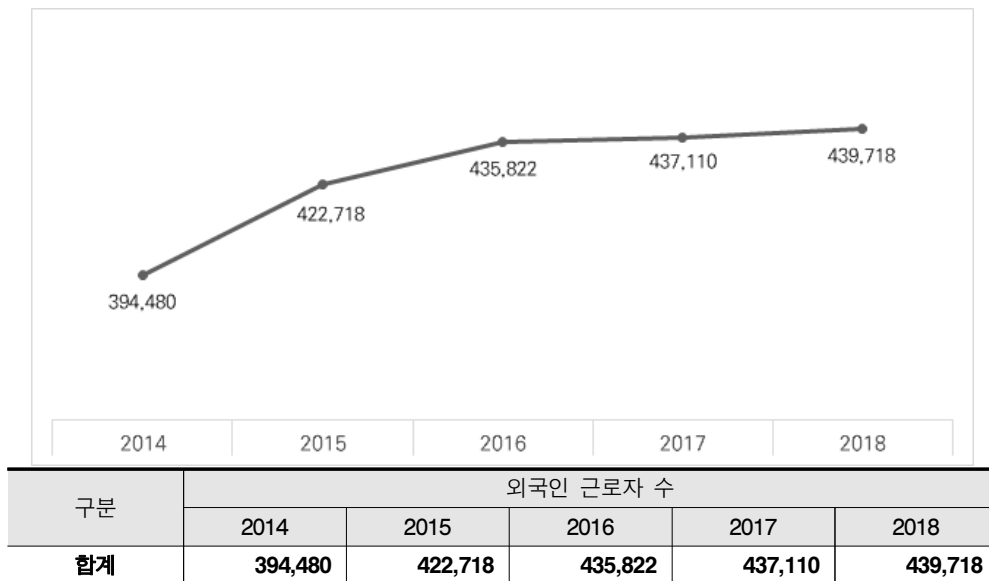
구분	사업장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경기도	52,661	54,272	55,361	57,965	57,308
강원도	2,004	2,118	2,372	2,543	2,562
충청북도	4,845	5,081	5,305	5,613	5,612
충청남도	8,758	9,277	9,514	10,004	9,889
전라북도	3,416	3,709	3,949	4,073	4,211
전라남도	5,185	5,985	6,710	6,810	7,194
경상북도	7,212	7,353	7,270	7,305	7,142
경상남도	14,437	14,956	14,700	13,928	13,353
제주도	1,804	2,135	2,423	2,745	2,983

주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2019. 11. 30.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은 총 374,425명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67%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6> 고용허가제 고용 동향 (외국인 근로자 수)

(단위 : 명)



<표 II-6>의 계속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근로자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특별시	3,069	3,261	3,349	4,017	4,139
부산광역시	14,571	15,852	15,662	15,019	14,020
대구광역시	11,349	12,099	11,657	10,892	10,000
인천광역시	24,012	23,883	23,225	22,988	23,457
광주광역시	6,602	6,898	6,994	6,915	6,508
대전광역시	1,206	1,368	1,382	1,341	1,424
울산광역시	9,444	10,045	9,403	7,955	7,301
세종시	1,611	1,786	1,857	1,031	2,021
경기도	152,824	162,877	172,302	179,151	183,593
강원도	5,010	5,764	6,496	6,282	6,657
충청북도	18,198	19,809	22,021	23,220	24,602
충청남도	29,064	31,178	33,025	35,287	36,523
전라북도	11,890	12,950	13,393	13,048	13,497
전라남도	14,802	17,549	18,922	18,292	19,507
경상북도	30,333	31,580	31,368	30,491	29,717
경상남도	56,926	61,518	59,795	54,444	50,284
제주도	3,569	4,301	4,966	5,817	6,468

주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자, 2019. 11. 30.

3. 시설 관련 현황 분석

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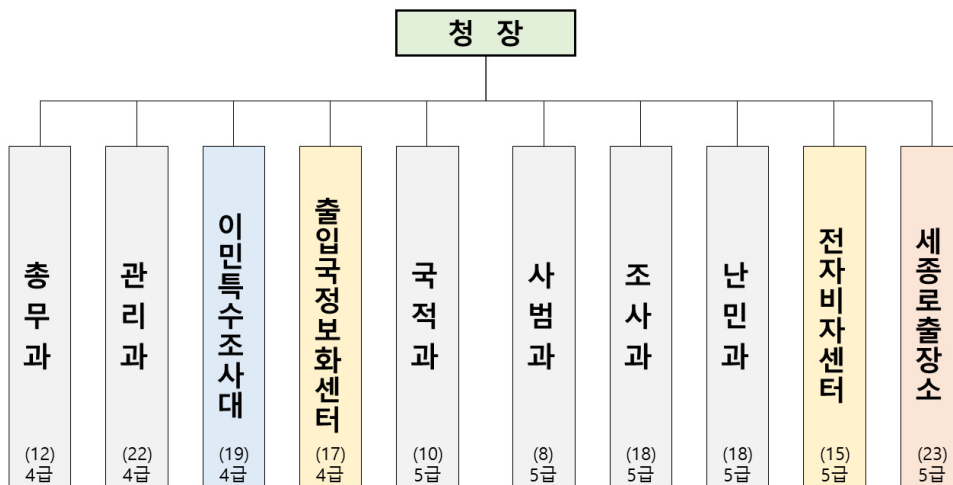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며, 2018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요 직무는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세종로 출장소 관할 구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 및 경기지역 5개 시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3년 서울남부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남부사무소'라 한다.) 신설에 따른 관할 구역 분할로 인해 청사가 관할 구역 밖에 존

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직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6개 과, 1개 특수조사대, 2개 센터, 1개 출장소로 조직되어 있다.

[그림 II-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직도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7.

다. 현 청사 시설 현황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현 청사 시설의 건물면적은 6,349.2㎡로(지하2층, 지상7층) 20년 3월까지의 남부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으나 4월 이후부터는 청사 전체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청사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계획안이 작성된 2019년 8월 시점에는 9개 부서 중 5개 부서가 별도의 외부 임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국적과, 난민과, 난민과 송무팀이 청사 신관으로 이전하여 9개 부서 중 3개 부서가 별도의 외부 임차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외부 임차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3개의 부서(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 난민심사팀(아시아권))가 현 청사와 떨어져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II-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설 현황



구분	내용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준공연도	1985년 5월 21일
규모	- 토지 : 4,121.2㎡ - 건물 : 6,349.2㎡ - 지하 2층, 지상 7층
주차	옥외 59대
특징	- 조사 의뢰 당시에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건물 사용 (건물 2~3층은 남부사무소), 2020년 4월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단독 사용. - 업무공간 부족으로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 난민심사팀(아시아권)은 외부에 별도 임차건물 사용 중(임차면적: 2,452㎡)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표 II-8> 청사와 별관 임차 청사 간 거리

부서명	임차면적 (㎡)	사용인원 (명)	임차 기간 (임차시작일)	현청사와 거리	이동시간 (대중교통/ 자가용)
이민특수 조사대	537.9	19/3	2018.09 ~ 2019.08 (2011. 9)	16km	55분/45분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전자비자센터	1,310.8	9/124	2018.04 ~ 2019.04 (2015. 4)	1.5km	15~20분/약 20분(도보)
난민심사팀 (아시아권)	603.3	9/10	2019.04 ~ 2020.04 (2019. 4)	1.5km	15~20분/약 20분(도보)
계	4,005.6	64/162	-	-	

주: 이동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기능을 이용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7

라. 인원 현황

법무부가 2019년 8월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의 사업계획안에 첨부된 자료 「[참고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인원 현황은 정원 150명, 기타 235명이었다. 하지만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현장조사(2019년 10월 7일)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인원 세부 자료상에서는 <표 II-9>와 같이 정원 외 직원이 188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표 II-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단위: 명)

구분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산	
총계	정원	150	1	3	7	30	44	28	17	3	17
	현원	139	1	2	7	32	46	25	6	3	17

주: 정원 외 총 188명(정원 외 공무원 16, 공무직 40, 콜센터 104, 법무관 6, 기타 22)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7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장조사 당시 제출 내용의 차이에 대해 법무부에 문의 한 결과 법무부는 현장조사 당시 제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정원의 인원의 세부 내역을 요청한 결과 <표 II-10>과 같이 정원 외 직원 구성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II-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기준: 2019.3월)

구분	인원(명)	업무	비고
파견공무원	6	청사설비 운영 및 출입국업무 지원	-
수습직원	4	체류관리, 사증발급 등 출입국업무 수행	-
일용직 근로자	3	직원식당 조리 및 식단 업무	-
난민 TF팀	7	난민 신청 심사	-
공익법무관	12	출입국소송, 난민소송 등 수행	-
콜센터 상담원	104	1345 민원 상담	-
차세대 TF팀	16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
전문임기제	10	난민신청자 심사 업무 수행	-
사회복무요원	18	기록물 정리, 보호물품 정리 등 수행	-
공무직	45	행정업무 및 출입국업무 보조 등 수행	-
유지보수업체 직원	1	업무용장비 유지보수	-
기타(은행직원 등)	9	등록증수수료 수납, 전자수입인지 판매 등	은행 6, 재단 3
총원	235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마.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서 변경(2020.05)에서 주무부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인원을 정원 161명, 정원외 241명, 총 402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표 II-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기준인원 변동현황 (단위 : 명)

구분	종전	변경	증감	비고
정원	150	161	+11	20. 2. 직제개정
정원 외	235	241	+6*	보호시설 운영
총 원	385	402	+17	-

주: 기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외 직원(파견공무원 2명)이 서울출입국으로 정원 이체되어 정원 외 직원 증가 인원은 6명임

정원에서 변경되는 인원은 외국인 보호업무 9명, 공업직 2명이 증원되며, 증원되는 정원 11명 중 2명은 기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외 직원 중 남부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 2명이 복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안에 기재되어있다.

<표 II-1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사업계획 변경안 (세종로 출장소 제외)

(단위: 명)

구분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산
	정원	정원외									
계획안	150	291	1	3	7	30	44	28	17	3	17
변경안	161	241	1	3	7	33	46	30	19	5	17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또한 정원외 직원의 경우 남부사무소의 청사이전으로 외국인 보호경비 및 호송차량 운전이 필요한 공무직 8명(경비대원 7인, 운전원 1인)이 신규배정되었으나, 정원외 인원 중 남부사무소 파견 공무원 2명이 정원으로 이체되어 정원외 직원은 총 6명이 증원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에 기재되어 있다.

<표 II-1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변경현황

구분	계획안 인원(명)	변경안 인원(명)	비고
파견공무원	6	6	-
수습직원	4	4	-
일용직 근로자	3	3	-
난민 TF팀	7	7	-
공익법무관	12	12	-
콜센터 상담원	104	104	-
차세대 TF팀	16	16	-
전문임기제	10	10	-
사회복무요원	18	18	-
공무직	45	51	정원으로 이체된 남부사무소 파견인원 2명 제외
유지보수업체 직원	1	1	-
기타(은행직원 등)	9	9	은행 6, 재단 3
총원	235	241	-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속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이주 노동자의 급속한 유입과 국제결혼,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2030년에 이르면 서울시 외국인 인구가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증가 여건을 반영하여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이 살기에 적합한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주민이 살기 편한 도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증가하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서울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설과 인포메이션센터 등을 주요 거점별로 설치하고, 외국인 인재들에게 친화적인 거주지를 조성하는 등 향후 유입될 외국인의 정착 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문정지구로 이전신축하는 등 사업이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외국인의 정착 지원 강화 정책과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의 목적인 부족한 민원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출입국행정서비스와 민원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방문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³⁾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의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

3)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

는 정책이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유입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와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등 체류외국인 증가와 다양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추진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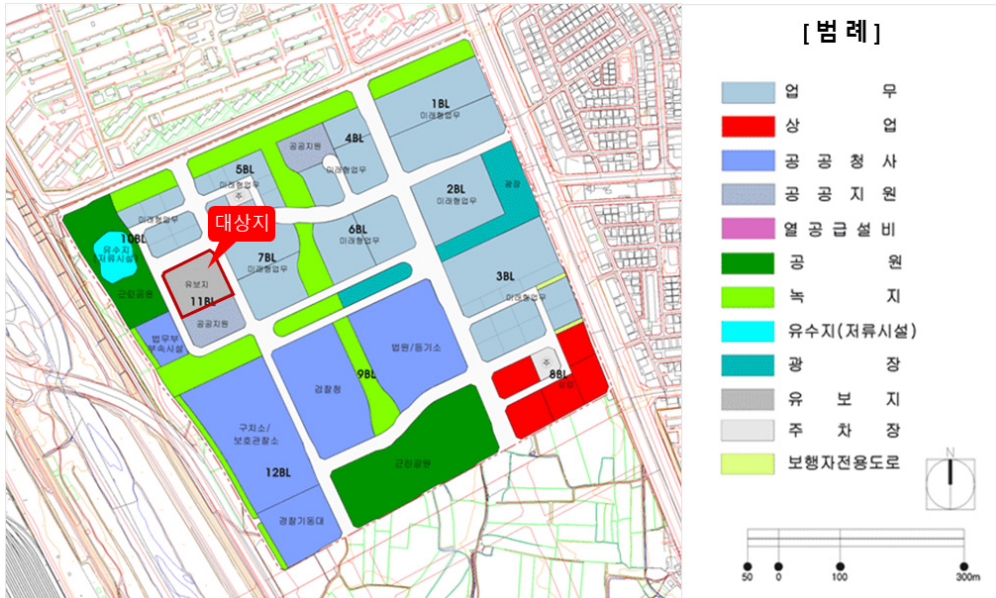
3. 문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사업대상지인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은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한 유보지로 주변에 공공청사(대검찰청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서울동부 지방법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대상지는 현재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법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공공청사 용지의 경우 용적률을 공공청사별로 차등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를 공공청사용지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주무부처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신청사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무부처 제출자료에 의하면 유보지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서울시장간 환담에서 문정지구 내 유보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SH에서 조속히 추진하며 법주단지와 조화되는 건축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사업승인부서인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개발계획 변경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⁴⁾

4)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사 부지공급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방안 보고」, 2019.02.

[그림 II-4] 문정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도



<표 II-1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분	유보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 「건축법」 제60조 3항에 따른 도로사선제한 (H 1.5D)을 적용하지 않음

자료: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9

제3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본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신축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등 설계 계획이 진행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계획한 시설기준은 지하2층~지상9층 규모인데, 이는 단순 인원 기준으로 면적만 산출한 단계로 대략적인 층별 배치도만 제출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설 규모의 법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시설규모를 검토함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도입 취지에 맞는 시설계획 규모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II-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사 층별 배치도(초안)

층별	면적(m ²)	구분						
9층	1,600	청장실 (부속실 포함)	총무과	대회의실	물품창고	식당 (휴게실포함)	방송실 (장비포함)	
8층	1,600	체력단련실	사위실	청소원 휴게실	직원탈의실 (남, 여)	직원휴게실 (남, 여)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7층	1,600	전자비자센터		어학실습실	종합안내센터		콜센터교육실 (휴게실포함)	
6층	1,600	보호실(남자)					경비대원실 (휴게실 포함)	
5층	1,600	보호실(여자)			입소자 대기실 등		면회실	
4층	1,600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정보화센터			정보화사업 추진실	
3층	1,600	이민통합 지원센터	사범과	난민과		엔지니어작업실		
2층	2,100	사증실	국적과 (면접실 포함)	직장어린이집		문서고		
1층	2,100	중국계	일반계	증명발급	투자센터	민원휴게실	당직실	
지하1층	1,082	창고	육내주차장					강당 (영상음향실 포함)
지하2층	1,082	기계실 · 전기실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2.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관련 쟁점

가. 검토의 범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⁵⁾

본 사업의 경우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검토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계획인원 및 시설규모, 총사업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 시설규모 산출을 위한 기준 인원 검토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에는 유사시설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 시설 방문수요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법, 청사 등 공공시설의 경우 근무인원별 시설면적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 사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청사신축 사업이므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민원실 및 보호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민원인과 보호인원을 기준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근무인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 정원에 따라 시설면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인원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 5월 기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안은 정원 161명이며, 정원의 인원은 241명으로 확인되었다.

5)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표 II-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단위: 명)

구분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산
정원	161	1	3	7	33	46	30	19	5	17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정원 외 직원에는 은행 업무 인원 및 수입인지 판매 인원 등 정원 외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사업시설과 관계된 정원 외 직원의 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표 II-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

구분	변경안 인원(명)	업무	비고
파견공무원	6	청사설비 운영 및 출입국업무 지원	-
수습직원	4	체류관리, 사증발급 등 출입국업무 수행	-
일용직 근로자	3	직원식당 조리 및 식단 업무	-
난민 TF팀	7	난민 신청 심사	-
공익법무관	12	출입국소송, 난민소송 등 수행	-
콜센터 상담원	104	1345 민원 상담	-
차세대 TF팀	16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
전문임기제	10	난민신청자 심사 업무 수행	-
사회복무요원	18	기록물 정리, 보호물품 정리 등 수행	-
공무직	51	행정업무 및 출입국업무 보조 등 수행	정원으로 이체된 남부사무소 파견직 2명 제외
유지보수업체 직원	1	업무용장비 유지보수	-
기타(은행직원 등)	9	등록증수수료 수납, 전자수입인지 판매 등	은행 6, 재단 3
총원	241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를 기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 반영

2) 민원인 및 보호외국인 등 인원

민원실 및 보호실 등 시설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원인, 보호외국인의 수의 산정기준을 연평균 또는 업무 집중기간 인원수로 할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적정 시설규모 검토

1) 외부 임차청사 이전여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외부공간 약 2,452㎡를 임차하여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및 전자비자센터, 난민심사팀(아시아권)이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인 서울 및 경기도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시설은 당연히 신축청사로 이전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민행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업무의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축청사로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설기준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 검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청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청사 수급 및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본 시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시설로서 법무부에서 자체 시설면적기준을 수립하여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안의 시설규모 검토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시설기준을 적용했거나, 시설면적 기준에 없는 시설이 추가되어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가. 공사비 단가 검토 쟁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계획안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2020년도 건축유형별 단위 면적당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단가를 1㎡당 2,279천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100%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으로서 동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면적(1㎡)당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3조(면적·단가 기준) 기금청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면적 및 기준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무용·주거용 공용재산에 대한 면적·기준단가 심사 기준

가. **사무용 면적은 [별표3]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후생시설·관사시설·주거시설 등 부대시설은 [별표4] "청사시설기준표"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시설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용·주거용 면적기준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한다.

다.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용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단, 물가상승률, 에너지절약형 설계·시공 등을 고려하여 30% 이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도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기준**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조정한다.

- 이하 생략 -

자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이에 본 검토에서는 조달청 발간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공청사 사례를 기준으로 공사비 단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가비용 관련 검토

계획안에서는 공사비에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및 보호실 자동출입문 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였다. 설계비에서도 각종 인증 및 평가 비용을 설계비 외에 추가로 산정하고 있다. 계획안에서 적용한 추가비용의 인정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비 등 누락비용 산정

주무부처에서 계획한 총사업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사비와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기로 한다.

예비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의 총합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절 시나리오 및 대안의 설정

본 검토에서는 변경안에서 계획한 시설들 중 과도하게 계획되었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제외하여 적정 면적을 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변경안을 기준으로 계산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검토안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시설 및 과도하게 계획된 시설을 제외한 적정면적을 대안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정부청사관리 규정」 및 「법무시설 기준규칙」 등의 기준을 근거로 산출면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II-17> 검토안 및 대안의 설정

구분	계획안	검토안	대안
규모	사업 추진주체가 제시한 사업계획 규모	사업계획안의 규모를 준용하되, 적용오류 사항 수정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정부청사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토대로 시설규모를 검토하여 대안규모 산정
비용	사업 추진주체가 제시한 총 사업비	검토 단가를 적용하여 비용 재추정	시설규모를 검토한 대안 규모에 검토 단가를 적용한 비용 재추정

제III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적정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의 적절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절에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현재 청사가 관할구역 외에 위치함으로 송파, 강동, 성남, 하남 등 원거리 거주자의 청사 방문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내 출입국청사 부재로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외국인 신병인계 시 현 청사까지 과도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으로 인한 관할구역 치안공백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는 1990년 준공 후 31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 신축 당시 9,000명 수준이었던 장기체류외국인이 '18년 말 기준 48만 명으로 약 52배 증가하였고, 1일 방문민원인 평균 약 2,000명 이상 수준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인 대기공간 부족 및 주차공간 협소 등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적정수준의 민원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사 신축 당시 외국인 체류관리 및 조사 업무가 주요업무였으나,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자단속, 국적, 난민, 외국인사회통합, 출입국정보화 등으로 업무가 다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면적의 부족

으로 9개 부서 중 5개 부서가 별도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등 사무실 분산으로 인해 통일적 업무처리의 한계 및 민원인 원스톱서비스 곤란 등 업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현 청사의 경우 순사무실 면적 1,369㎡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남부사무소 인원 2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근무 면적이 4.9㎡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당초 계획안의 경우 순사무실 면적 2,358㎡에 근무인원 374명(현원 139명, 정원외 23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1인당 근무면적이 6.3㎡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에 따르면 사무실 면적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7㎡인데, 현 청사의 경우 4.9㎡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최소 면적의 70% 수준으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 1인당 근무면적 산정결과

구분	현 청사	당초 계획안	비고
순사무실면적(㎡)	1,369	2,358	-
근무인원(명)	277	374	-
1인당 근무면적(㎡)	4.9	6.3	-

이 외에도 청사 설계 당시 보호외국인 계호 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종교실, 변호사접견실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외국인보호(수용) 관리에 한계 및 비상대피시설이 취약하며, 증가하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 부족에 따른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존재, 보호공간 부족으로 단속활동 위축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부족한 업무·민원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출입국행정서비스와 민원환경 제공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중심부로 이전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방문민원인 접근성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청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신축사업의 목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계획안의 시설규모

현 청사의 시설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현 청사 시설현황 사진



조사실

업무공간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및 증명발급센터

청사 내 은행

외국인 보호실

[그림 III-1] 의 계속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규모는 당초 계획안의 경우 총사업비 953억원, 부지면적 9,034.8㎡에 건축연면적 17,564㎡ 지하 2층~지상9층 규모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에서 총사업비 958억원, 건축연면적 17,799㎡로 변경되었다.

<표 III-2> 계획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안(A)	변경안(B)	증감(B-A)	산출내역
<총사업비>	95,278	95,859	581	
1. 공사비	40,218	40,754	536	연면적 17,799㎡ × 2,279천원/㎡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2. 용지비	50,949	50,949	-	대지면적 9,034.8㎡ × 5,639천원/㎡(조성원가) ※ 연부이자 포함
3. 시설부대경비	4,111	4,156	45	

<표 III-2>의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안(A)	변경안(B)	증감(B-A)	산출내역
- 설계비	1,955	1,979	24	1.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2.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 감리비	2,064	2,083	19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5.12%
- 시설부대비	92	94	2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0.23%
4. 부가가치세	-	-	-	
5. 예비비	-	-	-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외부 임차시설을 포함한 현 청사 시설과 당초 계획안의 면적을 비교하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은 특수시설로 분류되는 각 부서별 민원실, 보호실 등이며, 공용면적도 약 5,300m² 이상 증가하지만 외부 임차청사 면적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약 7,800m² 이상 규모가 증가하여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안의 경우에는 면적이 더 증가하여 약 8,000m² 이상 규모가 증가하여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 시설 규모 비교

(단위 : m²)

용도별	시설명	현청사 면적(A)	당초 계획안		변경안	
			면적(B)	증감 (B-A)	면적(C)	증감 (C-A)
업무시설	순사무실, 대회의실	1,555	2,499	944	2,626	1,071
보조저장시설	식당, 창고, 다용도실	220	405	185	428	208
관리시설	수위실, 당직실, 운전원 대기실	37	37	0	37	0
편의시설	휴게실(남, 여), 이발실, 의무실, 체육실	0	161	161	165	165
특수시설	각 팀, 과별 민원실, 실태조사실, 귀화면접실, 난민심사실, 보호실	1,413	6,593	5,180	6,601	5,188
① 전 용 면 적 계		3,225	9,695	6,470	9,857	6,632

<표 III-3>의 계속

(단위 : m²)

용도별	시설명	현청사 면적(A)	당초 계획안		변경안	
			면적(B)	증감 (B-A)	면적(C)	증감 (C-A)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2,173	4,848	2,675	4,921	2,748
	기계실·전기실 등	323	1,065	742	1,065	742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0	906	906	906	906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옥내주차장						
② 공용 면 적 계	9,726	7,869	5,373	17,799	5,446	
③ 외부 임차청사 면적	4,005	-	-4,005	-	-4,005	
합 계 (①+②+③)	9,726	17,564	7,839	17,799	8,073	

주 : 1) 외부 임차청사 면적은 세부 시설 분류가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합산하였음
 2) 현청사 면적 중 남부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용 면적 기준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08.20.),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2. 부지계획의 적절성 검토

본 사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신규 부지에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사업이 추진되는 신축부지는 문정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위치한 유보지로 문정도시개발사업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부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부지 위치의 적정성 검토

대상지에 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외국인 신병인계 시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정역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청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및 지방법원, 준법지원센터 등 법무부 산하의 공공청사가 밀집되어 있다.

북쪽에 있는 주거지와는 20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학교 등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사 설치로 인한 주변 거주민의 민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I-2] 대상지 위치 및 주변 현황



나. 부지구묘의 적정성 검토

본 사업의 신축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주무부처에서 재산교환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국유재산법」상 교환이 불가하여 기존 목동 청사와 부지는 기재부에 반납하고 법무부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신축청사로서 이전 후 기존청사와 부지를 용도폐지 하고 기획재정부에 반납하며 반납 후의 용도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17일 법무부와 서울시 간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부처 협약을 통해 문정지구 유보지 9,034㎡를 신축부지로 확보하였다.

대상지는 현재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공청사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주무부처는 제출자료⁶⁾에서 법무부의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무부에 확인한 결

6)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사 부지공급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방안 보고」, 2019.02.

과 현재는 아직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무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맞춰 서울시와 협의 하에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전신축사업 추진 이전에 서울시 및 SH공사와 구체적인 용도변경 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II-4>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안)

구분	현행(유보지)	변경(공공청사)
대지면적	9,034.8㎡	9,034.8㎡
용도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50% 이하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 부지 공급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방안 보고」, 2019.02

제3절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1. 기준인원 검토

가. 인원기준에 따른 정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의하면 시설규모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원이 크게 정원, 정원 외 직원, 직원, 근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명칭에 따른 정의가 자료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 III-5> 인원기준 정의

구분	정의
정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공무원
정원 외 직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행정업무 또는 서비스 업무(청소, 운전 등)를 담당하는 인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직원	- 정원 내 직원 및 정원 외 직원을 모두 포함한 인원
근무자	- 정원 내 직원 및 정원 외 직원을 포함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

본 검토 진행을 위해 연구진에서는 <표 III-5>와 같이 근무인원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원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나. 인원현황

1) 정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당초 정원 150명 중 현원 139명이 근무 중이고, 정원 외 직원이 235명 근무 중인 것으로 주무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사업계획 변경에서 정원을 161명, 정원의 인원 241명으로 총 인원 402명으로 증원하였다.

적정성 검토 기준이 되는 정원은 사업계획 변경에서 제시한 161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확정적인 인원이므로 현원이 아니라 정원 161명을 근무인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현황(세종로 출장소 제외)

(단위: 명)

구분	합계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전산	
정원	정원	161	1	3	7	33	46	30	19	5	17
	현원	139	1	2	7	32	46	25	6	3	17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07.,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2) 정원 외 직원

2020년 5월 사업계획 변경안 기준으로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하는 정원 외 직원은 총 241명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정원 외 직원의 경우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이 아니며, 단순히 근무장소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인 인원은 정원 외 직원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원 외 직원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파견나온 인원을 인정하여 업무공간을 배정할 예정이므로 다른 기관으로 파견나간 인원을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현황(기준: 2020.5)

구분	인원(명)	업무	비고
파견공무원	6	청사설비 운영 및 출입국업무 지원	-
수습직원	4	체류관리, 사증발급 등 출입국업무 수행	-
일용직 근로자	3	직원식당 조리 및 식단 업무	-
난민 TF팀	7	난민 신청 심사	-
공익법무관	12	출입국소송, 난민소송 등 수행	-
콜센터 상담원	104	1345 민원 상담	-
차세대 TF팀	16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	-
전문임기제	10	난민신청자 심사 업무 수행	-
사회복무요원	18	기록물 정리, 보호물품 정리 등 수행	-
공무직	51	행정업무 및 출입국업무 보조 등 수행	정원으로 이체된 남부사무소 파견직 2명 제외
유지보수업체 직원	1	업무용장비 유지보수	-
기타(은행직원 등)	9	등록증수수료 수납, 전자수입인지 판매 등	은행 6, 재단 3
총원	241	-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기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의 내용을 반영함

주무부처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원 외 직원으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콜센터의 경우 외부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현재까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콜센터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예산에 사업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은행 및 전자수입인지 판매 인원, 유지보수업체 직원, 외부위탁 중인 콜센터 인원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공무직 중에서 남부사무소로 파견나가 있는 직원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2020.05)에서 정원 인력으로 이체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정원 외 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규 배정되는 정원 외 직원 공무직 8명을 추가하여 정원 외 근무인원은 총 241명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8> 정원 외 직원 검토 결과

(단위 : 명)

구분	정원외	제외대상 인원	비고
파견공무원	6	-	-
수습직원	4	-	-
일용직 근로자	3	-	-
난민 TF팀	7	-	-
공익법무관	12	-	-
콜센터 상담원	104	104	- 콜센터 위탁업체와 계약되어 위탁업체 소속 -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미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건비 미지급
차세대 TF팀	16	-	-
전문임기제	10	-	-
사회복무요원	18	-	-
공무직	51	-	- 남부사무소에 파견되었던 공무직 2명은 정원 인원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정원 외 직원에 포함되지 않음
유지보수업체 직원	1	1	-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근무장소만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급여 지급
기타 (은행직원 등)	9	9	- 개별 은행 및 재단 소속으로 근무장소만 서울출입국·외국인 청개별 은행 및 재단에서 급여 지급
총원	241	114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기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2020.05)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

<표 III-8>에 나타난 제외대상 인원은 사무공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인원으로 별도로 사무공간을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이나 인지판매 창구,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설 등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현재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원 외 직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과 시설관리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업무 담당 인원의 경우 업무시설 면적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서비스 업무 담당인원은 해당 업무별로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공간을 배정하는 것은 중복적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비스 업무 담당인원은 업무공간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 업무 담당인원은 공무직 인원이며, 공무직 직원명단에 기재된 담당업무 기준으로 서비스업무 인원을 구분하였다.⁷⁾ 공무직 서비스 업무인원 외에 구내식당에서

7) 법무부 제출 자료(정원의 산출 근거) (2019.12.26)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며, 서비스업무 인원은 공무원 10명, 일용직 근로자 3명으로 총 13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III-9> 업무성격에 따른 정원외 인원 검토 결과

(단위 : 명)

행정업무 인원		서비스업무 인원		
파견공무원	6	공무직	우편	1
수습직원	4		방호	1
난민 TF팀	7		안내	1
공익법무관	12		청소	4
차세대 TF팀	16		운전	3
전문임기제	10		합계	10
사회복무요원	18	일용직 근로자(식당)		3
공무직	41			
합계	114	합계		13

3) 근무자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2020.05)을 기준으로 정원 및 정원 외 직원을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자를 산정하기로 한다.

<표 III-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근무인원 검토 결과 종합

(단위 : 명)

정원		정원외				
		행정업무 인원		서비스업무 인원		
고위직	1	파견공무원	6	공무직	우편	1
4급	3	수습직원	4		방호	1
5급	7	난민 TF팀	7		안내	1
6급	33	공익법무관	12		청소	4
7급	46	차세대 TF팀	16		운전	3
8급	30	전문임기제	10		합계	10
9급	19	사회복무요원	18	일용직 근로자(식당)		3
기능 및 전산	22	공무직	41			
합계	161	합계	114	합계		13

다. 민원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취업허가, 각종 변동신고 등의 업무 외에도 외국인의 사증(Visa)심사, 난민신청 접수 및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체류민원업무의 경우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일평균 49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업무에 있어서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상담 및 서류보완 방문민원인 등 산출 불가능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주무부처의 의견이었다.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민원업무처리 현황을 살펴 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10월까지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평균 최대 방문민원인은 2018년 10월 2,30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일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은 1,773명이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 1,588명으로 확인된다.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동기간 일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은 1,665명으로 2019년 일 평균 방문민원인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0여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평균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평균 방문민원인 평균 1,705명을 민원인 기준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1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처리 현황

월 별	업무처리(건)							일평균 업무 처리 (건)	일평균 방문민 원인 (명)
	체류 민원	국적	난민	사범	조사	사증	합계		
2018.1	15,085	1,749	789	881	574	1,145	20,223	919	1,379
2018.2	13,442	1,723	395	846	389	1,084	17,879	993	1,490
2018.3	23,750	1,555	584	1,641	712	764	29,006	1,381	2,072
2018.4	18,594	1,652	492	1,817	647	793	23,995	1,143	1,714
2018.5	18,371	1,666	620	1,059	531	842	23,089	1,099	1,649
2018.6	15,873	2,018	883	1,320	673	681	21,448	1,192	1,787
2018.7	17,233	1,391	799	1,151	634	1,687	22,895	1,041	1,561

<표 III-11>의 계속

월 별	업무처리(건)							일평균 업무 처리 (건)	일평균 방문민 원인 (명)
	체류 민원	국적	난민	사범	조사	사증	합계		
2018.8	17,486	1,113	714	1,320	533	1,221	22,387	1,018	1,526
2018.9	18,813	3,457	491	1,361	378	457	24,957	1,468	2,202
2018.10	24,302	2,023	3,076	1,472	759	571	32,203	1,533	2,300
2018.11	19,855	2,409	779	1,151	421	767	25,382	1,154	1,731
2018.12	16,049	5,491	450	1,419	449	1,008	24,866	1,243	1,865
2019.1	15,486	1,647	602	1,100	563	635	20,033	911	1,366
2019.2	13,882	1,449	492	575	399	752	17,549	1,032	1,548
2019.3	23,926	1,693	616	1,030	608	455	28,328	1,416	2,125
2019.4	19,695	1,799	766	1,044	610	488	24,402	1,109	1,664
2019.5	16,472	2,050	907	999	530	579	21,537	979	1,468
2019.6	14,287	2,966	823	726	504	939	20,245	1,066	1,598
2019.7	15,539	2,040	948	777	730	619	20,653	898	1,347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라. 보호인원

보호인원의 경우 국내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 경찰서 등 신병인계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을 의미하며, 그림과 같은 보호업무 처리절차를 거쳐 강제퇴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 III-12> 보호업무 처리절차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2)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자료 <표 III-12>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보호된 외국인이 여권발급, 체불입금 등 고충을 해소한 후 강제퇴거집행까지 평균 10.4일의 보호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III-13> 최근 5년간 전국 보호외국인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8월
실인원(명)	21,605	29,926	29,139	31,425	23,859
연인원(명)	258,960	323,408	293,488	318,470	219,631
일평균 보호인원(명)	709	886	804	873	904
1인 평균 보호기간(일)	11.9	10.8	10	10.1	9.2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2)

<표 III-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간 단속업무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단속목표(명)	2,450	2,333	3,118	3,320
단속실적(명)	3,024	3,107	3,362	2,905
달성률(%)	123%	133%	108%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2)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목표를 상회하는 단속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인원이 연간 3,000명 이상인 것으로 주무부처 제출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인원 외에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인계된 보호 외국인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며, 현재 서울의 보호시설은 남부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장방문결과 확인되었다.

<표 III-15> 신병인계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10월	평균
신병인계(명)	748	693	1,080	1,325	1,004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2.)를 바탕으로 재산정

현재 공사 중인 남부사무소 청사가 완공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병인계 인원은 1/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간 보호인원수를 재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간 보호인원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평균
단속인원(명)	3,024	3,107	3,362	2,905	3,237
신병인계인원(명)	374	346	540	662	502
합 계	3,398	3,453	3,902	3,567	3,739

산정된 보호인원에 평균 보호기간 10.4일을 고려하여, 1일 평균 보호 외국인 수를 산정하면 약 106명이 산출된다.

<표 III-1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인원 수 산정

구분	보호인원	보호기간	연간 보호 인원	일평균 보호인원
단속인원(명)	3,237	10.4	33,665	92
신병인계인원(명)	502		5,221	14
합 계	3,739	-	38,886	106

주무부처에서 보호시설의 시설규모의 기준이 되는 보호인원 수를 1일 평균 100명 규모로 산정하였는데, 검토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시설의 1일 평균 보호인원 100명을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외부 임차청사의 이전여부 검토

현재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청사면적 부족으로 인해 외부공간을 임차하여 일부 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무부처 제출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주무부처는 외부 임차청사에 있는 시설이 모두 이전신축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여,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를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규모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제, 관할구역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외부 임차청사 사용 부서의 업무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외부 임차청사 현황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계획서 가 제출된 당시에는 5개과였으나 2020년 4월 현재는 2개 과이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본관과 짧게는 1.5km에서 3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III-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임차청사 위치도



주: 별관1에 있던 부서는 2020년 4월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관으로 이동하고 별관1의 임대는 종료됨.
 자료: 법무부, 「2020년도 신규사업 설명자료」, 2019.

외부임차 청사를 사용 중인 부서는 국적과 난민과 이민특수조사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 난민심사팀(아시아권) 등이며, 임차면적은 약 2,452㎡이다.

<표 III-18> 외부임차청사 현황

구분	임차면적(㎡)	임차 시작일	현청사와 거리	이동시간 (대중교통/ 자가용)
난민심사팀(아시아권)	603.3	2019. 4.	1.5km	15~20분/20(도보)
이민특수조사대	537.9	2011. 9.	16km	55분/45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자비자센터	1,310.8	2015. 4.	1.5km	15~20분/20(도보)
합계	2,452	-	-	-

주: 이동시간은 네이버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하였음.
 자료: 법무부, 「2020년도 신규사업 설명자료」, 2019.

외부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과 중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자비자센터는 주무부처에서 콜센터로 지칭하고 있으나 정식명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므로 이후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표기한다.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로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

에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차 통역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제도 3차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⁸⁾

특히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경우 전화로 상담이 진행되므로 전국 또는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하므로, 업무범위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범위를 벗어나는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기관 및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제 및 관할구역 검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은 서울일부와 경기도 일부지역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직무)	
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4.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 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퇴소자 관리 2.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직무)

8)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moj/196/subview.do>)

하지만 국적, 난민, 이민특수조사, 전자비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권 외의 지역 또는 전국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9>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관악구·광진구·강남구(한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강동구·동작구·송파구·성동구·서초구·용산구(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은 제외한다), 경기도 안양시·과천시·성남시·하남시 ※ 다만, 국적·난민과정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추가로 하고,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관할하며,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을 관할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자·교수·정부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자료: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2.31. [별표 4]

동 규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하부조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I-20>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

구 분	하부조직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총무과·심사지원과·조사과·감식과·정보분석과·정보관리과·보안관리과), 심사1국(입국재심1과,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심사4과·심사5과·심사6과·심사7과·심사8과·심사9과·심사10과), 심사2국(입국재심2과, 심사11과·심사12과·심사13과·심사14과·심사15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관리과, 국적과, 난민과, 사범과,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정보화센터, 전자비자센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사범과, 조사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국과, 출국과, 정보관리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조사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심사과

<표 III-20>의 계속

구 분	하부조직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사범과, 보호과, 의무과

자료: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2.31. [별표 4의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을 살펴보면 출입국·외국인청의 직무범위는 국적 및 난민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아시아권 난민에 대한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내의 업무에 추가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난민과와 국적과는 이전신축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민특수조사대의 경우 직무상으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등의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관할구역에서도 서울외에 인천, 경기도 등 다른 지역까지 관할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 보호소가 신축청사에 설치되므로 업무흐름을 고려할 때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으로 전자비자센터를 명시하고 있고,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전자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기관에 해당하고, 운영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 ㉓ 전자비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

자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다.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현황 및 이전 필요성 검토

1)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현황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현재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민간 운영사의 책임자 외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근무인원은 총 104명이며, 운영사인 민간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⁹⁾.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현재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CBS기독교방송국 본사 건물 1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결과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에 전자비자센터의 차세대 정보화 추진팀이 일부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1>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현황



9) 법무부, 「2019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수행계획서」, 2018.12.26.

<표 III-21>의 계속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사업 예산에서 사무실 임차 보증금 1억 7,000만원, 연간 임대료 약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등의 항목이 시설운영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사업 예산에서 업무망 전용회선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무부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2> 2019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예산현황

구분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사업예산						법무행정 정보화사업 예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합계	공공요금	
비 목	210-01	210-02	210-07	210-09	210-14	-	210-02	
예산액	19,154	65,056	87,394	106,243	13,700	3,639,498	3,931,045	
집행액 ¹ (2019.10월)	577	48,313	68,400	95,623	12,360	2,978,967	3,204,240	
내역	사무비품 구입	회선료 등	건물 임차	사무실 관리비	장비 유지보수	상담원 용역비	-	업무망 전용회선료

주: 현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00천원, 임대료 월 9,000,000원, 관리비 월 12,581,890원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9)

2)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전 필요성 검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직제상으로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기관인 것이 확인되었고, 주무부처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신축청사 이전계

획 수립에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포함한 외부 임차청사를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경우 민원인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이며, 전화상담이 주된 업무이므로 신축청사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 신축청사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신축청사 이전여부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측면에 있어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이전할 경우 임차료와 업무망 전용회선료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감독면에 있어서는 이전하여 한 곳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직제상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기관으로 센터 수행업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신축청사로 이전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사의 임차료와 업무망 전용회선료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외부 임차청사 이전여부 검토 종합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전자비자센터와 이민특수조사대의 경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 및 담당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부시설계획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2019년 8월 제출한 당초 계획안에서 업무시설 및 보조저장시설, 관리시설, 편의시설, 특수시설 등 전용면적 9,695㎡, 공용시설 면적 7,869㎡로, 총 면적 17,564㎡규모의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안(2020.05)에서 근무자 인원 증가로 인해 전용면적 9,857㎡(증가 162㎡), 공용시설 면적 7,942㎡(증가 73㎡) 총 면적 17,799㎡(증가 235㎡)로 규모를 변경하였다.

본 사업적정성 검토는 변경안 면적 17,799㎡를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표 III-23>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설 계획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계획안 면적(A) (㎡)	변경안 면적(B) (㎡)	증감 (B-A)
업무시설	1. 순사무실		2,358	2,477	119
	기관장실	2급 기관장실 50㎡×1명	50	50	-
	과장실	17㎡×9명	153	153	-
	직원	7㎡×140명	980	1,057	77
	정원 외 직원	정원 외 근무자 5㎡×235명 정원 외 근무자 7㎡×증원 6명	1,175	1,217	42
	2. 대 회 의 실	50㎡+0.7㎡×(정원150-20인)	141	149	-
	소 계		2,499	2,626	127
보조 저장 시설	1. 식 당	정원(150명)×1.5㎡×1/3	75	81	6
	2. 창 고	순사무실면적(2,358㎡)×7%	165	173.5	8.5
	3. 다 용 도 실	순사무실면적(2,358㎡)×7%	165	173.5	8.5
	소 계		405	428	23
관리시설	1. 수 위 실	근무자수(3)명 × 3㎡	9	9	-
	2. 당 직 실	당직자수(2)명 × 10㎡	20	20	-
	3. 운전원대기실	근무자수(5)명 × 1.65㎡	8	8	-
	소 계		37	37	-
편의시설	1. 휴 게 실(남)	9.9+(정원75-24인)×0.22	19	20	1
	2. 휴 게 실(여)	9.9+(정원75-24인)×0.22	19	20	1
	3. 이 발 실	6.6+(정원150-60인)×0.1	16	16	-
	4. 의 무 실	22+(정원150인-100인)×0.048	24	24	-
	5. 체 육 실	75+(정원150-100인)×0.16	83	85	2
	소 계		161	165	4
특수시설	1. 중국국가팀 민원실	민원인 400명×3㎡×1/6	200	200	-
	2. 일반국가팀 민원실	민원인 600명×3㎡×1/6	300	300	-
	3. 사증팀 민원실	민원인 40명×3㎡×1/6	20	20	-
	4. 증명발급 민원실	민원인 100명×3㎡×1/6	50	50	-
	5. 국적 민원실	민원인 110명×3㎡×1/6	55	55	-
	6. 귀화면접실	면접실 17㎡, 대기실 15㎡ 1실당 32㎡×3실	96	96	-
	7. 국적과 실태조사실	1실당 12㎡×3실	36	36	-
	8. 난민과 민원실	민원인 60명×3㎡×1/6	30	30	-
	9. 난민심사실	1실당12㎡×30실	360	360	-
	10.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장비 3조×5㎡	15	15	-
	11. 난민통역인 대기실	통역인 10명×3㎡	30	30	-
	12.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	기존면적반영	20	20	-
	13.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실	민원인 48명×3㎡×1/6	24	24	-
	14. 사범과 민원실	민원인 50명×3㎡×1/6	25	25	-
	15. 사범과 위반조사실	1실 12㎡×3실	36	36	-

<표 III-23>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계획안 면적(A) (㎡)	변경안 면적(B) (㎡)	증감 (B-A)
특수시설	16. 조사과 실태조사실	1실당 12㎡×3실	36	36	-
	17. 조사과 조사대기실	최소 15㎡	15	15	-
	18.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1실당 12㎡×5실	60	60	-
	19.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최소 15㎡×1실	15	15	-
	20. 참고인 대기실	참고인(10명)×3㎡	30	30	-
	21. 영상녹화조사실	1실당 12㎡×10실	120	120	-
	22. 과학수사 장비실	실면적	50	50	-
	23. 단속외국인 대기실	최소 20㎡	20	20	-
	24. 범법외국인 채증실	1실당 20㎡	20	20	-
	25. 압퇴소실	1실당 20㎡×2실(남,여)	40	40	-
	26.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
	27. 입소자 화장실	최소 7㎡×2실(남,여)	14	14	-
	28. 입소자 샤워실	최소 10㎡×2실(남,여)	20	20	-
	29. 보호실(독거실)	5.4㎡×8(남4,여4)	43	43	-
	30. 보호실(혼거실)	10명×6.6㎡×10실(남5,여5)	660	660	-
	31. 특별보호방(가족실)	4인가족 기준(1인당 6.6㎡)×2실	52	52	-
	32. 보호외국인 입산부실	200명 미만 16.5㎡	17	17	-
	33.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보호외국인(여) 200명 미만 16.5㎡	17	17	-
	34. 보호외국인 종교실	1실당 35㎡×1실	35	35	-
	35. 동감프로그램실	참여인원 20명×5㎡	100	100	-
	36.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실소요 반영	30	30	-
	37. 근무자실(CCTV포함)	27㎡×2실(남,여)	54	54	-
	38. 보호직원 침실(남,여)	근무직원수(4명)×1/5×4㎡×2실	6	6	-
	39. 경비대원 샤워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
	40. 경비대원 탈의실	경비대원샤워실(10㎡)의 60%×2(남,여구분)	12	12	-
	41. 경비대원 휴게실	경비대원수(10명)×1/3×1.65㎡ ×2실(남,여)	11	11	-
	42. 면회실	1실당 17㎡×4실	68	68	-
	43. 변호사 접견실	1실당 10㎡×2실	20	20	-
	44. 보호외국인 총상담실	1실당 10㎡×2실	20	20	-
	45. 의무실	1실당 13㎡	13	13	-
	46. 보호실 약품창고	1실당 16.5㎡	17	17	-
	47. 보호실소모품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
	48. 보호실 대용품 보관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

<표 III-23>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계획안 면적(A) (㎡)	변경안 면적(B) (㎡)	증감 (B-A)
특수시설	49.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보호외국인수(100)×0.5㎡	50	50	-
	50. 보호외국인 세탁실 (건조실 포함)	보호외국인 300인 미만 55㎡	55	55	-
	51.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직원 200명 미만 : 99㎡	99	99	-
	52.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25명 기준)×1/3×1.5㎡	12	12	-
	53.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직원 150명 미만 : 33㎡ (소회의실 준용)	33	33	-
	54. 전산장비보관실	장비 실면적(콜센터장비)	100	100	-
	55.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시스템서버Rack(W900×D1200×H2000,3.2㎡),랙(107개)×3.2㎡+18㎡(서버간 공간)	360	360	-
	56. 정보화센터 UPS실	UPS전원 제어장치(W250×D100×H1000, 3㎡) 이중화, 배터리뱅크(8식) 및 분전반 설치공간 160㎡	160	160	-
	57.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Rack(W900×D1200×H2000,3.2㎡),랙(38개)×3.2㎡	122	122	-
	58. 정보화센터 항온항습실	Rack 16열 및 여유공간 포함	152	152	-
	59.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수면실	근무요원 3명×1/3×3㎡	3	3	-
	60.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직원수 30명×0.8㎡	24	24	-
	61. 백업테이프 보관실	백업테이프 보관 최소면적	34	34	-
	62. 시스템 부품창고	최소면적 40㎡	40	40	-
	63. 마이크로 필름실	기존 면적 적용	44	44	-
	64. 엔지니어 작업실	엔지니어 13명(현원)×5㎡ 엔지니어 예정증원인력(6명)×5㎡	95	95	-
	65. 정보화사업 추진실	투입인력 50명×5㎡	250	250	-
	66. 이민통합지원센터	1실당 66㎡	66	66	-
	67. 이민자사랑방	최소 45㎡	45	45	-
	68. 교육강사 대기실	강사 2명×3.3㎡	7	7	-
	69.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최소 100㎡	100	100	-
	70. 청소원대기실	최소10㎡×9층×1/3×2실(남,여)	60	60	-
	71. 조리원휴게실	최소 10㎡	10	10	-
72.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최소 16.5㎡	17	17	-	
73. 직원탈의실	정원(75명)×0.8㎡×2(남,여)	120	129	-	

<표 III-23>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계획안 면적(A) (㎡)	변경안 면적(B) (㎡)	증감 (B-A)
특수시설	74. 직원사위실	140명이상:13㎡+1.5㎡(10명당 1.5㎡가산)×2실(남,여)	29	29	-
	75. 직원사위 탈의실	직원사위실(29㎡)×60%	17	17	-
	76. 대강당	참석자 200명×0.5×3.3㎡	330	330	-
	77. 방송실	장비 2조×33㎡	66	66	-
	78. 통신장비실	장비 5조×5㎡	25	25	-
	79. 통신사무실	직원(1명)×5㎡	5	5	-
	80. 영상음향실	장비1조×33㎡	33	33	-
	81. 기록물보존서고	1만권당 99㎡×40%×17만권	673	673	-
	82.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담당직원수(2)명×3×1.2㎡	7	7	-
	83. 수유 및 유아놀이방	민원인수(30명)×3.63㎡×0.1	11	11	-
	84.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1실당 33㎡	33	33	-
	85. 어학실습실	52석(직원2명 당 1석)×3.3㎡(콜센터 직원 기준)	172	172	-
	86. 직장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40명)×2.64	106	106	-
	87.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차재보관 및 작업실 10㎡	16	16	-
소 계			6,593	6,601	8
① 전용면적계			9,695	9,857	162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전용면적의 50%	4,848	4,921	73
	기계실·전기실 등	전기실 234㎡ (변압기 사용량 3000kVA이하)	1,065	1,065	-
		발전기 61㎡ (발전기 용량 1000kVA이하)			
		기계실 770㎡ (연면적 20,000㎡이하)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46㎡×11층 보호외국인 계호시 계구 착용, 보안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원인용과 별도 구분 필요	506	506	-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대형버스(59.5㎡×2대×200%)	238	238	-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차량출입문(4m×4.5m)+차량통 로최소기준(6m×15m) x여유폭(160%)	162	162	-	
옥내주차장	주차대수 70대(15㎡×70대)	1,050	1,050	-	
② 공용면적계			7,869	7,942	73
합 계 (①+②)			17,564	17,799	235

가. 세부 시설 재분류

변경안의 설계개요는 동일한 시설을 각 부서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설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세부 시설을 재분류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1) 순사무실 및 회의실

직원들의 근무공간에 해당하는 순사무실과 회의실을 별도로 구분하기로 한다. 순사무실의 경우 창고 등의 시설과 연동되는 면적으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4> 순사무실 및 회의실 면적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	산출내역	비 고
순사무실	기관장실	50	2급 기관장실 50㎡×1명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과장실	153	17㎡×9명	“
	직원	1,057	7㎡×151명	“
	정원 외 직원	1,217	정원 외 근무자 5㎡×235명 정원 외 근무자 7㎡×증원 6명	“
	소 계	2,477		
회의실	대 회 의 실	149	50㎡+0.7㎡×(정원161-20인)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합 계		2,626		

2) 민원실 및 관련시설

변경안은 민원실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였으나, 본 검토에서는 민원실이라는 고유 업무공간에 대한 적정규모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전체 민원인 대비 민원실 규모를 보기 위해 부서별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민원실 외에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한 공간 및 투자외국인 지원센터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를 민원실 관련 시설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조사실 및 대기실

변경안은 조사실의 경우 민원실과 동일하게 부서별로 구분하였으나, 각 부서별 조사인원을 기준으로 조사실이라는 업무공간에 대한 적정규모를 검토하기로 한다.

조사 대기실은 조사를 받기 전 조사대상 외국인 또는 통역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근무인원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검토하기로 한다.

<표 III-25> 조사실 및 대기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조사실	귀화면접실	96	면접실 17m ² , 대기실 15m ² , 1실당 32m ² ×3실	법무시설 기준규칙
	국적과 실태조사실	36	1실당 12m ² ×3실	“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60	1실당 12m ² ×5실	“
	사범과 위반조사실	36	1실 12m ² ×3실	“
	조사과 실태조사실	36	1실당 12m ² ×3실	“
	영상녹화조사실	120	1실당 12m ² ×10실	“
	난민심사실	360	1실당12m ² ×30실	“
	범법외국인 채증실	20	1실당 20m ²	“
소 계	764			
조사 대기실	참고인 대기실	30	참고인(10명)×3m ²	“
	단속외국인 대기실	20	최소 20m ²	“
	난민통역인 대기실	30	통역인 10명×3m ²	“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15	최소 15m ² ×1실	“
	조사과 조사대기실	15	최소 15m ²	“
	소 계	110		
합 계	874			

4) 보호시설

변경안에서 계획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외국인 보호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III-26> 보호시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 (㎡)	산출내역	비 고
보호시설	입·퇴소실	40	1실당 20㎡×2실(남,여)	법무시설 기준규칙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20	1실당 10㎡×2실(남,여)	“
	입소자 화장실	14	최소 7㎡×2실(남,여)	“
	입소자 샤워실	20	최소 10㎡×2실(남,여)	“
	보호실(독거실)	43	5.4㎡×8(남4,여4)	“
	보호실(혼거실)	660	10명×6.6㎡×10실(남5,여5)	“
	특별보호방(가족실)	52	4인가족 기준(1인당 6.6㎡)×2실	“
	보호외국인 임신부실	17	200명 미만 16.5㎡	“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17	보호외국인(여) 200명 미만 16.5㎡	“
	보호외국인 종교실	35	1실당 35㎡×1실	“
	동감프로그램실	100	참여인원 20명×5㎡	“
	근무자실(CCTV포함)	54	27㎡×2실(남,여)	“
	보호직원 침실(남,여)	6	근무직원수(4명)×1/5×4㎡×2실	“
	경비대원 샤워실	20	1실당 10㎡×2실(남,여)	“
	경비대원 탈의실	12	경비대원샤워실(10㎡)의 60%×2(남,여구분)	“
	경비대원 휴게실	11	경비대원수(10명)×1/3×1.65㎡ ×2실(남,여)	“
	면회실	68	1실당 17㎡×4실	“
	변호사 접견실	20	1실당 10㎡×2실	“
	보호외국인 고충상담실	20	1실당 10㎡×2실	“
	의무실	13	1실당 13㎡	“
	보호실 약품창고	17	1실당 16.5㎡	“
	보호실 소모품창고	30	보호외국인수(100)×0.3㎡	“
	보호실 대용품 보관창고	30	보호외국인수(100)×0.3㎡	“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50	보호외국인수(100)×0.5㎡	“	
보호외국인 세탁실(건조실 포함)	55	보호외국인 300인 미만 55㎡	“	
합 계		1,424		

5) 대강당 및 교육실

변경안은 국적취득자를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위한 대강당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 및 교육실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다.

<표 III-27> 대강당 및 교육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대강당	대강당	330	참석자 200명×0.5×3.3m ²	법무시설 기준규칙
	방송실	66	장비 2조×33m ²	“
	통신장비실	25	장비 5조×5m ²	“
	통신사무실	5	직원(1명)×5m ²	“
	소 계	426		
교육실	이민통합지원센터	66	1실당 66m ²	“
	이민자사랑방	45	최소 45m ²	“
	교육강사 대기실	7	강사 2명×3.3m ²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100	최소 100m ²	“
	소 계	218		
합 계		644		

6) 관리 및 보조시설

변경안은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과 보조저장시설, 직원 편의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표 III-28> 관리 및 보조시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관리시설	수 위 실	9	근무자수(3)명 × 3m ²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당 직 실	20	당직자수(2)명 × 10m ²	“	
	운전원대기실	8	근무자수(5)명 × 1.65m ²	“	
	소 계	37			
보조 시설	식당 시설	식 당	정원(161명)×1.5m ² ×1/3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조리원휴게실	최소 10m ²	법무시설 기준규칙	
	저장 시설	창 고	173.5	순사무실면적(2,477m ²)×7%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다 용 도 실	173.5	순사무실면적(2,477m ²)×7%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기록물보존서고	673	1만권당 99m ² ×40%×17만권	법무시설 기준규칙

<표 III-28>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보조 편의 시설	휴 게 실(남)	20	9.9+(정원81-24인)×0.22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휴 게 실(여)	20	9.9+(정원80-24인)×0.22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이 발 실	16	6.6+(정원150-60인)×0.1	“
	의 무 실	24	22+(정원150인-100인)×0.048	“
	체 육 실	85	75+(정원150-100인)×0.16	“
	청소원대기실	60	최소10m ² ×9층×1/3×2실(남,여)	법무시설 기준규칙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17	최소 16.5m ²	“
	직원탈의실	129	정원(75명)×0.8m ² ×2(남,여)	“
	직원샤워실	29	140명이상:13m ² +1.5m ² (10명 당 1.5m ² 가산)×2실(남,여)	“
	직원샤워 탈의실	17	직원샤워실(29m ²)×60%	“
	소 계	1,528		
	합 계	1,564		

7) 특수시설

변경안의 특수시설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기재되지 않고, 각 기관의 고유업무를 위한 시설을 모두 특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검토에서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특수시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표 III-29> 특수시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특수시설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15	장비 3조×5m ²	-
	과학수사 장비실	50	실면적	-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30	실소요 반영	-
	영상음향실	33	장비1조×33m ²	-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7	담당직원수(2)명×3×1.2m ²	-
	직장 어린이집	106	영유아 1인당(40명)×2.64	-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16	자재보관 및 작업실 10m ²	-
	합 계	257		

8) 전자비자센터

변경안에서 현재 외부에 임차중인 전자비자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신축청사 이전을 위한 시설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II-30> 전자비자센터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전자비자 센터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99	직원 200명 미만 : 99m ²	-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12	(25명 기준)×1/3×1.5m ²	-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33	직원 150명 미만 : 33m ² (소회의실 준용)	-
	전산장비보관실	100	장비 실면적(콜센터장비)	-
	어학실습실	172	52석(직원2명 당 1석)×3.3m ² (콜센터 직원 기준)	법무시설 기준규칙
합 계		416		

9) 출입국정보화센터

출입국정보화센터의 경우 장비실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공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III-31> 출입국정보화센터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출입국 정보화 센터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360	시스템서버Rack(W900×D1200×H2000,3.2m ²),랙(107개)×3.2m ² +18m ² (서버간 공간)	-
	정보화센터 UPS실	160	UPS전원 제어장치(W250×D100×H1000, 3m ²) 이중화, 배터리뱅크(8식) 및 분전반 설치공간 160m ²	-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122	Rack(W900×D1200×H2000,3.2m ²),랙(38개)×3.2m ²	-
	정보화센터 항온항습실	152	Rack 16열 및 여유공간 포함	-
	백업테이프 보관실	34	백업테이프 보관 최소면적	-
	시스템 부품창고	40	최소면적 40m ²	-

<표 III-31>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출입국 정보화 센터	마이크로 필름실	44	기존 면적 적용	-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수면실	3	근무요원 3명×1/3×3m ²	-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24	직원수 30명×0.8m ²	-
	엔지니어 작업실	95	엔지니어 13명(현원)×5m ² +엔지니어 예정증원인력(6명)×5m ²	-
	정보화사업 추진실	250	투입인력 50명×5m ²	-
합 계		1,284		

10) 공용시설

공용시설은 계단, 복도, 로비, 화장실 등의 공간과 기전실·전기실, 보호외국인전용 이동경로 관련시설 및 옥내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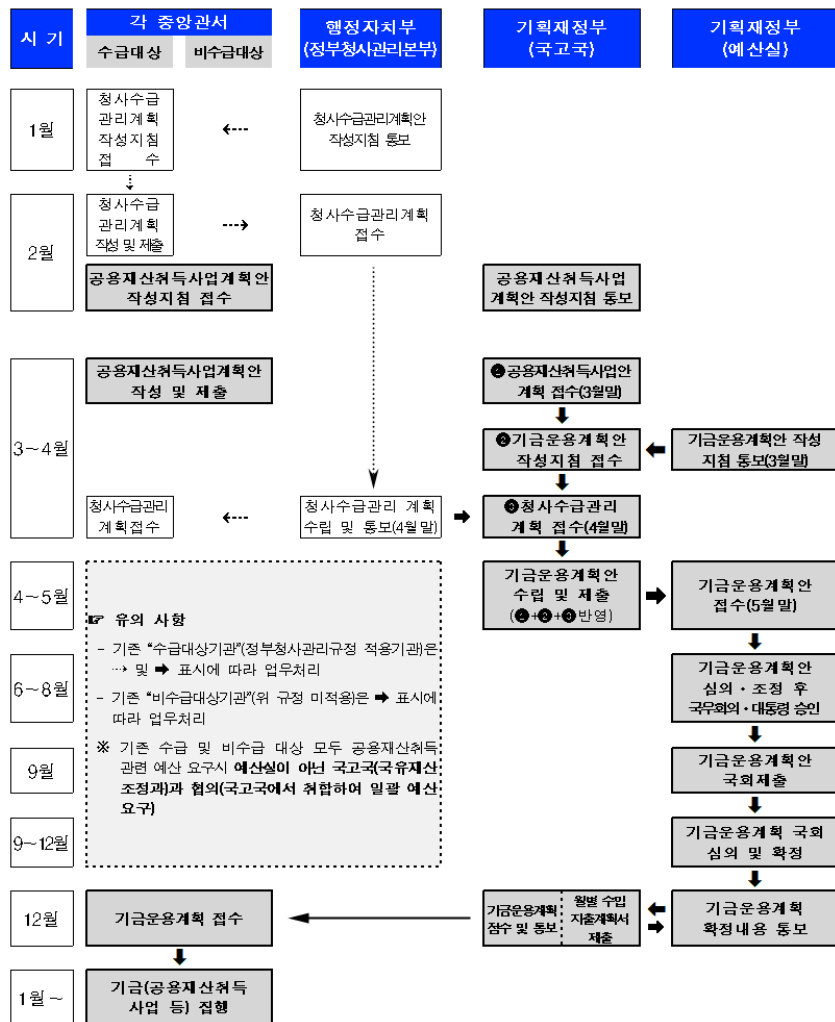
<표 III-32> 공용시설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면적(m ²)	산출내역	비 고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4,921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 등 전용면적의 50%	법무시설 기준규칙
	기계실·전기실 등	234	전기실 234m ² (변압기 사용량 3000kVA이하)	“
		61	발전기 61m ² (발전기 용량 1000kVA이하)	“
		770	기계실 770m ² (연면적 20,000m ² 이하)	“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506	46m ² ×11층(-보호외국인 계호시 계구 착용, 보안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원인용과 별도 구분 필요)	-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238	-대형버스(59.5m ² ×2대×200%)	-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162	-차량출입문(4m×4.5m)+차량 통로최소기준(6m×15m)×여유 폭(160%)	-
	옥내주차장	1,050	주차대수 70대(15m ² ×70대)	-
합 계		7,942		

나. 세부 시설규모 검토 기준

본 사업의 대상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건물은 「국유재산법」상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청사시설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용재산취득을 위해서는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사·조정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III- 4] 공용재산취득사업 상세 수행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2018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침인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일반 작성지침 유의사항은 사무용 면적에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⁹⁾을 적용하고, 주거시설·후생시설·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은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부록]청사시설 기준표¹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 작성지침에서 기관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은 해당 중앙관서의 산출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III- 5]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일반작성지침

- 4) 기타사항
- 별첨 작성서식 중 “1. 공용재산 보유현황”은 요구사업의 2019년도 공용재산 취득사업계획 반영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인원, 시설 등에 누락이 없어야 함 (현재 작성기관에서 보유(임차 포함) 하고 있는 모든 현황에 대해 기재)
 - 사무용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시설·후생시설·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은 「같은 규정 시행규칙」 [부록]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 (V. 기타사항 - 2. 청사시설 면적기준 등 참조)
 - 이전 신축의 경우 “중전부지 처분계획”을 반드시 작성
- 이전 신축한 경우 중전부지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활용계획은 예외적으로만 인정

결과적으로 사무용 재산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별표1] 청사 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⁹⁾ 및 [부록] 청사시설기준표¹⁰⁾를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각 기관의 고유업무를 위한 특수시설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두 기준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시설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법무부의 고유업무를 위한 시설 중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시설의 경우에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있는 유사한 시설의 면적을 준용하거나, 변경에서 실 소요면적을 적용한 경우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정원 외 직원(근무자)의 경우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 면적 적용 시 유의사항으로 1인당 7㎡를 적용하도록 명시¹⁰⁾(단, 교대근무자 등 비상근 5㎡)되어 있다. 정원 외 근무자의 1인당 근무면적의

10) 행정안전부, 「202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 2020.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이나 ‘청사시설기준표’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그림 III-4] 공용재산취득사업 상세수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사취득의 최초 단계에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청사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정원 외 직원에 대한 면적기준은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정원 외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에 대한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33>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 (제곱미터)	단독사무실 (제곱미터)	비고
장관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99	집무실·비서실
	청장실		99	집무실·비서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급	차관보실		50	집무실
	기획관리실장실		50	집무실
	청의 차장실		66	집무실·비서실
	기관장실		66	집무실·부속실
	위원실		33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33	집무실
	기관장실		50	집무실·부속실
	위원 3급과장	1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4급	국장·과장	17		집무면적
	서기관	7		집무면적
	기관장실		33	집무실·부속실
5급	과장	17		집무면적
	사무관	7		집무면적
	기관장실		17	집무실
6급 이하	과장	10		집무면적
	일반직원	7		집무면적
	기관장	17		집무면적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2017.07.26. [별표 1]

<표 III-34>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부록)

용도별	시 설 명	기 준	비 고
업무시설	1. 상황실		
	장관급 기관	165㎡	
	차관급 기관	132㎡	
	2. 회의실	50㎡ + 0.7㎡(정원-20인)	20인 이하는 미설치
보조시설 저장시설	1. 식 당	정원 × 1.5㎡ × 1/3	주방포함
	1. 창 고	순사무실면적 × 7%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문서고	순사무실면적 × 7%	
관리시설	1. 수위실	근무자수 × 3㎡	
	2. 당직실	당직자수 × 10㎡	
	3. 차 고	대형차 20㎡ × 관용차량 수	출입면적 별도산정
		중형차 15㎡ × 관용차량 수	
		소형차 13.2㎡ × 관용차량 수	
	4. 지하주차장 등	45㎡	
5. 운전원대기실	운전원수 × 1.65㎡		
편의시설	1. 휴게실	9.9㎡+(정원-24인)×0.22㎡	정원 24인 미만 제외
	2. 이발실	6.6㎡+(정원-60인)×0.1㎡	정원 60인 미만 제외
	3. 의무실	22㎡+(정원-100인)×0.048㎡	정원 100인 미만 제외
	4. 체육실	75㎡+(정원-100인)×0.16㎡	정원 100인 미만 제외
주거시설	- 내용 생략 -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2018. [별표 4]

2) 법무시설 기준규칙

법무부는 1993년부터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별도로 규정하여 청사 면적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출입국관리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표 III-3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면적기준

(단위 : ㎡)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소장실	•3급 : 50㎡ •4급 : 33㎡ •5급 : 17㎡	•정부청사관리 규정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12.29.>
국장실	•33㎡		
과장실	•17㎡		
사무실 일반직원	•정원내 직원 : 7㎡ •정원외 직원 : 5㎡ •공익법무관 : 7㎡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개정 2017.12.29.>
총무과 민원창구	•10㎡		<신설 2017.12.29.>
대회의실	•직원 100명 미만 : 66㎡ •직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99㎡ •10명 증가마다 3㎡ 가산	•청사 시설기준	
소회의실	•직원 150명 미만 : 33㎡ 10명 증가마다 1㎡ 가산	•청사 시설기준	
민원실	•민원인 × 3㎡ × 1/6	•	
체류관리실	•근무자수 × 7㎡ •민원인수 × 3㎡ × 1/6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1" •체류사무실의 방문민원실	
심사실	•근무자수 × 7㎡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심사민원실	•근무자수 × 7㎡ •민원인수 × 3㎡ × 1/6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심사 사무실의 방문민원수	
사증실	•근무자수 × 7㎡ •민원인수 × 3㎡ × 1/6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사증 사무실의 방문민원수	

<표 III-35>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국적업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자수 × 7m² •민원인수 × 3m²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국적 사무실의 방문민원수 	
난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자수 × 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난민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과 직제기관은 조사담당직원 1명당 1실 •기타기관은 조사담당직원 3명당 1실 •1실당 : 1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개정 2017.12.29.>
증명발급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자수 × 7m² •민원인수 × 3m² ×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국적 사무실의 방문인원수 	
조사과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자수 × 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사무실 면적 	
민원인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직원수 × 3 × 1/6 		
위반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수 : 조사담당직원 3명당 1실 •1실당 : 12m² 		<개정 2017.12.29.>
위반조사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조사담당 직원수 × 1.5m²(최소 : 15m²) 		
영상녹화 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범 조사 및 증거확보 공간필요 (CCTV, 녹취시설, 방음장치 설비 포함) 	
장비보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에 따른 실면적 		
참고인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인×3m² 		
채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² 		<신설 2017.12.29.>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석자 × 0.5 × 3.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외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입국법령 및 사회통합교육과 다양한 결혼이민자 행사 유치 등 	
민원인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검색실겸용 	
수유실 및 유아놀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수 3.63m² ×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동반 방문민원인 	
이민통합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실당 6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인원 4명7m² •민원상담공간 38m² 	<개정 2017.12.29.>
이민자사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인수 × 3m² × 1/4 •최소면적 4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인수 × 3m² × 1/4 	<개정 2017.12.29.>

<표 III-35>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이민자교육실	•교육대상자수 2.2m ² •최소면적 40m ² ,	•1인당 2.2m ² × 30명	
강사 대기실	•강사 × 3.3m ²	•법무시설기준규칙(법무 연수원강사대기실)	<개정 2017.12.29.>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료실	•최소 100m ² (교육 기자재 등 실제 소요면적)	•법무시설기준규칙 (법무연수원교육자료실)	<개정 2017.12.29.>
귀화면접실	•1실당 32m ²	•면접실 17m ² •면접대기실 15m ²	•면접관 2명×7m ² •면접자 1명×3m ² •대기자 5명×3m ²
귀화필기	•1실당 최소 60m ²	•시험대상자 × 2.5m ²	1실당 감독자 2명
시험실	•	•감독자 × 7m ² •장비 1조 × 10m ²	시험대상자 25명 기준
동감프로그램 교육실	•1인당 5m ² •150m ² (30명 기준)	•요가 등 동감프로그램 실행시 필요한 면적을 1인당 5m ² 산정	요가 등 동감프로그 램 실행시 필요한 면적을 1인당 5m ² 산정
동감프로그램 교육기자재보관실	•1실당 33m ² •	•교정시설기준 준용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근무인원수 × 0.8m ² •최소 16.5m ²		
기록열람 검증실	•9m ²	•3석×3m ²	
투자외국인 지원센터	•민원실면적×10%		
단속외국인대기실	•최소 20m ²		
경비대원 휴게실	•경비대원수 × 1/3 × 1.65m ²	•법무시설기준규칙 교정시설 준용(남녀 구분)	
경비대원 샤워실	•10m ²	•법무시설기준규칙 교정시설 준용(남녀 구분)	
경비대원 탈의실	•샤워실면적의 60%	•법무시설기준규칙 교정시설(직원탈의실)참 고	남녀 구분
영상녹화 난민심사실	•12m ²	•법무시설기준규칙(영상 녹화 조사실)준용	
통신실	•직원 × 5m ²		
통신장비실	•장비 1조 × 5m ²		
방송실	•장비 1조 × 33m ²		
외국인 기록보관실	•순사무실면적 × 7%		

<표 III-35>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어학실습실	•최소 20m ²		•직원 2명당 1석기준 •1석당 : 3.3m ²
당직실	•당직자 × 10m ² •최소 × 20m ²		•숙직실 겸용
기록물보존서고	•고정식 : 1만권당 99m ² (장비면적 별도) •이동식 : 고정식 × 40% - 열람실 : 창고 × 20%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항온항습기(30년이상 보존일 경우), 운송단계 가스식소화기, 이중 잠금장치 설치
도서실	•서고 : 장서수 / 200 •열람실 : 서고 × 20%	•200권당 1m ² - 건축계획 각론 도서관 시설 기준	
직원탈의실	•직원수 × 0.8m ²		•바닥난방 시설 남·여 구분
직원휴게실	•직원수 × 1/3 × 1.5m ²		•남·각 1실
직원체력단련실	•50m ² +(직원수×0.16)m ²		<개정 2017.12.29.>
직원사위실	•직원 140명 미만 : 13m ² •직원 14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5m ² 가산	•남·여 구분	<신설 2017.12.29.>
직원사위탈의실	•직원사위실 면적×60%		<신설 2017.12.29.>
청소원대기실	•청소원수 × 3m ² •최소 10m ²		<신설 2017.12.29.>
직원식당	•직원전용일 경우 직원수 × 1/3 × 1.5m ²	•시설규모에 따라 필요시 설치	•주방면적 : 식당 면적이 1/3별도
조리원 휴게실	•조리원수 × 3m ² •최소 10m ²		<신설 2017.12.29.>
창고	•순사무실면적 × 60%		
차고	•대형차 : 20m ² /대 •중형차 : 15m ² /대 •소형차 : 13.2m ² /대	•청사시설기준(행정안전 부)	출입할 수 있는 통 로 별도
운전자대기실	•운전원수 × 1.65m ²		
수위실	•근무자수 × 3m ²		
전기실 (변전실)	변압기용량(kVA) •300 : 75m ² •500 : 108m ² •750 : 144m ² •1,000 : 176m ² •1,500 : 234m ² •2,000 : 286m ² •3,000 : 234m ² •4,000 : 380m ²	•큐비클형 설치 기준	<개정 2017.12.29.>

<표 III-35>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발전기실	발전기용량(kVA) •200 : 27m ² •300 : 33m ² •500 : 43m ² •750 : 53m ² •1,000 : 61m ² •2,000 : 86m ²	•디젤비상발전기 기준 면적 (라지예터 냉각방식 발전기 기준)	<개정 2017.12.29.>
기계실	연면적 •1,000m 이하 : 70m ² •3,000m 이하 : 200m ² •5,000m 이하 : 290m ² •10,000m 이하 : 450m ² •15,000m 이하 : 600m ² •20,000m 이하 : 770m ² •25,000m 이하 : 920m ² •30,000m 이하 : 1,90m ²	•설비공학 편람 기준 적용	
○보호실			
변호사 접견실	•10m ²	•시설규모에 따라 필요시 설치	
보호직원침실	•근무직원수 × 1/5 × 4m ² (남, 여 별도)	•	
근무자실(CCTV 장비 포함)	•27m ² (남, 여 별도)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보호외국인수 × 0.5m ²		
소모품창고	•보호외국인수 × 0.3m ²		
물품창고	•보호외국인수 × 0.3m ²		
의무실	•13m ²		
약품창고	•16.5m ²		
고충상담실	•1실 : 10m ²		
다용도실	•순사무실면적 × 7%		
입·퇴소실	•최소 20m ²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10m ²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입소자 화장실	•최소 7m ²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입소외국인사위실	•수용인원 × 1/2 × 1m ² •최소 20m ²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면회실	•1실 17m ² •보호외국인 20명 미만 : 1실 15명 추가당 1실	•대기실 및 직원 근무공간 포함	
독방	•5.4m ²	•화장실포함	<개정 2017.12.29.>

<표 III-35>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남자전용방	•1인당 6.6m ²	•샤워실 등 포함	<신설 2017.12.29.>
여자전용방	•1인당 6.6m ²	•샤워실 등 포함	<신설 2017.12.29.>
특별보호방 (가족실)	•26.4m ² (4인가족 기준)	•일반보호실 1인당 6.6m ²	<개정 2017.12.29.>
세탁실	•100인미만 10m ² •100~200인 미만 17m ² •200~300인 미만 30m ² •300명 이상 50m ²		
물품보관실	•1실 17m ² •보호외국인 20명 미만 : 1실 15명 추가당 1실		
○공항·항만의 출입국 심사장			
심사구역	•심사부스실수 × 7m × 15m		
관리자석	•1인 부스 : 4m ² •2인 부스 : 8m ²		<개정 2017.12.29.>
유인심사대	•1부스 당 7.28m ²	•부스:2.8m(W)×2.6m(L)× 1.5m(H) •여권창구 높이 : 1.2m •심사대 통로 폭 : 0.85m	<개정 2017.12.29.>
자동출입국심사대	•심사대 수 × 6m ²		<개정 2017.12.29.>
자동출입국 심사구역	•심사대 수 × 2m × 12m		<신설 2017.12.29.>
자동출입국 심사대 관리자석	•1인 부스 : 4m ²	•자동심사대 5대당 관리자석 1석	<신설 2017.12.29.>
인터뷰실	•12m ²	•난민조사실 준용	<개정 2017.12.29.>
인터뷰대기실	•1일 평균민원인수 × 1.5m ²		
송환대기실	•1일 평균 송환자수 × 평균 대기일수 × 10m ²		
강제퇴거 집행대기실	•1일 평균 퇴거자수 × 6.6m ²		<신설 2017.12.29.>
심사관 대기실 (휴게실)	•직원수 × 1/3 × 1.5m ²		<개정 2017.12.29.>
수면실	•직원수 × 1/3 × 3m ²		<신설 2017.12.29.>
출입국상황실	•직원수 × 10m ²	•직원수 × 7m ² •직원수 × 3m ² (장비)	
자동출입국 심사등록실	•근무자수 × 7m ² •민원인수 × 3m ² × 1/6		
난민신청 대기실 (사무실)	•근무자수 × 7m ²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 칙 “별표 1”	
난민신청 대기실 (혼거실)	•1인당 6.6m ²	•일반보호실 1인당 기준(6.6m ²)	

나) 외국인보호소

<표 III-36> 외국인보호소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소장실	•4급 : 30m ² (부속실 포함)	•정부청사관리 규정시행 규칙 "별표 1"	<개정 2017.12.29.>
과장실	•17m ²		
대회의실	•직원 100명 미만 : 66m ² •직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99m ² •10명 증가마다 3m ² 가산		
소회의실	•직원 15명 미만 : 33m ² 10명 증가마다 1m ² 가산		
의무실	•13m ²		
치료실	•20m ²		<신설 2017.12.29.>
진료대기실	•16.5m ²		<신설 2017.12.29.>
조제실	•16.5m ²		<신설 2017.12.29.>
약품창고	•6m ²		
무기고	•직원수 × 0.6 × 0.15m ²	교도소기준 준용	
탄약고	•무기고 × 30%	교도고기준 준용	
난민조사실	•담당직원수 × 0.2m ² •1실당 : 19.8m ²		
고충인권상담실	•1실 : 10m ²		
다용도실	•순사무실면적 × 7%		
직원탈의실	•직원 140명 미만 27m ² •직원 14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5m ² 가산		
(여)직원휴게실/ 탈의실	•직원수 × 3.3m ²	•여 : 수모유실 포함	
직원체련단련실	•50m ² +(직원수 × 0.16)m ²		
직원사위실	•직원 140명 미만 : 13m ² •직원 140명 이상은 10명 증가마다 1.5m ² 가산	남·여 구분	<신설 2017.12.29.>
직원사위탈의실	•직원사위실 면적 × 60%	남·여 구분	<신설 2017.12.29.>
어학실	•직원수 × 0.5 × 3.3m ²	•직원 2명당 1석기준 •1석당 : 3.3m ²	
기록물보존서고	•고정식 : 1만권당 99m ² (장비면적 별도) •이동식 : 고정식 × 40% - 열람석 : 창고 × 20%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항온항습기(30년이 상 보존일 경우), 온습도계, 가스식소화기, 이중잠금장치 설치 <개정 2011>

<표 III-36>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소각장	•폐기물처리법 참조		
경비대원 휴게실	•경비대원수 × 3.3m ²		
수위실	•근무자수 × 3m ²		
세차장	•수질환경보전법 참조		
차고	•대형차 : 20m ² /대 •중형차 : 15m ² /대 •소형차 : 13.2m ² /대		
운전원 대기실	•운전원수 × 1.65m ² •최소 7m ²		
청소원 대기실	•청소원수 × 3m ² •최소 10m ²		<신설 2017.12.29.>
주방	•식당면적의 1/3이내		
직원식당	•직원수 × 1/3 × 1.5m ²		
영양사실	•17m ² 이하		
조리원휴게실	•식당면적의 1/3이내		<신설 2017.12.29.>
매점	•상품진열대수에 따른 실면적	매점 휴게실 포함	
○보호실			
독방	•1인당 : 5.4m ²	•화장실 포함	<개정 2017.12.29.>
특별보호방 (가족실)	•26.4m ² (4인가족 기준)	•일반보호실 1인당 6.6m ²	<개정 2017.12.29.>
남자전용방	•1인당 : 6.6m ²	•샤워실 등 포함	<신설 2017.12.29.>
여자전용방	•1인당 : 6.6m ²	•샤워실 등 포함	<신설 2017.12.29.>
종합상황실	•1실당 : 50m ²		
동감프로그램실	•1인당 5m ² •150m ² (30명 기준)	동감프로그램 실행 시 필요 면적을 1인당 5m ² 산정	
동감프로그램 교육기자재 보관실	•1실당 33m ²	법무시설기준규칙 교정시설기준 준용	
보호외국인주방	•보호외국인 - 500명 미만 : 125m ² - 500명 이상은 100명증가 마다 7.85m ² 가산	교도소기준 준용	
주식창고	•보호외국인 × 0.05m ²	교도소기준 준용	
부식창고	•보호외국인 × 0.08m ²	교도소기준 준용	
세탁실 및 건조실	•보호외국인 - 300명 미만 : 55m ² - 300명 이상은 100명 증 가마다 10m ² 가산 •세탁장비 실소요면적 산정		<개정 2017.12.29.>

<표 III-36>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근무자실	•27m ² (남, 여 별도)		CCTV장비포함
임산부실	•여자보호외국인 - 200명 미만 : 1실 - 200명 이상 : 2실 •1실 면적 : 16.5m ²		
양육유아실	•여자보호외국인 - 200명 미만 : 1실 - 200명 이상 : 2실 •1실 면적 : 16.5m ²		
종교실	•1실 : 35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보호외국인 - 200명 미만 : 100m ² - 200명 이상 50명 증가 마다 10m ² 가산		<개정 2017.12.29.>
소모품창고	•보호외국인수 × 0.3m ²		
물품창고	•보호외국인수 × 0.3m ²		
면회실	•1실 17m ² - 보호외국인 200명 미만 5실 - 200명 이상 100명 증가 마다 1실 추가	대기실 및 직원 근무공간 포함	
특별면회실	•1실 : 12m ² - 보호외국인 500명 미만 : 2실		
통신실	•장비 1조 × 5m ²	전산실 별도	
입·퇴소실	•보호외국인 - 500명 미만 : 33m ² - 500명 이상은 250명 증 가마다 3.3m ² 가산	입소자교육실 겸용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보호외국인 - 500명 미만 : 20m ² - 500명 이상은 500명 증 가마다 3.3m ² 가산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입소자 샤워실	•보호외국인 - 500명 미만 : 10m ² - 500명 이상은 500명 증 가마다 3.3m ² 가산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입소자화장실	•최소 7m ²	남·여 구분	<개정 2017.12.29.>
옥외운동공간		체조 등 옥외활동에 적정한 면적	

<표 III-36>의 계속

(단위 : m²)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전기실 (변전실)	변압기용량(kVA) •300 : 75m ² •500 : 108m ² •750 : 144m ² •1,000 : 176m ² •1,500 : 234m ² •2,000 : 286m ² •3,000 : 234m ² •4,000 : 380m ²	•큐비클형 설치 기준	<개정 2017.12.29.>
발전기실	발전기용량(kVA) •200 : 27m ² •300 : 33m ² •500 : 43m ² •750 : 53m ² •1,000 : 61m ² •2,000 : 86m ²	•디젤비상발전기 기준 면적 (라지에터 냉각방식 발전기 기준)	<개정 2017.12.29.>
기계실	연면적 •1,000m 이하 : 70m ² •3,000m 이하 : 200m ² •5,000m 이하 : 290m ² •10,000m 이하 : 450m ² •15,000m 이하 : 600m ² •20,000m 이하 : 770m ² •25,000m 이하 : 920m ² •30,000m 이하 : 1,90m ²	•설비공학 편람 기준 적용	

다. 세부시설 적정성 검토

본 검토의 변경안 연면적은 17,799m²이며, 이를 기준으로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본 검토의 검토안 및 대안은 변경안의 면적을 대상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 과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 의 기준 적용 오류사항을 바로 잡은 검토안과 시설면적 기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시설면적을 제시한 대안으로 구분된다.

1) 순사무실 및 회의실

제2절에서 시설규모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인원에 대해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근무인원을 재산정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재산정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순사무실

및 회의실 규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다. 정원 외 직원 중 서비스업무 담당 인원의 경우 별도의 근무장소가 존재하므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행정 업무 인원을 기준으로 순사무실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37> 순사무실 사용 인원 재산정 결과

구분	정원	정원 외 행정업무 인원	합계
근무자 수(명)	161	114	275

순사무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및 산출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정원 외 직원의 근무면적은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정원 외 근무자 사무실 기준 1인당 7㎡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III-38> 사무실 면적 기준

구분		1인당 면적(㎡)	비고
기관장실	2급	50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
과장실	4급-5급	17	“
일반직원	7급	7	“
정원 외 직원	일반직원	7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
	공익법무관	7	법무시설 기준규칙

대회의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와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산출 식이 상이하며, 계획안에서는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근거로 면적을 산정하였다.

<표 III-39> 대회의실 면적 기준

구분	면적기준		기준인원(명)	면적(㎡)
대회의실	50㎡ + 0.7㎡(정원-20인)		161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100명 미만 : 66㎡ • 직원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99㎡ • 10명 증가마다 3㎡가산 		286	125

회의실 기준에 따라 회의실 면적을 산출해보면 정부청사시설 기준으로 149㎡,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125㎡가 산출된다. 회의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부록] 청사시설기준표」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정 부청사시설기준표’ 면적을 적용하기로 한다. 재산정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사무실 면적기준을 적용한 결과 순사무실 면적은 2,058㎡로 산출되어, 변경안의 순사무실 면 적보다 약 419㎡ 가량 감소하였으며, 대회의실은 변경안 면적과 동일하다.

<표 III-40> 순사무실 및 회의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기준면적 (㎡)	변경안		검토안		대안	
			인원(명)	면적(㎡)	인원(명)	면적(㎡)	면적(㎡)	
순사무실	기관장실	50	1	50	1	50	50	
	과장실	17	9	153	9	153	153	
	직원	7	151	1,057	151	1,057	1,057	
	정원 외 직원	일반직원	7	227	1,217	102	714	714
		공익법무관	7	12		12	84	84
소 계			400	2,477	275	2,058	2,058	
대회의실			161	149	161	149	149	
합 계			-	2,626	-	2,207	2,207	

2) 민원실 및 관련시설

계획안과 변경안에서 민원실 면적을 명확한 근거 없는 민원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방문민원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3절 1. 다에서 일평균 방문민원인 기준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민원실면적을 산정하 기로 한다. 계획안과 변경안에서는 국가, 업무 등을 기준으로 민원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민원실이라는 성격은 동일하므로 이를 부서별로 구 분하지 않고 전체 민원인 수를 기준으로 민원실 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설계에서 부 서별로 나누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안과 변경안에서는 산출기준이 된 전체 민원인이 1,408명이었으나,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민원처리현황 자료 를 기준으로 일평균 민원실 방문인원을 1,705명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 일평균 방문민원인 1,705명을 기준으로 민원실 면적을 산정한 결과 853㎡가 산출되었다.

<표 III-41> 민원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인원(명)	면적(㎡)	인원(명)	면적(㎡)	면적(㎡)
민원실	민원실	민원인×3㎡×1/6	1,408	704	1,705	853	853

주: 면적기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 참조

민원실 관련시설은 외국인지원센터, 수유 및 놀이방,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등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규정이 없는 시설이므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민원실 면적의 10%가 기준이지만 변경안에서는 현 청사의 기존 면적을 반영하였다. 이는 실제 청사의 활용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검토안과 대안에서 모두 변경안 면적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유 및 유아놀이방의 경우 민원인 수 3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외국인 민원인의 특성상 영유아 동반 민원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변경안의 면적이 과도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기로 한다.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기준면적이므로 이를 검토안과 대안에 그대로 준용한다.

<표 III-42> 민원실 관련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민원실 관련시설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	민원실 면적×10%	20	20	20
	수유 및 유아놀이방	민원인수×3.63㎡×0.1	11	11	11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33㎡	33	33	33
	합 계	-	64	64	64

3) 조사실 및 조사대기실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명시된 조사실과 조사대기실은 난민조사실, 위반조사실 및 대기실, 영상녹화조사실 등이다. 하지만 계획안에서는 조사실 및 대기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 질의회신 자료를 통해 확인한 각 실별 이용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I-43> 조사실 및 대기실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소요면적(㎡)	이용인원(명)
조사실	귀화면접실	면접실 17㎡, 대기실 15㎡, 1실당 32㎡×3실	96	3
	국적과 실태조사실	1실당 12㎡×3실	36	3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1실당 12㎡×5실	60	15
	사범과 위반조사실	1실 12㎡×3실	36	3
	조사과 실태조사실	1실당 12㎡×3실	36	3
	영상녹화조사실	1실당 12㎡×10실	120	13
	난민심사실	1실당12㎡×30실	360	30
	법법외국인 채증실	1실당 20㎡	20	-
소 계	-	764	-	

<표 III-43>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소요면적(㎡)	이용인원(명)
조사 대기실	참고인 대기실	참고인(10명)×3㎡	30	10
	단속외국인 대기실	최소 20㎡	20	-
	난민통역인 대기실	통역인 10명×3㎡	30	10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최소 15㎡×1실	15	-
	조사과 조사대기실	최소 15㎡	15	-
	소 계	-	0	-
합 계		-	874	-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26)

조사실의 경우 「법무시설 기준규칙」 상 3명이 1실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1실의 면적이 12㎡인데, 변경안의 국적과, 사범과, 조사과 조사실의 조사인원 1명에게 12㎡ 1개 실을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산상 오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검토안에서 각 조사실 면적을 12㎡적용한다.

<표 III-4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업무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청 접수	심사결정 종료				심사 중	전년대비 신청접수 증감률
		인정	불인정	인도적 체류	철회		
2015년	2,460	38	3,156	95	194	2,038	-
2016년	3,034	40	4,815	155	324	3,007	23%
2017년	4,119	31	3,252	156	897	4,928	36%
2018년	10,072*	45	2,318	36	1,403	11,677	145%

* 주: 거점 관할 사무소 이첩 접수 건 포함(이첩 건 제외시 6,371건)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08.20.)

난민심사실의 경우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난민심사 업무를 42명이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일평균 난민 면접심사는 25건을 진행하고 난민심사인력을 28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한다고 기재하고 있어¹¹⁾ 자료상 숫자가 상이하여 정확한 난민심사실 사용 인원 확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난민업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난민신청 접수는 이첩된 건을 포함하여 약 1만여 건이며, 11,677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 2019년 11월 26일 법무부 제출 질의회신 자료

이는 2018년 연간 건수로 1개월당 평균 973건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을 기준으로 일 평균 44건의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심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2건의 심사를 위한 난민심사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안에서는 난민심사실의 사용기준이 되는 심사건수를 일평균 22건으로 설정하여 난민심사실 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표 III-4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실 사용기준 심사건수

(단위 : 건)

2018년 심사건수	월평균 심사건수	일평균 심사건수	난민심사실 적용 심사건수	비고
11,677	973	44	22	오전·오후 구분하여 심사

귀화면접실, 영상녹화조사실, 채증실, 대기실 등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면적이 산정되어 있으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그대로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적용한다. 조사실과 조사대기실의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변경안의 면적을 검토한 결과 검토안은 변경안보다 72m² 감소하였고, 대안은 168m² 감소하였다.

<표 III-46> 조사실 및 조사대기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m ²)	검토안(m ²)	대안(m ²)	
조사실	귀화면접실	1실당 32m ² ×3실	96	96	96	
	국적과 실태조사실	3인 1실, 1실당 12m ² ×1실	36	12	12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1실당 12m ² ×5실	60	60	60	
	사범과 위반조사실	3인 1실, 1실당 12m ² ×1실	36	12	12	
	조사과 실태조사실	3인 1실, 1실당 12m ² ×1실	36	12	12	
	영상녹화조사실	1실당 12m ² ×10실	120	120	120	
	난민심사실	1인 1실, 1실당 12m ² ×22실	360	360	264	
	범법외국인 채증실	20m ² ×1실	20	20	20	
소 계		33	764	692	596	
조사대 기실	참고인 대기실	1실당 3m ² ×10실	30	30	30	
	단속외국인 대기실	최소 20m ²	20	20	20	
	난민통역인 대기실	1실당 3m ² ×10실	30	30	30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최소 15m ² ×1실	15	15	15	
	조사과 조사대기실	최소 15m ² ×1실	15	15	15	
	소 계		52	110	110	110
	합 계		874	874	802	706

4) 보호시설

변경안의 보호시설은 모두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기재된 시설이며, 산출내역에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적용한다.

<표 III-47> 보호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보호 시설	입·퇴소실	1실당 20㎡×2실(남,여)	40	40	40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20
	입소자 화장실	최소 7㎡×2실(남,여)	14	14	14
	입소자 샤워실	최소 10㎡×2실(남,여)	20	20	20
	보호실(독거실)	5.4㎡×8(남4,여4)	43	43	43
	보호실(혼거실)	10명×6.6㎡×10실(남5,여5)	660	660	660
	특별보호방(가족실)	4인가족 기준(1인당 6.6㎡)×2실	52	52	52
	보호외국인 임산부실	200명 미만 16.5㎡	17	17	17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보호외국인(여) 200명 미만 16.5㎡	17	17	17
	보호외국인 종교실	1실당 35㎡×1실	35	35	35
	동감프로그램실	참여인원 20명×5㎡	100	100	100
	근무자실(CCTV포함)	27㎡×2실(남,여)	54	54	54
	보호직원 침실(남,여)	근무직원수(4명)×1/5×4㎡×2실	6	6	6
	경비대원 샤워실	1실당 10㎡×2실(남,여)	20	20	20
	경비대원 탈의실	경비대원샤워실(10㎡)의 60%×2(남,여구분)	12	12	12
	경비대원 휴게실	경비대원수(10명)×1/3×1.65㎡×2실(남,여)	11	11	11
	면회실	1실당 17㎡×4실	68	68	68
	변호사 접견실	1실당 10㎡×2실	20	20	20
	보호외국인 고충상담실	1실당 10㎡×2실	20	20	20
	의무실	1실당 13㎡	13	13	13
	보호실 약품창고	1실당 16.5㎡	17	17	17
	보호실소모품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30
	보호실 대여품 보관창고	보호외국인수(100)×0.3㎡	30	30	30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보호외국인수(100)×0.5㎡	50	50	50
	보호외국인 세탁실(건조실 포함)	보호외국인 300인 미만 55㎡	55	55	55
	합 계			1,424	1,424

5) 대강당 및 교육실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를 위해 참석자 200명을 기준으로 대강당 면적을 계획하였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적증서 수여 참석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많을 때는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인원만 200명 가까이 있으며, 지인 등 동반자를 고려할 경우 200명이 과대하게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적용하기로 한다. 방송실과 통신장비실의 경우 장비를 고려하여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되, 통신사무실의 경우 상주 직원의 근무공간은 순사무실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 및 교육실 등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기재된 시설이며, 산출내역이 기준근거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적용하기로 한다.

<표 III-48> 대강당 및 교육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기준	변경안(㎡)	검토안(㎡)	대안(㎡)
대강당	대강당	참석자 200명×0.5×3.3㎡	330	330	330
	방송실	장비 2조×33㎡	66	66	66
	통신장비실	장비 5조×5㎡	25	25	25
	통신사무실	직원(1명)×5㎡	5	0	0
	소 계		426	421	421
교육실	이민통합지원센터	1실당 66㎡	66	66	66
	이민자사랑방	최소 45㎡	45	45	45
	교육강사 대기실	강사 2명×3.3㎡	7	7	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최소 100㎡	100	100	100
	소 계		218	218	218
합 계		644	639	639	

5) 관리 및 보조시설

관리 및 보조시설의 경우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부록)」에 기재된 시설의 경우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적용하고, 그 외 시설들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가) 관리시설기준 인원

변경안의 경우 관리 및 보조시설 기준인원이 법무부 제출자료와 상이하게 계획되어 있어 법무부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관리 및 보조시설 기준인원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수위실의 경우 근무자수를 3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제출자료¹²⁾에 방호 인력은 방호직 공무원 1명과 방호업무 공무원 1명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추후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위실 면적은 근무자수 2명을 기준

12) 법무부 제출 자료(2019.11.26.)

으로 산정한다. 이때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내 인원으로 순사무실 면적에 업무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여기서는 공무원 1명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직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통합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에 의해 2명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변경안의 산정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안과 대안에 동일하게 준용한다.

[그림 III-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통합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p>제5조[당직의 편성]</p> <p>① 숙직근무자는 1인으로, 일직근무자는 2인으로 한다. 다만, 숙직 근무시간에 사회복무요원 1인이 당직근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고, 기관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

운전원 대기실의 경우 조사과 3명, 이민특수조사대 2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내 직원이 2명, 정원의 직원이 3명인 것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중 정园内 직원은 순사무실 면적에 업무공간이 되어 있으므로 운전원 대기실 면적은 정원의 직원 3명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표 III-49> 관리 및 보조시설 인원 및 면적검토 결과

(단위 : 명)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인원	재산정 인원	면적 검토	대안(m ²)	비 고
관리시설	수 위 실	3	1	1×3m ² =3m ²	3	- 방호직 공무원 1명 →순사무실 면적에 포함 - 방호업무 공무원 1명
	당 직 실	2	2	2×10m ² =20m ²	20	-
	운전원대기실	5	3	3×1.65m ² =5m ²	5	- 운전원 총 5명 →공무직 3명, 공무원 2명은 순사무실 면적에 포함
합 계		10	6		28	-

나) 식당시설

식당시설의 경우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에 따라 정원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였는데,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경우 산출방식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식당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청사에 조성되는 일반적인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원 161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식당면적은 81m²로 변경안의 면적과 동일하게 검토되어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하

기로 한다. 조리원 휴게실의 경우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변경안을 검토안과 대안에 그대로 준용한다.

<표 III-50> 식당시설 면적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 기준	변경안(m ²)	검토안(m ²)	대안(m ²)	비 고
보조시설	식 당	정원 × 1.5m ² × 1/3	81	81	81	주방포함
	조리원 휴게실	- 조리원수 × 3m ² - 최소 10m ²	10	10	10	조리원수 3명으로 면적 산출결과 9m ² -> 최소면적 10m ² 적용
합 계			91	91	91	-

다) 보관시설

보관시설의 경우 창고는 순사무실 면적에 연동되므로 검토안과 대안에서 변경된 순사무실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144m²를 산출하였다.

다용도실의 경우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시설의 용도가 직원들이 휴식하면서 간단한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과 그에 따른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직원들의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용도실은 시설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물 보존서고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변경안 면적을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한다.

<표 III-51> 보관시설 면적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 검토	변경안(m ²)	검토안(m ²)	대안(m ²)
보관시설	창 고	- 변경안 2,477m ² × 7% - 검토안/대안 2,058m ² × 7%	173.5	144	144
	다용도실	- 변경안 2,477m ² × 7%	173.5	0	0
	기록물보존서고	- 기록물 17만권 - 99m ² × 17만권 × 40%	673	673	673
합 계			1,020	817	817

라) 편의시설

편의시설에서 이발실, 의무실, 체육실은 신축청사에 계획되어 있으나, 기존 청사에도 없던 시설이며 이발실의 경우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됨에 따라 시설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실의 경우 근무자 복지를 위한 시설로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기준을 근거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정한다.

의무실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의무실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실 배치를 조정하여 추가로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설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청소원 대기실의 경우 현재 청사계획이 지하 2층~지상 9층까지로 확대되므로 청소원 대기실이 최소 2~3곳 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안에서 제시한 청소원 대기실 면적은 60㎡로 최소 면적 10㎡ 기준으로 남·여 청소원 대기실을 3곳 정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과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정한다. 사회복지무요원 대기실의 경우 순사무실면적에서 사회복지무요원의 사무실 면적을 산정하였으므로 별도로 대기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탈의실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법무부 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직원탈의실을 산정한 결과 129㎡로 변경안과 동일한 면적이 산출되어,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하기로 한다. 직원샤워실과 직원샤워 탈의실의 경우 야간당직이 필요한 인원이 확인되고,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안과 대안에 준용한다.

<표 III-52> 편의시설 면적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면적 검토	변경안(㎡)	검토안(㎡)	대안(㎡)
편의시설	휴게실(남)	9.9㎡+(81-24인)×0.22㎡	20	22	22
	휴게실(여)	9.9㎡+(80-24인)×0.22㎡	20	22	22
	이발실	6.6㎡+(161-60인)×0.1㎡	16	17	0
	의무실	22㎡+(161-100인)×0.048㎡	24	25	0
	체육실	75㎡+(161-100인)×0.16㎡	85	85	85
	청소원대기실	4 × 3㎡ ×(남·여 구분) 최소 10㎡	60	60	60
	사회복지무요원 대기실	18 × 0.8㎡ 최소 16.5㎡	17	17	0
	직원탈의실	150 × 0.8㎡	129	129	129
	직원샤워실	13㎡+((286-140)/10)*1.5	29	35	35
	직원샤워 탈의실	직원샤워실 면적×60%	17	21	21
합계			417	433	374

마) 인원증원 계획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요청(2020.05)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원 외 직원 인력으로 8명을 증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들은 정원 외 공무원 인원에 반영하였으나, 신청사 준공 후 필요한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원이 확정된 8명을 제외한 증원 계획 인원은 신청사 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관리 및 보조시설 검토 결과

관리 및 보조시설 면적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53> 관리 및 보조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관리시설	수 위 실	9	3	3	
	당 직 실	20	20	20	
	운전원대기실	8	5	5	
	소 계	37	28	28	
보조 시설	식당시설	식 당	81	81	81
		조리원휴게실	10	10	10
	보관시설	창 고	173.5	144	144
		다 용 도 실	173.5	0	0
		기록물보존서고	673	673	673
	편의시설	휴 게 실(남)	20	22	22
		휴 게 실(여)	20	22	22
		이 발 실	16	17	0
		의 무 실	24	25	0
		체 육 실	85	85	85
		청소원대기실	60	60	60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17	17	0
		직원탈의실	129	129	129
		직원샤워실	29	35	35
		직원샤워 탈의실	17	21	21
		소 계	1,528	1,341	1,282
합 계	1,565	1,369	1,310		

6) 특수시설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시설은 중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은 난민 신청자의 진술 녹화를 위한 장비 보관 및 백업자료, 서버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표 III-54> 난민조사영상녹화 장비 현황

구분	세부사항	현재 수량	사진
이동형 녹화 장비	특수목적 컴퓨터	7	
영상 카메라	로지텍 C930E	26	
카메라용 삼각대	영상 카메라 고정	26	
네트워크 저장장치	NAS	2	
무정전 전원장치	UPS	2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18.)

하지만 법무부에서 제출한 난민조사영상녹화 장비의 경우 서버 시설 외에 영상녹화 장비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서버도 대형서버가 아니라서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히 보관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업자료 등도 이미 보조시설로 참고

및 기록물보존서고가 약 800㎡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추후 난민 면접실 전체를 녹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법무부에서 밝히고 있으나 어떤 장비를 몇 대 추가할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수사 장비실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실로 분석실과 참관실을 포함한 면적으로 확인된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20년 예산안에 254백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스템 장비 및 집기류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안의 면적을 검토안과 대안에 준용하기로 한다.

<표 III-55>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장비 및 집기류 현황

제품명	세부사항	규격	수량
FORENSIC 전용 LAB 구축	업무용 책상	1400mm×800mm	2
	업무용 책상	1800mm×1200mm	1
	업무용 보조책상	500mm×1200mm	1
	업무용 의자	600mm×600mm	3
	참관인용 테이블(4인용)	1300mm×600mm	1
	참관인용 모니터	1140×665(49인치)	1
	촬영용 영상녹화장비	일반스탠드형 캠코더	1
	레이저프린트	컬러레이저프린터(31ppm)	1
	증거물 보관용 캐비닛	850mm×450mm	1
	현장용 포렌식 장비 보관용 캐비닛	850mm×450mm	1

주 :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없는 S/W, 노트북 등 제외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18.)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변경안 면적이 과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경안 면적을 검토안과 대안에 준용한다.

영상음향실의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청사 층별 배치도(초안)」에 의하면 강당에 포함되어 계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강당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이므로 대강당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영상음향실이 필요한 것이 인정되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에 반영한다.

정보공개 접수처리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 정보공개신청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민원인 대기실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다. 담당직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면적이 과대하지 않으므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을 산정한다.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 1인당 면적은 4.29㎡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안은 영유아 40명을 기준으로 1인당 2.64㎡를 적용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산출하였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여성근무자 159명이 근무 중이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56>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여성근무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159명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미해당

유지보수직원 사무실의 경우 유지보수직원을 정원외 직원에서 제외하였으나, 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 중이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규모를 산정 한다.

<표 III-57> 특수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특수시설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15	0	0
	과학수사 장비실	50	50	50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30	30	30
	영상음향실	33	33	33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7	7	7
	직장 어린이집	106	142	0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16	16	16
합 계		257	278	136

7) 전자비자센터

전자비자센터는 현재 외부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이 명백함에 따라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앞서 판단하였다.

변경안에서는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근무인원을 정원외 인원으로 산정하여 순사무실 면적에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공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하지만 본 검토에서는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근무인원 104명은 정원외 인원에서 제외하여, 이들의 업무공간은 추가로 산정하기로 한다. 콜센터 근무인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정원외 직원의 1인당 근무공간 5㎡를 적용하여 업무공간의 면적을 산정한다.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시설은 상담원 교육실 및 휴게실, 원격화상 인터뷰실, 장비보관실, 어학실습실로 계획되었다.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경우 업무처리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빠른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실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휴게실의 경우 전화상담이라는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한다.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의 경우 개인 전자비자 발급 관련 재외공간 비자담당 영사 및 현지 대행 여행사와의 원격회의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소회의실 기준을 준용하였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비자센터에서 처리하는 전자민원은 전국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58> 전자비자센터 전자민원 처리현황(2018)

(단위 : 건)

구분	하이코리아 (기간연장 등)	유학생 정보시스템	전자팩스	고용부통합신고 (고용변동/취업개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	66,017	51,194	80,875	65,263
전국사무소 센터 처리비율	97,691	89,886	126,652	138,619
	67.5%	56.9%	63.8%	47%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 2019.

전산장비보관실의 경우 국가정보통신망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통신만 운영을 위한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업무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변경안을 준용한다.

어학실습실의 경우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직원 2명당 1명 기준으로 1석당 3.3㎡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변경안에서는 상담원 104명을 대상으로 어학실습실 면적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현재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면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안을 준용하여 검토안과 대안 면적을 산정 한다.

<표 III-59> 전자비자센터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전자비자센터	콜센터 상담원 업무공간	-	520	520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99	99	99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12	12	12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33	33	33
	전산장비보관실	100	100	100
	어학실습실	172	172	172
합 계		416	936	936

8) 출입국정보화센터

출입국정보화센터는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출입국심사, 난민, 체류 등 전반적인 출입국관련 업무시스템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출입국정보화센터의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하부조직인 것이 확인 되어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앞서 판단하였다.

출입국정보화센터의 경우 기계실 장비실이 대부분으로, 변경안에서 장비의 실면적을 기준으로 시설을 계획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정보화센터 야간 근무자 수면실과 외주직원 탈의실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국정보화센터 관련 외주직원 인원은 실제 존재하는 인원이나 현재 정원 외 직원(235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엔지니어 작업실과 정보화사업 추진실의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외주인력 50명이 상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정원의 직원 사무실 면적 5㎡를 적용하여 산정한 변경안의 면적을 준용하여 검토

안과 대안규모를 산정 한다.

<표 III-60> 출입국정보화센터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검토안(㎡)	대안(㎡)
출입국 정보화 센터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360	360	360
	정보화센터 UPS실	160	160	160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122	122	122
	정보화센터 항온항습실	152	152	152
	백업테이프 보관실	34	34	34
	시스템 부품창고	40	40	40
	마이크로 필름실	44	44	44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 수면실	3	0	0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24	0	0
	엔지니어 작업실	95	95	95
	정보화사업 추진실	250	250	250
합 계		1,284	1,257	1,257

9) 공용시설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하면 공용시설은 5,000㎡ 이상 규모의 청사에서 40~50%의 공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적용비율의 최대치인 50%를 적용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안(2020.05)에서는 추가되는 규모에 대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45%를 적용하였다.

<표 III-61> 청사수급조정시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

규모 구분 면적 구분	1,000㎡ 미만	1,000 ~ 5,000㎡	5,000㎡ 이상	비 고
전용면적	70 ~ 60%	65 ~ 55%	60 ~ 50%	
공용면적	30 ~ 40%	35 ~ 45%	40 ~ 50%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구분 기준을 기재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홀, 화장실, 지하주차장 등을 공용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의 전용률(%)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림 III-7]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구분 기준

3]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구분

- 사무실 임차면적의 개념 및 산정
 - 임차 또는 임대면적은 계약면적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면적으로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공용면적은 해당 임차층 공용면적과 임차층을 제외한 층의 공용면적으로 함

임차면적(=계약면적) ① + ②		
① 전용면적	② 공용면적	
	임차층 공용면적	임차층을 제외한 층의 공용면적

구분	용어 설명	
① 전용면적	임차면적 중 임차인이 전용하여 독립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② 공용면적	임차면적 중 건물주 및 타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로비, 복도, 계단, 승강기홀, 화장실, 지하주차장 등) ※ 건물 전체의 전용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임 (예 : 전용:공용=55:45)	
	· 임차층 공용면적	임차실이 위치한 층의 공용면적 ※ 해당 층의 전체 전용면적에 대한 임차실의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
	· 임차층 외 공용면적	임차실이 위치하지 않은 층의 공용면적 ※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 대한 임차전용면적 비율로 산정

변경안의 경우 기계실·전기실을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변압기, 발전기 등의 용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공용면적과 별도로 산정하였는데 기계실·전기실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면적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공용면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지하주차장까지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계획에서는 보호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을 별도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공용면적 내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용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기로 한다.

전용면적에 대한 공용면적의 비율은 본 사업의 청사규모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의 청사규모 5,000㎡이상에 해당하므로 기준 비율인 40~50%의 중간값인 45%규모로 공용면적을 산정하였다.

<표 III-62>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

구분	변경안		검토안		대안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전용면적	9,857	55	9,828	55	9,531	55
공용면적	7,942	45	8,042	45	7,798	45
합 계	17,799	100	17,870	100	17,329	100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와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의 경우 차고의 위치나 차량 출입통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호송버스 차량 출입통로 및 문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에서 200%를 가산하여 차량출입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차량출입통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기로 한다.

변경안은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를 대형버스 기준으로 59.5m²를 설정하였으나,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주차장 설계기준에서 주차면을 정할 때 대형자동차는 13.00m × 3.25m를 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에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면적을 적용하여 차고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옥내주차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m²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주차대수는 76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변경안은 법정주차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70대 규모로 옥내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

검토안의 경우 기전실 및 보호외국인 옥내주차장, 입·퇴소 전용차고,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통로 및 문의 면적을 제외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법정주차대수를 산정한 결과 법정주차대수는 70대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은 68대로 산정되었다.

<표 III-63> 법정주차 대수 산출결과

구분	변경안(m ²)	검토안(m ²)	대안(m ²)
전용면적(A)	9,857	9,828	9,531
공용면적(기계실·전기실 제외)(B)	4,921	3,582	3,950
기계실·전기실면적	1,065	1,165	1,165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C)	506	506	0
법정주차대수 산정기준 면적(A+B+C)	15,284	13,916	13,481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200m ² 당 1대)	76	70	68

변경안은 주차 1대당 면적을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차고 면적의 중형차 기준으로 1대당 15㎡를 산정하였다. 하지만 차고와 주차장은 서로 다른 시설로서 변경안에서 차고 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안에서 옥내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하로 내려가는 진입로 및 차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면적이 필요한데, 본 검토에서 시설규모의 적정성의 기준이 되는 「정부청사관리규정」과 「법무시설 기준규칙」에는 모두 주차장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가장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경우 차량 1대당 주차단위구획 면적만 규정하고 있으며, 차로 등 추가 면적을 포함한 차량 1대당 주차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례를 통하여 주차 1대당 필요한 면적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국개발연구원(2016)에서 검토한 『서울 방배경찰서 신축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서 공공시설 및 경찰서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조사하여 1대당 평균면적을 검토한 결과 34.33㎡로 산정되었다.

<표 III-64> 지상 및 지하주차장 1대당 면적의 산출 사례

주차장명	면적(㎡)	주차대수(대)	대당 면적(㎡/대)
종묘광장지하	55,188.1	1,418	38.92
마포유수지복개	20,099.0	602	33.39
세종로미관광장지하	48,420.9	1,353	35.79
목정공원지하	17,306.4	502	34.47
신도림역환승	9,702.0	301	32.23
영등포영남	25,166.2	805	31.26
전농천복개	6,818.0	209	32.62
성내역(신천유수지)	9,918.7	269	36.87
광진경찰서	5,185.03	155	33.45
평균			34.3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방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6.

옥내 주차장의 차량 1대당 주차 면적은 34.33㎡를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표 III-65> 공용시설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산출내역	변경안(m ²)	검토안(m ²)	대안(m ²)	
공용 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전용면적의 50%	4,921	4,747	5,115	
	기계실·전기실 등		234	0	0	
			61	0	0	
			770	0	0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162	162	0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506	506	0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59.5m ² ×2대×200%	238	238	169
옥내주차장	대당 34.33m ²	1,050	2,389	2,514		
합 계			7,942	8,042	7,798	

10) 기타 시설

정원외 인원에서 제외한 인원 중 은행과 인지판매 직원이 있는데, 이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도 아니고 단순히 근무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일 뿐인 인원이라 이들의 업무공간은 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과 인지판매 장소는 외국 민원인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소이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계획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청사에 배치된 은행이나 인지판매시설을 보면 로비나 복도 등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현 청사에서 은행 33.48m² 및 이민재단 15.6m² 규모는 크지 않고, 두 시설 모두 민원인의 출입이 잦은 공간에 설치가 필요하므로 로비 또는 복도 등의 공용면적 일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기로 한다.

라. 시설규모 검토결과

변경안의 시설면적의 적용 오류사항을 수정한 검토안의 경우 변경안보다 71m²증가한 17,870m²으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경우 17,329m²로 산정되어 변경안보다 471m² 감소하였다.

<표 III-66> 시설규모 검토 결과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A)	검토안(㎡) (B)	증감(㎡) (B-A)	대안(㎡) (C)	증감(㎡) (C-A)	
순사무실 및 회의실	기관장실	50	50	-	50	-	
	과장실	153	153	-	153	-	
	직원	1,057	1,057	-	1,057	-	
	정원 외 직원	일반 직원	1,217	714	-419	714	-419
		공익법무관		84		84	
	소 계		2,477	2,058	-419	2,058	-419
대회의실		149	149	-	149	-	
민원실 및 관련시설	민원실	704	853	149	853	149	
	글로벌인재 투자외국인지원센터	20	20	-	20	-	
	수유 및 유아놀이방	11	11	-	11	-	
	민원인 휴게실 및 인터넷 부스	33	33	-	33	-	
	조사실 및 조사대기 실	귀화면접실	96	96	-	96	-
		국적과 실태조사실	36	12	-24	12	-24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실		60	60	-	60	-	
사범과 위반조사실		36	12	-24	12	-24	
조사과 실태조사실		36	12	-24	12	-24	
영상녹화조사실		120	120	-	120	-	
난민심사실		360	360	-	264	-96	
범법외국인 채증실		20	20	-	20	-	
참고인 대기실		30	30	-	30	-	
단속외국인 대기실		20	20	-	20	-	
난민통역인 대기실		30	30	-	30	-	
이민특수조사대 조사대기실		15	15	-	15	-	
조사과 조사대기실		15	15	-	15	-	
보호시설		입퇴소실	40	40	-	40	-
	입소자 탈의 및 신체검사실	20	20	-	20	-	
	입소자 화장실	14	14	-	14	-	
	입소자 샤워실	20	20	-	20	-	
	보호실(독거실)	43	43	-	43	-	
	보호실(혼거실)	660	660	-	660	-	
	특별보호방(가족실)	52	52	-	52	-	
	보호외국인 임산부실	17	17	-	17	-	
	보호외국인 양육유아실	17	17	-	17	-	
	보호외국인 종교실	35	35	-	35	-	
	동감프로그램실	100	100	-	100	-	
	근무자실(CCTV포함)	54	54	-	54	-	
	보호직원 침실(남,여)	6	6	-	6	-	
경비대원 샤워실	20	20	-	20	-		

<표 III-66>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m ²) (A)	검토안(m ²) (B)	증감(m ²) (B-A)	대안(m ²) (C)	증감(m ²) (C-A)
보호시설	경비대원 탈의실	12	12	-	12	-
	경비대원 휴게실	11	11	-	11	-
	면회실	68	68	-	68	-
	변호사 접견실	20	20	-	20	-
	보호외국인 고충상담실	20	20	-	20	-
	의무실	13	13	-	13	-
	보호실 약품창고	17	17	-	17	-
	보호실소모품창고	30	30	-	30	-
	보호실 대여품 보관창고	30	30	-	30	-
	보호외국인 물품보관실	50	50	-	50	-
	보호외국인 세탁실(건조실 포함)	55	55	-	55	-
대강당 및 교육실	대강당	330	330	-	330	-
	방송실	66	66	-	66	-
	통신장비실	25	25	-	25	-
	통신사무실	5	0	-5	0	-5
	이민통합지원센터	66	66	-	66	-
	이민자사랑방	45	45	-	45	-
	교육강사 대기실	7	7	-	7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자료실	100	100	-	100	-
관리시설	수 위 실	9	3	-6	3	-6
	당 직 실	20	20	-	20	-
	운전원대기실	8	5	-3	5	-3
식당시설	식 당	81	81	-	81	-
	조리원휴게실	10	10	-	10	-
저장시설	창 고	173.5	144	-30	144	-30
	다 용 도 실	173.5	0	-173.5	0	-173.5
	기록물보존서고	673	673	-	673	-
편의시설	휴 게 실(남)	20	22	2	22	2
	휴 게 실(여)	20	22	2	22	2
	이 발 실	16	17	1	0	-16
	의 무 실	24	25	1	0	-24
	체 육 실	85	85	-	85	-
	청소원대기실	60	60	-	60	-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17	17	-	0	-17
	직원탈의실	129	129	-	129	-
	직원샤워실	29	35	6	35	6
직원샤워 탈의실	17	21	4	21	4	
특수시설	난민조사영상녹화 자료 보관실	15	0	-15	0	-15
	과학수사 장비실	50	50	-	50	-

<표 III-66>의 계속

용도별	시설명	변경안(㎡) (A)	검토안(㎡) (B)	증감(㎡) (B-A)	대안(㎡) (C)	증감(㎡) (C-A)
특수시설	보호외국인 전화인터넷실	30	30	-	30	-
	영상음향실	33	33	-	33	-
	정보공개 접수처리실	7	7	-	7	-
	직장 어린이집	106	142	36	0	-106
	유지보수직원 사무실 등	16	16	-	16	-
전자비자 센터	콜센터 업무공간	-	520	520	520	520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	99	99	-	99	-
	콜센터 상담원 휴게실	12	12	-	12	-
	전자비자센터 원격화상인터뷰실	33	33	-	33	-
	전산장비보관실	100	100	-	100	-
	어학실습실	172	172	-	172	-
	정보화센터 전산기계실	360	360	-	360	-
출입국정 보화센터	정보화센터 UPS실	160	160	-	160	-
	정보화센터 정보통신실	122	122	-	122	-
	정보화센터 향온향습실	152	152	-	152	-
	백업테이프 보관실	34	34	-	34	-
	시스템 부품창고	40	40	-	40	-
	마이크로 필름실	44	44	-	44	-
	정보화센터 야간근무자 수면실	3	0	-3	0	-3
	정보화센터 외주직원 탈의실	24	0	-24	0	-24
	엔지니어 작업실	95	95	-	95	-
	정보화사업 추진실	250	250	-	250	-
	전용면적 합계		9,857	9,828	-29.5	9,531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 실· 등	4,921	4,747	-174	5,115	194
	기계실·전기실 등	234	0	-234	0	-234
		61	0	-61	0	-61
		770	0	-770	0	-770
	보호외국인전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506	506	-	0	-506
	보호외국인 입·퇴소 전용차고	238	238	-	169	-69
	보호외국인 호송버스 차량출입통로 및 문	162	162	-	0	-162
	옥내주차장	1,050	2,389	1,339	2,514	1,464
공용시설 합계		7,942	8,042	100	7,798	-144
시설면적 합계		17,799	17,870	70.5	17,329	-470.5

제IV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본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8.07.12)과 기타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침 자료에 따라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로 구분하였으며 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

<표 IV-1> 비용 추정 절차 및 방법

구분	연구 절차	연구 방법
I	유사사례 선정	-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자료를 기초로 유사사례 검토 및 선정
II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검토	- 유사사례 기준 공사비 단가 선정 - 기본공사비, 시설부대경비의 산정방식 등 검토
III	총사업비 추정 (검토안, 대안)	- 단기적용 유형별 공사비 추정 - 공사비를 기초로 시설부대경비 등 산정

본 조사의 분석 기준연도는 분석이 의뢰된 전년도인 2018년 말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의 조사시점이 본 사업의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보정지수를 활용하여 단가를 보정하였다.

<표 IV-2> 비용 보정지수

연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2004	100.0														
2005	103.1	100.0													
2006	106.3	103.1	100.0												
2007	111.5	108.1	104.8	100.0											
2008	124.0	120.3	116.6	111.3	100.0										
2009	126.1	122.3	118.6	113.2	101.7	100.0									
2010	131.2	127.3	123.4	117.7	105.8	104.0	100.0								
2011	139.2	135.0	130.9	124.9	112.2	110.4	106.1	100.0							
2012	142.2	137.9	133.7	127.6	114.6	112.7	108.3	102.1	100.0						
2013	142.4	138.1	133.9	127.7	114.8	112.9	108.5	102.3	100.1	100.0					
2014	144.4	140.0	135.7	129.5	116.4	114.4	110.0	103.7	101.5	101.4	100.0				
2015	144.6	140.2	135.9	129.7	116.6	114.6	110.2	103.8	101.7	101.6	100.2	100.0			
2016	145.1	140.7	136.4	130.1	116.9	115.0	110.5	104.2	102.0	101.9	100.5	100.3	100.0		
2017	149.9	145.4	141.0	134.5	120.9	118.9	114.3	107.7	105.5	105.3	103.9	103.7	103.4	100.0	
2018	154.5	149.8	145.3	138.6	124.6	122.5	117.7	111.0	108.7	108.5	107.0	106.9	106.5	103.1	

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자료는 기준연도 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음영으로 표시된 2018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임.

2. 변경안의 총사업비

변경안의 총사업비는 958억원으로 용지구입비가 509억원, 공사비 407억원, 시설부대경비가 41억원 가량 산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예비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표 IV-3> 변경안의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총사업비>	95,859	
1. 공사비	40,754	연면적 17,799m ² × 2,279천원/m ² ※ 보호실 자동출입문 설치 : 70,000천원 ※ 보호 외국인 전용승강기 : 120,000천원
2. 용지비	50,949	대지면적 9,034.8m ² × 5,639천원/m ² (조성원가) ※ 연부이자 포함
3. 시설부대경비	4,156	
- 설계비	1,979	1.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3.97%×40% ※ 기본설계비 추가비용 : 361,000천원(십만원 이하 절사) - BF인증 2,266천원 - 녹색건축인증 143,449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59,770천원 - 에너지 절약계획 작성 1,860천원 - 교통영향평가 154,000천원 2. 기본설계비 -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3.97% × 60%
- 감리비	2,083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5.12%
- 시설부대비	94	시설비 40,684,000천원(요율대상) × 0.23%
4. 부가가치세	-	
5. 예비비	-	

자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공사비

가. 건축공사비

공사비 산정 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공사비 단가는 일반적으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와 전문업체의 자문 등을 통하여 추정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별표 『건축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은 총사업비 추정 시 “조달청 공사용형별 공사비 분석 적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3조 1호 다목에서는 “시설비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용형별 단위 면적(1m²)당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적정성 검토는 조달청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1) 건축공사비 단가

본 조사에서는 조달청의 ‘공사비정보광장¹³⁾’ 홈페이지에서 유사사례를 선정하였다. 유사사례 선정 기준은 ① 2015년 이후 발주된 공사, ② 1만m²이상 대형청사, ③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조사·수감 등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④ 2015년 이후 법무부 산하 시설(전국)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위공사비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위공사비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13)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표 IV-4> 조달청 유사사례(2015~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천논현경찰서	전주지방법원청사
조감도			
지역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6층	-
연면적(㎡)	24,130.77	12,415	38,934.02
총공사비(원)	54,728,955,588	24,881,071,371	86,339,056,507
공사비단가(원)	2,268,015	2,004,114	2,217,574
구분	2016년		2017년
	전주지방검찰청	금천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조감도			
지역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8층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6,265.63	12,686	10,192
총공사비(원)	57,311,942,626	26,643,583,954	22,485,099,321
공사비단가(원)	2,182,013	2,100,285	2,206,152
구분	2017년		
	서부경찰서	광역수사대 청사	남양주경찰서
조감도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설규모	지하3층~지상7층	지하3층~지상7층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4,715.97	12,257	15,451
총공사비(원)	30,767,121,508	26,303,987,200	31,751,853,091
공사비단가(원)	2,090,773	2,146,038	2,055,003

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표 IV-4>의 계속

구분	2018년	
	강서경찰서 청사	수원가정법원
조감도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설규모	지하2층~지상8층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20,183.39	18,079.07
총공사비(원)	41,765,933,133	44,964,953,105
공사비단가(원)	2,069,322	2,487,128

주: 총공사비 및 공사비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자료: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이상 11개 사례시설에 대한 공사비 단가를 살펴본 결과 약 200만원~250만원의 범위에서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가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 한 가지 사례의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11개 사례의 공사비단가를 본 분석의 비용검토의 기준연도인 2018년으로 보정하여 산술평균한 단위면적당 공사비 2,050,175원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기로 한다.

<표 IV-5> 공사비 단가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발주시기	공사비 단가	부가세 제외금액	비용보정지수	비용보정금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청사 신축공사	2015.01	2,268,015	2,061,832	106.90%	2,204,098
인천논현경찰서 신축공사	2015.06	2,004,114	1,821,922	106.90%	1,947,634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	2016.07	2,217,574	2,015,976	106.50%	2,147,015
전주지방검찰청 신축공사	2016.10	2,182,013	1,983,648	106.50%	2,112,585
금천경찰서 신축공사	2016.11	2,100,285	1,909,350	106.50%	2,033,458
화성동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04	2,206,152	2,005,593	103.10%	2,067,766

<표 IV-5>의 계속

(단위 : 원/m²)

구분	발주시기	공사비 단가	부가세 제외금액	비용보정지수	비용보정금액
화성동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04	2,206,152	2,005,593	103.10%	2,067,766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05	2,090,773	1,900,703	103.10%	1,959,625
광역수사대 청사 신축공사	2017.08	2,146,038	1,950,944	103.10%	2,011,423
남양주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7.11	2,055,003	1,868,185	103.10%	1,926,098
강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2018.01	2,069,322	1,881,202	-	1,881,202
수원가정법원청사	2018.02	2,487,128	2,261,025	-	2,261,025
공사비 단가 평균					2,050,175

산출된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검토안과 대안의 공사비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6> 공사비 산출 결과

항목	면적(m ²)	공사비 단가(원)	공사비(원)
변경안	17,870	2,050,175	36,636,634,674
대안	16,932		35,527,364,783

2)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 IV-7>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위의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16.12.28)에서 제45조와 제47조를 따르면 설치계획서 제출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설치계획서 검토 기준은 접수 일자기준으로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적정성 검토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의 건축물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의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공급의무비율은 본 사업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인 2020년 의무공급비율인 30%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공사비 단가의 유사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이 있는 2015에서 2018년 사이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인 30%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비 단가 추정의 유사사례의 중간 년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공급의무 비율 21%를 제외한 9%를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의 산정기준 및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예상 에너지 사용량×100
- ② 예상 에너지 사용량 = 건축연면적×단위에너지 사용량×지역계수
- ③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단위 에너지생산량×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16)에 제시된 건축물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및 지역계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8>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구분		단위에너지 사용량 (kWh/m ² ·yr)	구분	지역 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서울	1.00
	방송통신시설	490.18	인천	0.97
	업무시설	371.66	경기	0.99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춘천	1.00
	종교시설	257.49	강릉	0.97
	의료시설	643.52	대전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충북	1.00
	노유자시설	175.58	전북	1.04
	수련시설	231.33	충남	0.99
	운동시설	235.42	광주	1.01
	묘지관련시설	234.99	대구	1.04
	관광휴게시설	437.08	부산	0.93
	장례식장	234.99	경남	1.00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울산
운수시설		374.47	경북	0.98
업무시설		374.47	전남	0.99
숙박시설		526.55	제주	0.97
위락시설		400.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16.12.28. [별표2]

예상 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으로 앞서 제시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에 위치하는 공공용 업무시설이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9>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출

구분	건물 연면적 (m ²)	단위에너지 사용량 (kWh/m ² ·yr)	지역계수	예상 에너지 연간사용량 (kWh/m ² ·yr)
검토안	17,870	371.66	1.00	6,641,564
대안	17,329			6,440,473

2020년에 추가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은 9%이므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연간 사용량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2020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적용 예상 에너지

사용량이 산출된다.

<표 IV-10>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구분	예상 에너지 연간사용량 (kWh/m ² ·yr)	추가 공급비율(%)	신재생에너지 추가 공급비율 적용 예상 에너지 사용량 (kWh/m ² ·yr)
검토안	6,641,564	9%	597,741
대안	6,440,473		579,643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산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활용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을 말한다.

<표 IV-11>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² ·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kWh/m ² ·yr	1.14
	이중진공관형	745	kWh/m ² ·yr	1.14
지열	수직밀폐형	2,045	kWh/kW·yr	1.09
	개방형	2,045		1.00
집광 채광	프리즘	94.7	kWh/set·yr	7.74
	광덕트	139.7		7.74
연료 전지	PEMFC	9,392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2017.02.15. [별표10]

본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¹⁴⁾ 태양광(고정식)을 100%로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규모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4)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2019),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2019) 등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채택한 방식을 준용함.

<표 IV-1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구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적용 예상 에너지 사용량 (kWh/m ² ·yr)	단위에너지 생산량 (kWh/m ² ·yr)	원별 보정계수	원별 설치규모 (kWh/m ² ·yr)
검토안	597,741	1,358	1.56	282
대안	579,643			274

신재생에너지 시설 기준단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를 참조하였다. 본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등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태양광 고정식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IV-13>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

(단위: 천원)

구분			기준단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정식	4,972/kW	
		추적식	5,604/kW	
		BIPV	9,553/kW	
	주택	고정식	3,913/kW	
		추적식	4,647/kW	
태양열	일반건물	평판형·이중진공관형	1,012/m ²	
		단일진공관형	1,160/m ²	
	주택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m ² 이하	1,189/m ²
			10m ² 초과~30m ² 이하	1,012/m ²
		단일진공관형	10m ² 이하	1,359/m ²
			10m ² 초과~30m ² 이하	1,160/m ²
지열	일반건물	수직밀폐형	1,260/kW	
	주택	수직밀폐형	10.5kW이하	1,981/kW
			10.5kW초과~ 17.5kW이하	1,690/kW
집광채광		프리즘형	8,496/m ²	
		광덕트형	4,536/m ²	
소형풍력		3kW이하	9,520/kW	
연료전지		1kW이하	51,100/kW	

주: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04호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단가

기준단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설치단가를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4>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구분	원별 설치규모	기준단가 (천원, 부가세제외)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천원)
검토안	282	4,520,000	1,274,640
대안	274		1,238,480

주: 부가가치세 제외

3) 추가 요구 공사비 항목

보호실 자동출입문, 외국인 전용 승강기 설치비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다. 이중 보호실 자동출입문 및 외국인 전용 승강기 공사는 본 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공사비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대상지가 위치한 문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제2항에서 공공청사의 경우 시장방침55호(07.02.07)에 의해 옥상 녹화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4조제1항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재축 포함)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정지구 내에 공공청사를 신축 하는 본 사업에서도 옥상녹화와 중수도 시설 설치 규모 등에 대해 추후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사비 종합

검토안과 대안의 건축공사비를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5> 건축 공사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면적(m ²)	건축공사비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합계
검토안	17,870	36,637	1,274	3,791	41,702
대안	17,329	35,527	1,238	3,677	40,442

2. 시설부대비경비

가. 설계비

설계비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8)의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에서 보통의 공중에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건축부문 효율 제2종(보통)을 적용하기로 한다. 도서의 양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 제10조제2항에서 공중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중급이며, 중급에 비해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시 상급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업과 유사한 시설인 경찰서 신축사업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설계의 난이도 및 공공발주 사업임을 감안하여 상급의 효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도 상급의 효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표 IV-16> 설계도서 작성기준 검토사례

구분	건축물 종별 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포항북부경찰서 신축사업	보통의 공중	상급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보통의 공중	상급
서울구로경찰서 신축사업	보통의 공중	상급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포항북부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7.
 한국개발연구원,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7.
 한국개발연구원, 『서울구로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9.

<표 IV-17>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별 도서 의양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주: 1)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2) 감리비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4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3) 도서의 양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8.22) 제10조 참조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1) 추가 설계비

변경안에서는 기본설계비 추가비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교통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용융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침에는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비 대한 요율을 적용하되,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기재된 건축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 가. 기획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 2) 중간설계
 - 3) 실시설계
 -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 4) 3D 모델링업무
 - 5) 모형제작업무
 -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업무
 -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 9) 상세시공도서 작성
 -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 후 략 -

제6조(설계업무) ①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 후 략 -

자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관련 설계업무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제11조의 설계업무 대가 산출시 요율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등급에 따른 비율을 추가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건축설계 업무의 대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용을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용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②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가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설계업무의 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text{대 가} = A(1 + 1/2 + 1/3 \dots + 1/n)$$

A : 1동의 건축설계 대가

n : 동일한 설계에 따른 동수

3. 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별표3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하며, 각 종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건축물의 종별을 적용한다.

4.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제3종 중급을 적용한다.

③ 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 제5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무대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라목 1) 및 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대가의 1.5배를 적용한다.

2.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제5조제1호라목 12)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4. 제5조제1호라목 13)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

나. 2등급 : 대가의 6.5%

다. 3등급 : 대가의 6%

라. 4등급 : 대가의 5.5%

마. 5등급 : 대가의 5%

**5. 제5조제1호라목 14)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대가에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가. 1등급 : 대가의 7.5%

나. 2등급 : 대가의 7%

다. 3등급 : 대가의 6.5%

라. 4등급 : 대가의 6%

마. 5등급 : 대가의 5.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⑥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자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8조에서는 대가의 산출을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등은 설계비와 별개로 실비로 적용하기로 한다.

<표 IV-18> 추가 설계비 적용요율

구분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요율
설계대가 기준	우수	1등급	12.75%
	9%	7.5%	

주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6에 의해 요율이 낮은 항목이 1/2을 곱하여 대가 산정

산출된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일반설계비 및 추가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9> 일반 및 추가 설계비 산정

구분	면적(m ²)	기준공사비 (백만원)	요율(%)	일반설계비 (백만원)	추가설계비 요율(%)	추가설계비 (백만원)	합계 (백만원)
검토안	17,870	37,911	4.77	1,810	12.75	231	2,041
대안	17,329	36,765	4.78	1,757		224	1,981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2) 각종 인증 수수료

변경안에 기재된 추가비용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의 비용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수수료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는 관계로 연구진에서 직접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 2곳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 가격의 평균을 실비로 계상하였다.

<표 IV-20> 각종 인증 수수료

구분	기준	적용 수수료(원)	비고
BF인증 ^{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0m² 이상 (제5구간) 본인증 	6,0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시설 공사 완료 후 인증 예비인증은 권장사항이므로 제외
녹색건축인증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등급 이상 본인증 	8,59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완료 단계 또는 준공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20,000m² 1등급 이상 	11,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완료 단계 또는 준공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0~20,000m² 	845,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접수 시 1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받은 경우 50% 감면 가능
교통영향평가 ^{주5)}	-	129,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적서 2개 평균
합 계		156,881,500	-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2018. 08. 10. 시행)
 3)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별표 12], 국토교통부(2019. 12. 23. 시행)
 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2019. 3. 1. 시행)
 5) 녹색건축무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국토교통부(2018. 1. 18. 시행)
 6) 연구진이 의뢰한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 2곳의 견적서 평균 금액 기준

3) 설계비 종합

각종 인증을 위한 추가설계비 및 인증수수료를 포함한 설계비는 다음과 같다.

<표 IV-21> 설계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검토안	대안
B-1. 설계비	2,198	2,138
B-1-1. 일반설계비	1,810	1,757
B-1-2. 각종 인증 추가설계비	231	224
B-1-3. 인증수수료	157	157
① BF인증	6	6
② 녹색건축인증	9	9
③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2	12
④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1	1
⑤ 교통영향평가	129	129

나. 감리비

건축공사의 경우 전면책임감리비 효율 중 보통의 공종의 효율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추정한 효율을 적용하였다.

<표 IV-22> 전면 책임감리비 효율

공사비 (억 원)	개선효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7.67	8.52	9.37
200	6.14	6.81	7.50
300	5.34	5.92	6.52
400	4.81	5.34	5.88
500	4.44	4.94	5.43
700	4.02	4.47	4.91
1,000	3.66	4.06	4.46
1,500	3.20	3.56	3.92
2,000	2.89	3.21	3.53
3,000	2.54	2.82	3.09
5,000	2.15	2.39	2.62

주: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표 IV-23> 건축공사 책임감리비 산정

구분	면적(m ²)	기준공사비(백만원)	요율(%)	비용(백만원)
검토안	17,870	37,911	5.46	2,070
대안	17,329	36,765	5.53	2,032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18)에 의하면 건설, 전기 및 통신, 건축공사등 건축·대수선, 설치, 축조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시설사업관리대행 수수료 제외),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등에 따르는 여비,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의미한다.

<표 IV-24>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요율

구분 공사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00 억 원 까 지	1.51	3.01	1.41	0.25
200 억 원 까 지	1.46	2.91	1.37	0.23
300 억 원 까 지	1.45	2.90	1.35	0.23
500 억 원 까 지	1.41	2.84	1.33	0.23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해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추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검토안과 대안의 시설부대비를 각각 산정하였다.

<표 IV-25> 건축공사 시설부대비 산정

구분	면적(m ²)	기준공사비(백만원)	요율(%)	비용(백만원)
검토안	17,870	37,911	0.23	87
대안	17,329	36,765	0.23	85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라. 시설부대경비 종합

<표 IV-26> 시설부대경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검토안	대안
B. 시설부대경비	4,791	4,680
B-1. 설계비	2,198	2,138
B-2. 감리비	2,070	2,032
B-3. 부대비	87	85
B-4. 부가가치세	436	425

3. 용지비


본 대상지는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SH공사에서 대상지를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 공문으로 확인되었다.

공문의 내용대로 조성원가인 5,253,128원/m²을 기준으로 대상지 면적 9,034.8m²에 대한 용지구입비는 약 475억원으로 산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지구입비의 경우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서울출입구외국인청 청사 이전신축사업 계획안」의 연차별 투입계획에서 용지비를 5년 동안 연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는 주무부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하였다.

용지비를 연납할 경우 SH공사 규정에 의해 연 3.5%의 이자 지급이 필요한 것이 공문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 3.5%의 이자는 SH공사의 공사 분양규정시행내규 제63조(매각대금 분할납부)제1항의 ‘① 매각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으로 나누어 수납하며 그 할부금 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 일반 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를 감안하여 사장이 정하는 할부이자율에 의한 할부이자를 부과’라는 조항을 근거로 책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서울주택공사 택지판매부-3789) 만약 법무부가 SH에 용지보상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금 재원을 공급한다면 법무부가 SH에게 연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림 IV-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지공급관련 SH공문(매입비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
(경우)
제목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사 신축부지 관련 협조에 대한 청신

1. 원무부 출입국기획과-491호(2019.01.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관련, 귀 기관의 청사신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정지구 내 유보지의 면적 및 매입비용, 기타 청사신축에 참고해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청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임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건축계획(안)을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면 적 : 9,034.8㎡ (지하2층, 지상9층-12층)
나. 매입비용 : 약 479억원 (조성원가 기준(5,253,128원/㎡))
다. 기타사항 : 불임합조

불임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사 부지 관련 자료. 끝.

서울주택도시공사

부 인 윤지현 도시개발계획 2부1조 부장 조태영

참조자

시행 도시개발계획부-300 (2019. 1. 23.) 영수 출입국기획과-864 (2019.01.23.)
후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1 // www.j-sh.co.kr
전화번호 02-3410-7665 팩스번호 02-3410-7622 / jyon@j-sh.co.kr / 비공개

문정지구 조성원가 재산정내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및 국토교통부고시를 준용하여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단위: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지비용율(%)	
사 업 비	용지비	850,439,069,938	52.72%	
	용지부담금	15,582,900,000	0.97%	
	조성비	197,728,636,337	12.26%	
	기반시설설치비	368,301,649,757	22.83%	
	이주대책비	321,866,780	0.02%	
	직접인건비	11,029,280,746	0.68%	0.77%
	판매비	8,804,760,762	0.55%	0.61%
	일반관리비	12,413,269,271	0.77%	0.86%
	자본비용	148,493,207,744	9.21%	4.56%
	그 밖의 비용	0	0.00%	
①합계	1,613,114,841,384	100.00%		
사 업 면 적	개발면적	548,239㎡	100.0%	
	②유상공급면적	307,077㎡	56.0%	
	무상공급면적	241,162㎡	44.0%	
②조성원가(원/㎡)	5,253,128		(①=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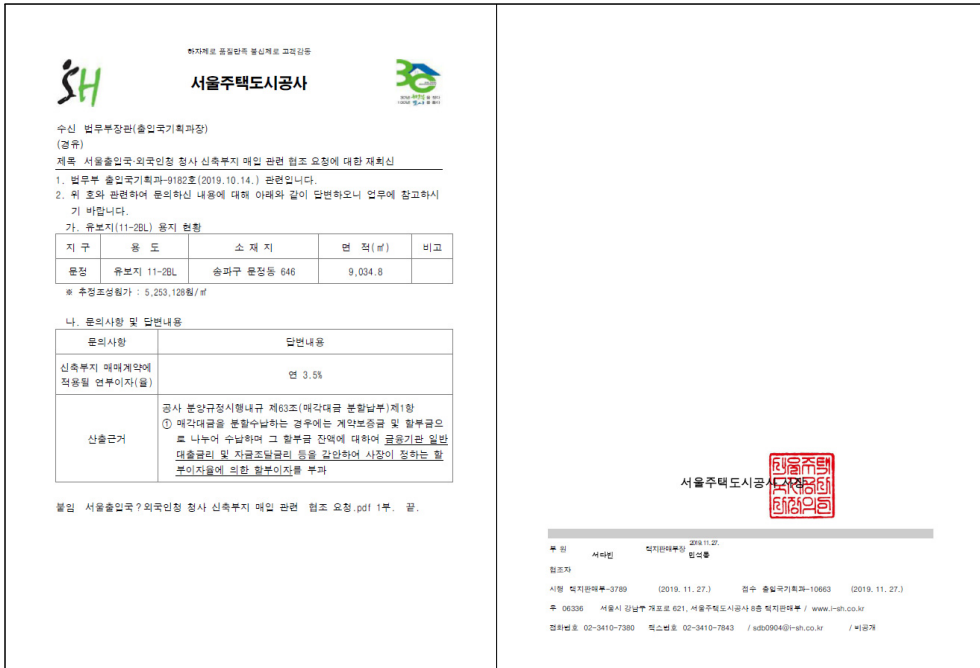
주무부처의 5년간 투입계획에 따른 연부이자는 약 35억원 가량이 발생하며, 연부이자를 포함한 용지비는 총 509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7> 용지구입비 및 연부이자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연차별투입 계획	10%	25%	25%	25%	15%	100%
납입비용	4,746,096,085	11,865,240,214	11,865,240,214	11,865,240,214	7,119,144,128	47,460,960,854
이자산정 기준 금액	42,714,864,769	30,849,624,555	18,984,384,342	7,119,144,128	-	-
이자	1,495,020,267	1,079,736,859	664,453,452	249,170,044	-	3,488,380,623
합계	6,241,116,352	12,944,977,073	12,529,693,666	12,114,410,258	7,119,144,128	50,949,341,477

[그림 IV-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부지공급관련 SH공문(할부이자관련)



4. 예비비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은 사업 수행단계에 따라 예비비를 차등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로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에 따라 예비비 1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28> 단계별 예비비 반영 비율

구분	예비비 반영 비율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이전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5%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한 단계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의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변경안의 총사업비는 958.59억원으로, 변경안의 시설규모에서 오류를 수정한 검토안의 총사업비는 1,071.8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총사업비의 증가는 연면적 증가(17,799m²→17,870m²) 및 누락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가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였다.

대안의 경우는 변경안 대비 총사업비가 98억원 증가한 1,056.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대안의 건축 연면적이 변경안에 비해 470m² 감소(17,799m²→17,329m²)하였으나 누락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및 예비비가 추가되어 증가하였다.

<표 IV-29> 총사업비 종합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안 (A)	검토안 (B)	증감 (B-A)	대안 (C)	증감 (C-A)
A. 공사비	40,754	41,702	948	40,442	-312
A-1. 건축공사비	40,754	36,637	-4,117	35,527	-5,227
A-2. 신재생에너지공사비	-	1,274	1,274	1,238	1,238
A-3. 부가가치세	-	3,791	3,791	3,677	3,677
B. 시설부대경비	4,156	4,791	635	4,680	524
B-1. 설계비	1,979	2,198	219	2,138	159
B-1-1. 일반설계비		1,810	1,810	1,757	-53
B-1-2. 각종 인증 추가설계비		231	231	224	-7
B-1-3. 인증수수료	361	157	-204	157	-204
① BF인증	2	6	4	6	4
② 녹색건축인증	143	9	-135	9	-135
③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0	12	-48	12	-48
④ 에너지 절약 계획서 검토 수수료	2	1	-1	1	-1
⑤ 교통영향평가	154	129	-25	129	-25
B-2. 감리비	2,083	2,070	-13	2,032	-51
B-3. 시설부대비	94	87	-7	85	-9
B-4. 부가가치세	-	436	436	425	425
C. 용지비	50,949	50,949	0	50,949	0
C-1. 용지비	-	47,461	47,461	47,461	47,461
C-2. 금융이자	-	3,488	3,488	3,488	3,488
D. 예비비	-	9,744	9,744	9,607	9,607
총사업비	95,859	107,187	11,328	105,679	9,820

제 V 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개요

경제성 분석이 현실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정책성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게 된다. 2019년 5월에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총괄지침은 기존 정책성 분석 내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정책성 평가의 세부 항목을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특수평가항목(선택) 등 3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추진여건은 다시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나뉜다.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계획 반영여부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표 V-1> 사업추진여건 세부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내용
내부여건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정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

정책효과는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4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분류한다. 일자리 효과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유발되는 고용창출 효과, 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에

도 지속되는 간접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으로 평가한다. 생활여건 영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성 평가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지역 환경 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 환경보전 기여도 등으로 평가한다. 안전성 평가는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이나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효과, 시스템 신설 및 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으로 평가한다.

<표 V-2> 정책효과 세부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내용
일자리 효과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안전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개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채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을 평가한다. 채원조달 위험성은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에 부여하거나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채원이 기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기 확보된 채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 점수에 부여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 가치는 국가 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제2절 사업추진 여건 검토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가. 개요

대형 공공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의 중단이나 폐지, 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부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서 조사 대상 사업이 관련 법령, 국가정책 및 각 수준별 계획에 얼마나 안정적이고, 확고히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공공투자사업이 정책과 상위 계획에 확고하게 반영되어 있을수록 사업이 체계적으로 계획·관리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적 기반이 존재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평가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의 상위 및 관련계획 반영 여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의 반영 여부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은 유사한 성격을 보이면서도, 내용 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5~10년 이상의 시계를 목표로 수립된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의 추진가능성이나 우선 순위 등의 측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병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 사업의 추진가능성, 준비 정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장기 계획 상 아직 반영 전이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사업의 준비 정도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운영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이냐를 판단하고자 한다.

나. 정책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 결과

본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최상위계획으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있다. 해당 계획은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이민정책으로 제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모토로, 이민자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체계 강화와 체류부터 국적취득까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지속적인 이민자 증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나 거부감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조직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 신축은 우수 외국인 유입과 국민 불안감 해소라는 기본계획 상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주요 이유는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하여, 외국인 및 법률자문인의 접근성이 낮고, 30년 전 외국인 유입 수준에 대응하는 기능만을 고려하여 건축된 관계로, 직원 사무공간, 민원인 공간, 불법체류자 보호공간이 모두 협소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보호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원활한 단속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 측면에서, 기존 청사가 관할구역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체류지원 및 감독, 사회통합 등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신축청사 건립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 목표 달성에 부합, 기여하는 정책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의 정책 일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자체의 주요 상위계획은 서울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수준에서 외국인 관련 계획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외국인 거주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이 살기 편하도록 우수 외국인 인재 거주지, 다양한 지원시설 및 인포메이션센터와 같은 외국인 맞춤형 인프라 조성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서울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인프라는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상 외국인 관

런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법무부에 협조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관련 계획으로서 서울시 2030도시계획 상에 해당 청사 건립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문정지구로 이전신축하는 동 사업이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있지는 않으나 서울시의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과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의 목적인 양질의 출입국행정 서비스제공, 방문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 및 민원 환경 개선이 상호 간에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본 조사 대상 사업의 준비 정도는 신축이전 부지의 확보 여부, 건축이 가능하기 위한 각종 행위변경 완료 여부, 건축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변경 가능성, 인원변동이나 사업확대 등 청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의 사업운영 계획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준비정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추진과정에서의 변동 가능성이 낮아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에 대한 준비정도는 부지확보, 부지용도변경, 청사 내 업무 및 서비스 공간 배치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신규청사 건축사업에 앞서 서울출입국사무소(현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는 2011년 7월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확정 및 기관 배치(안)」에 따라 과천 정부청사 5동으로 입주하고자 계획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해당 시설에 타 부처가 입주하여 해당 계획이 무산되었고, 대안으로 법무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2월 서울시와 SH공사에 신축부지(문정지구 내 9,000㎡)의 확보를 요청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약 2년 간 법무부와 서울시 간의 기관장 협의, 관련 MOU 체결 등을 통해 2019년 1월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면적 9,034.8㎡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로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부지 확보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공급이 협약된 부지는 유보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정해져 있다.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용도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아직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법무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맞춰 서울시와 협의 하에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전신축사업 추진 이전에 서울시 및 SH공사와 구

체적인 용도변경 일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은 공공청사 이전신축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등 설계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인원 기준으로 면적만 산출하여 대략적인 층별 배치도만 준비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신규청사 내 세부시설, 부서 배치 등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어 명확한 청사 공간의 배치 및 운용 계획이 미비한 것을 판단된다.

본 사업에 따라 신규청사가 마련될 경우, 기존 청사와 부지를 용도폐지 하고 기획재정부에 반납하며 반납 후의 용도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청사에 대한 처분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지역주민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가. 개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는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며, 공급되는 시설물이나 사회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이용자도 당연한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민은 시설 자체와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사업의 계획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수정하고자 노력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업환경 변화를 유발하여 사업계획으로부터 크게 괴리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업과정에서는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역주민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같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여건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은 지역주민의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항목에 대해 주무부처

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검토하도록 한다.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추진의지나 선호도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일치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중요 부분을 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는지 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검토결과

우선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규청사 건축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서울시 목동에 위치한 현 청사가 서울출입국·외국인의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여 공공서비스 전달 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쾌적한 업무 및 민원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청사 신축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규 청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청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청사 부지 제공을 직접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주무부처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신규청사의 추진주체는 아니나 법무부의 서울출입국·외국인 신규청사 건립에 전반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무부처 제출자료에 의하면 유보지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서울시장 간 논의 자리에서 문정지구 내 유보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SH에서 조속히 추진하며 법주단지와 조화되는 건축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사업승인부서인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개발계획 변경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⁵⁾ 이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도 현 유보지에 기존 입주 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시설이 입주하는 것보다 유사한 법무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적, 기능적 특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업 등 관련 민간산업분야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청사 인근의 주요 주거지는 청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m정도 떨어져 있고, 청사 출입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으로부터 청사까지의 동선 상에서 민원인과 지역주민이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상지 주변으로 학교 등 시설이 입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내 해당시설의

15)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사 부지공급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방안 보고」, 2019.02.

입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미 유사한 성격의 법무시설인 지방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이 입주해 있음에도 지역 내에서 주민과 시설운영주체 간의 갈등이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사 청사의 추가적인 입주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문정역으로부터 신규 청사까지의 최단 보행로 상에는 대형 쇼핑몰이 존재하며, 쇼핑몰에는 많은 상점들이 입주하고 있어, 이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시설의 입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을 방문한 결과 이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법무시설 청사를 출입하는 근로자나 민원인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어, 추가 청사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를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제3절 정책효과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2019.05.0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4가지 평가항목에서 타당성 검토 대상 사업의 정책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효과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가 각 평가항목에 대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무부처가 정책효과에 대해 제출하는 자료와 의견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부처가 4가지 평가항목 중 일부에 대해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처는 평가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위주로 기술할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무부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효과의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책효과는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려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이 포괄하지 못하는 중요 가치들을 평가체

계에서 누락시키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 효과분석은 생략이 가능한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규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생략한다.

제4절 사업 특수평가항목 검토

1. 재원조달 가능성

공공투자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재원조달의 가능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규모에 따라 재정의 여력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재원조달 환경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본 사업의 추진근거로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할구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전액 국고로 추진되어야 할 경우, 사업비와 관련 부문의 예산 규모 간의 비교를 통해,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특수평가항목은 조사 대상 사업의 평가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재원조달 위험성, 문화재 가치 등을 평가예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재원조달 위험성은 운영비 조달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부여, 원인자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既 확보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대비 既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재원이 일부 확보된 사업은 국비나 지방비의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대상 시설 완공 후의 운영비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재무조달의 위험성 측면에서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사업의 검토안에서 추정된 총사업비는 1,071.86억원, 대안의 총사업비는 1,056.79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다. 법무부가 제시한대로 용지보상비 집행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5년간 각각 10%, 25%, 25%, 25%, 15%의 비율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설계는 2020년에 시작하여 관련비용은 2년에 걸쳐 각 50%씩 지급된다. 2022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 35%, 35%, 30%씩 지급된다.

<표 V-3> 연차별 투입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합계	
검토안	공사비			14,596	14,596	12,11	41,702	
	용지보상비	5,226	12,737	12,737	12,737	7,510	50,948	
	시설부 대경비	설계비		1,209	1,209			2,417
		감리비			797	797	683	2,277
		시설부 대비		24	24	24	24	96
		소계	5,226	13,970	29,363	28,154	20,728	97,442
	예비비	523	1,397	2,936	2,815	2,073	9,744	
	합계	5,749	15,367	32,299	30,970	22,801	107,186	
대안	공사비			14,155	14,155	12,132	40,442	
	용지보상비	5,226	12,737	12,737	12,737	7,510	50,948	
	시설부 대경비	설계비		1,176	1,176			2,352
		감리비			783	783	671	2,235
		시설부 대비		23	23	23	23	93
		소계	5,226	13,937	28,874	27,698	20,336	96,072
	예비비	523	1,394	2,888	2,770	2,034	9,607	
	합계	5,749	15,330	31,762	30,468	22,369	105,679	

본 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2023)」(기획재정부, 2019)를 검토하였다. 전체 총지출은 2019년의 469.6조원에서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2023년에는 60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 및 검찰’ 부문의 지출은 2019년 4조 615억원에서 2023년 4조 5,99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V-4>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19	'20	'21	'22	'23	'19~'23 연평균
총지출	469.6 (9.5)	513.5 (9.3)	546.8 (6.5)	575.3 (5.2)	604.0 (5.0)	6.5
1. 보건·복지·고용	161 (11.3)	181.6 (12.8)	198.4 (9.3)	213.2 (7.4)	229.1 (7.5)	9.2
2. 교육	70.6 (10.1)	72.5 (2.6)	76.0 (4.9)	79.1 (4.1)	82.0 (3.5)	3.8
3. 문화·체육·관광	7.2 (12.2)	8.0 (9.9)	8.3 (4.6)	8.6 (3.8)	9.0 (3.6)	5.4
4. R&D	20.5 (4.4)	24.1 (17.3)	26.7 (10.7)	28.7 (7.7)	30.9 (7.6)	10.8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5.4)	23.9 (27.5)	26.4 (10.3)	28.0 (6.1)	29.9 (6.9)	12.4
6. SOC	19.8 (4.0)	22.3 (12.9)	23.4 (4.9)	23.7 (1.4)	23.7 (△0.3)	4.6
7. 농림·수산·식품	20.0 (1.5)	21.0 (4.7)	21.5 (2.3)	21.9 (1.9)	22.2 (1.6)	2.6
8. 환경	7.4 (7.2)	8.8 (19.3)	9.6 (8.5)	10.1 (5.8)	10.6 (4.2)	9.3
9. 국방	46.7 (8.2)	50.2 (7.4)	53.4 (6.5)	56.4 (5.7)	59.5 (5.4)	6.2
10. 외교·통일	5.1 (7.2)	5.5 (9.2)	5.9 (6.2)	6.3 (6.5)	6.6 (5.6)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5.6)	20.9 (4.0)	21.8 (4.2)	22.7 (3.9)	23.5 (3.7)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11.0)	80.5 (5.1)	82.4 (2.4)	84.3 (2.3)	86.1 (2.2)	3.0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 2019.

<표 V-5>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19	'20	'21	'22	'23	'19~'23 연평균
□ 공공질서·안전 분야	201,317	209,468	218,319	226,765	235,061	4.0
○법원 및 헌재	20,652	21,713	23,062	24,102	24,430	4.3
○법무 및 검찰	40,615	42,241	43,526	45,059	45,995	3.2
○경찰	113,558	119,910	125,777	131,783	139,027	5.2
○해경	13,845	15,252	15,988	16,101	16,161	3.9
○재난관리	12,647	10,352	9,967	9,719	9,448	△7.0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 2019.

본 사업의 재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다. 2020년 국유재산 관리 기금 사업은 1조 6,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84억원(6.5%)증가하였으며, 2020년 경상사업 중 공용재산 취득사업 계획안에 본 사업의 예산은 5,749백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 1차 년도에 기본 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중 계약금 10%를 SH공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법무부가 제출한 연차별 투자 계획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 계획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련 부문의 규모 및 증가율, 국유재산관리기금 상의 반영여부 등을 고려할 경우, 본 사업의 자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VI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본 장에 앞서 이루어진 경제성 분석은 그 구조 상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일수록 타당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건설 수요와 편익이 낮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경제적 타당성이 역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로 경제성 분석에 의존하여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타 사업 평가 시에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사 결과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의 낙후 정도를 평가하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의 공공투자사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하여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역 간 개발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함이다.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최근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을 생략한다.

제Ⅶ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결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위치한 현재 청사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로 이전신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부족한 업무 및 민원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출입국 행정서비스와 민원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할구역 중심 부로 이전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방문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2011년 7월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확정 및 기관 배치(안)」에 따라 서울출입국사무소(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가 과천 정부청사 5동으로 입주하려던 계획이 2015년 7월에 해당 시설에 타 부처가 입주함으로써 무산된 후, 법무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2월 서울시와 SH공사에 신축부지(문정지구 내 9,000㎡) 확보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서울시 및 SH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2019년 1월에 문정지구 유보지 전체 면적 9,034.8㎡를 공급받기로 협약하였고, 이후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019년 8월에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정원 변경을 근거로 사업계획 변경신청(2020.05)을 하여 변경된 계획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었다.

법무부의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사업목적, 시설계획,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노후 청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신축사업의 목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계획의 적절성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인원(정원 161명, 정원외 인원 127명, 외주인력 105명)과 민원인 1,705명,

보호외국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유형별 1인당 면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면적 기준은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사무용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적용하였고, 특수시설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였다. 양 기준에 모두 등장하는 시설의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우선 적용하였고,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없는 특수시설은 유사한 시설면적을 적용하거나, 계획안의 실소요면적을 준용하였다. 계획안의 시설면적의 적용 오류사항을 수정한 검토안의 경우 변경안보다 71㎡ 증가한 17,870㎡로 산정되었으며, 대안의 시설면적은 17,329㎡로 산정되어 변경안보다 471㎡ 감소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규청사의 총사업비는 검토안, 변경안, 대안으로 구분하여 공사비, 용지비,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비용추정 기준 연도는 2018년 말로 설정하였다. 비용추정에 필요한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의 ‘공사비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2015년 이후 발주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조사·수감 등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중 1만㎡이상 대형청사 등의 기준으로 선정한 11개 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시설부대경비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검토하였다. 용지비의 경우, 5년간 연납하고, 3.5%의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5년동안 연간 35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 따라 사업수행단계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경우 예비비 10%를 산정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계획안의 총사업비 958.59억원에서 기준 적용 오류를 제거한 검토안의 총사업비는 113.86억원 증가한 1,072.45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규모 적정성을 반영한 대안의 경우는 계획안 대비 총사업비가 98.77억원 증가한 1,057.36억원으로 산정되었다. 계획안에 비해 대안의 시설 규모가 줄어, 건축공사비도 줄었음에도 총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계획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사비, 부가가치세, 예비비 등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성 평가는 세부적으로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사회적 가치), 특수평가항목(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사업추진여건은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본 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최상위계획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며, 신규 청사가 우수 외국인 유입과 국민 불안감 해소라는 기본계획 상의 목

포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상위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의 정책 일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자체의 주요 상위계획은 서울시의 『2030도시기본계획』을 꼽을 수 있다. 동 사업이 이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있지는 않으나 서울시의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과 법무부가 제시한 사업의 목적인 양질의 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 방문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 및 민원 환경 개선이 상호 간에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의 준비 정도는 신축이전 부지의 확보 여부, 건축이 가능하기 위한 각종 행위변경 완료 여부, 건축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변경 가능성, 인원변동이나 사업확대 등 청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의 사업운영 계획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시와 2019년 1월 문정지구 유보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기로 협약하였으므로, 부지 확보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용도를 공공청사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 시설에 대한 기본구상 등 설계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인원 기준으로 면적만 산출하여 대략적인 층별 배치도만 준비한 상태로, 명확한 청사 공간의 배치 및 운용 계획이 미비한 것을 판단된다. 기존 청사와 부지는 기획재정부에 반납할 계획으로, 기존 청사에 대한 처분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여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현 청사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청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 유보지에 기존 입주 기관과 성격이 전혀 다른 시설이 입주하는 것보다 유사한 법무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의 기능적 특성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업 등 관련 민간산업분야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청사 인근의 주요 주거지는 청사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m정도 떨어져 있고, 청사 출입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사까지의 동선 상에서 민원인과 지역주민이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지 주변으로 학교 등 시설이 입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내 해당시설의 입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쇼핑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현재 입주해 있는 법무시설 청사를 출입하는 근로자나 민원인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어, 추가 청사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를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 특수평가항목으로서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관련 부문의 규모 및 증가율, 국유재산관리기금 상의 반영여부 등을 고려할 경우, 본 사업의 재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최근 개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 이를 생략하였다.

<표 VII-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총괄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안(변경안)	검토안	대안
사업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사업규모	부지면적	9,034.8	9,034.8	9,034.8
	연면적	17,799	17,870	17,329
A. 공사비		40,754	41,702	40,442
B. 시설부대경비		4,156	4,791	4,680
B-1. 설계비		1,979	2,198	2,138
B-2. 감리비		2,083	2,070	2,032
B-3. 시설부대비		94	87	85
B-4. 부가가치세		-	436	425
C. 용지비		50,949	50,949	50,949
C-1. 용지비		-	47,461	47,461
C-2. 금융이자		-	3,488	3,488
D. 예비비		-	9,744	9,607
총사업비		95,859	107,187	105,679

제2절 정책제언

향후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보완 및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규청사의 공간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는 인원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여, 근무시설, 민원실, 보호시설 등을 지하2층~지상9층에 걸쳐 대략적으로 배치만한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 규모의 법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주무부처는 사업대상지를 제공하는 SH공사에 용지비를 5년에 걸쳐 납부하고, SH 내규에 따른 이자율 3.5%를 적용한 연부이자를 용지비에 포함시킨 총사업비를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의 대안에서는 주무부처의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연부이자의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용지비를 분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주무부처가 재정당국을 통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납 방식을 고려했다고 판단되나, 불필요한 연부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에 부담을 낮추는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본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중 원활한 사업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주거지와 본 사업대상지 간의 거리 및 접근성, 현장 조사 시의 일부 주민 면담, 언론기사검색, 주무부처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가 사업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다수 또는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청취하여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무총리실, 「중앙·과천청사 입주기관 확정 및 기관 배치(안)」, 2011.07.
- 기획재정부,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2018.
-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9.5.
- _____,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8.07.12.
- _____,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 2019.
-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9.5.1.
-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2016.10.11.
- _____,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
- _____, 「2019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수행계획서」, 2018.12.26.
- _____, 「서울출입국·외국인 청사 부지공급요청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방안 보고」, 2019.02.
- _____,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사업계획서」, 2019.08.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2019.08.20.)
- _____,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현황」, 2019.10.7.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2019.10.14.)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2.)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09.)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2019.12.18.)
- _____, 법무부 제출 자료 (2019.12.26.)
- _____,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12.31.
- _____, 「법무시설 기준규칙」, 2019. 7. 10.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 2019.
- _____,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변경요청」, 2020.05.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016.12.28.
- 서울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018.
-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19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 _____, 『타당성제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2012.

_____, 『서울 방배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6.

_____, 『포항북부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7.

_____,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7.

_____, 『서울구로경찰서 신축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9.

_____, 「2019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19.

_____,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2019.05.01.

행정안전부, 「2021년도 청사수급 관리계획 작성지침」, 2020.

_____, 「정부청사관리규정」, 2017.07.26.

_____,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2017.07.2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moj/196/subview.do>)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http://pcae.g2b.go.kr/pbs/psa/psa0000/index.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부 록

[부록 A] 관련 공문 사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
보(법무부)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2019년도 제2차 예타 면제 사업 선정결과(법무부) 1부. 끝.

기획재정부장관



수신자 법무부장관, 법사예산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한국개발연구원장

주무관 임영휘

사무관 최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전달 07/08
일영진

시행 타당성심사과-587 (2019.07.08.)

접수 운영지원팀-6101 (2019.07.08.)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여진동,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전화 044-216-6417 전송 044-216-8120 / limyh2009@korea.kr / 비공개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 신축 사업 관련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 신축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일과 같이 추가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사일정 상 2019.12.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청 대상 질의 및 자료협조 요청 사항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12/13	12/18
	김종혁	박한준
	비서관	

협조자

시행 정부투자분석센터-3 (2019.12.13) 접수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전송 / / 공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법무부



수신 기획재정부장관(타당성심사과장)
(경유)

제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 변경 요청(안) 제출

1. 귀 부의 무궁항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당성심사과-537(2019.7.8.)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법무부)」 관련입니다.
3. 조세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의 기준인원(공무원 및 공무원)이 변동됨에 따라 불임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요청(안)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 신축사업 계획 변경 요청(안)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법무부장관



행정관	김형찬	출입국관리사 무관	이대우	과장	배상업	전결 2020.5.21.
협조자						
시행	출입국기획과-5458			접수	타당성심사과-247	(2020. 5. 21.)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oj.go.kr
전화번호	02-2110-4029	팩스번호	02-2110--0372	/	angel802@moj.go.kr	/ 비공개(5)

오늘의 청렴실천 내일의 행복사회

